2018

정책연구 2018-17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연구진 이주연 · 조경욱 · 최지훈

Jeonbuk Institute

think 전북연구원

정책연구 2018-17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중심으로

think 전북연구원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이 주 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조 경 욱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 지 훈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 문 위 원	유 현 숙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센터장

연구관리 코드 : 18JU1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 3

가.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나. 연구내용 ····· 5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 7

가. 연구방법 ····· 7

나. 연구절차 ····· 9

제3절 연구의 제한점 ····· 11

제2장 이혼위기가족 관련 이론적 고찰 및 이혼 현황 ····· 15

제1절 이혼위기가족의 이론적 고찰 ····· 15

가.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이해 ····· 15

나. 이혼에 대한 이해 ····· 16

제2절 이혼 현황 ····· 23

가. 전국 및 전북의 이혼관련 통계 현황 ····· 23

나. 이혼관련 가치관 및 태도 변화 ····· 35

제3장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 43

제1절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 관련법 ····· 43

가. 이혼위기가족 관련 법률 ····· 43

나. 이혼 관련 법률 ····· 44

다. 이혼가족 관련 법률 ····· 49

제2절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분석 ····· 51
가. 중앙정부 지원정책 ····· 51
나. 전라북도 지원서비스 ····· 62
제3절 국내·외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례분석 ····· 70
가. 국내 지원정책 ····· 70
나. 국외 지원정책 ····· 76
다. 시사점 ····· 83

제4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정책욕구 ····· 87
제1절 이혼위기가족 설문조사 ····· 87
가. 조사개요 ····· 87
나. 결과분석 ····· 90
제2절 이혼위기가족 심층면접조사 ····· 122
가. 조사개요 ····· 122
나. 결과분석 ····· 124
제3절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146
가. 조사개요 ····· 146
나. 결과분석 ····· 148
제4절 소결 ····· 168

제5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 179
제1절 주요결과 및 논의 ····· 179
제2절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 188

참고문헌 ····· 213

표목차 | Contents

〈표 2-1〉 이혼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2007-2017) ····· 24
〈표 2-2〉 전국 시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7년) ····· 25
〈표 2-3〉 이혼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2007-2017) ····· 26
〈표 2-4〉 전라북도 시군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7년) ····· 27
〈표 2-5〉 남녀 평균 이혼 연령 ····· 28
〈표 2-6〉 혼인지속기간별 이혼건수 및 비율 ····· 29
〈표 2-7〉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비율(2007-2017) ····· 30
〈표 2-8〉 이혼사유별 이혼현황 ····· 31
〈표 2-9〉 성별과 연령대별 이혼사유 ····· 33
〈표 2-10〉 시대별 이혼사유의 변화 ····· 34
〈표 2-11〉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및 이혼율 ····· 35

〈표 3-1〉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 관련법 현황 ····· 50
〈표 3-2〉 2018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의 예산 현황(국비) ····· 55
〈표 3-3〉 지역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2018년)의 주요내용 ····· 55
〈표 3-4〉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의 표준 프로그램 내용 ····· 56
〈표 3-5〉 이혼전문상담 인증 건강가정지원센터(2017년) ····· 59
〈표 3-6〉 전북지역 자녀양육안내 및 의무상담제 현황 ····· 67
〈표 3-7〉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신청자 대상 프로그램 ····· 71
〈표 3-8〉 대구광역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내용 ····· 75

〈표 4-1〉 설문 영역 및 주요 내용 ····· 89
〈표 4-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92
〈표 4-3〉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시점 ····· 94
〈표 4-4〉 결혼생활 문제에 대한 의논 대상 ····· 95
〈표 4-5〉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96
〈표 4-6〉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이후, 이혼결정까지의 기간 ····· 97

〈표 4-7〉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걱정되었던 점(전체응답) ····· 98
〈표 4-8〉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걱정되었던 점(아내응답) ····· 99
〈표 4-9〉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걱정되었던 점(남편응답) ····· 99
〈표 4-10〉 이혼 결정에 대한 의논 상대 ····· 100
〈표 4-11〉 과거를 돌아볼 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필요했던 도움(복수응답) ····· 101
〈표 4-12〉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전체응답) ····· 102
〈표 4-13〉 주된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 간 비교 ····· 103
〈표 4-14〉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아내응답) ····· 103
〈표 4-15〉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남편응답) ····· 104
〈표 4-16〉 혼인지속기간별 주된 이혼 사유(1순위 응답) ····· 105
〈표 4-17〉 협의이혼 신청 전 필요했던 정보(전체응답) ····· 106
〈표 4-18〉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전체응답) ····· 107
〈표 4-19〉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108
〈표 4-20〉 이혼 후,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책(4점만점) ····· 109
〈표 4-21〉 이혼 이후, 적응을 위한 도움(전체응답) ····· 111
〈표 4-22〉 이혼 이후, 지지체계 상황 ····· 112
〈표 4-23〉 이혼에 대한 자녀의견 청취 여부 ····· 113
〈표 4-24〉 이혼결정을 자녀에게 알림 여부 ····· 114
〈표 4-25〉 이혼 이후 면접교섭에 관한 자녀와 논의 여부 ····· 115
〈표 4-26〉 자녀의 안녕 및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점(전체응답) ····· 116
〈표 4-27〉 협의이혼 신청자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 인지여부 및 경로 ····· 117
〈표 4-28〉 법원 상담위원 상담 경험 ····· 118
〈표 4-29〉 부모교육 만족도 ····· 119
〈표 4-30〉 법원의 상담 및 교육내용의 도움정도(4점만점) ····· 120
〈표 4-31〉 심층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24
〈표 4-32〉 개별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의 일반적 특성 ····· 125
〈표 4-33〉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의 주요결과 ····· 127
〈표 4-34〉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 149
〈표 4-35〉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결과 ····· 151

〈표 5-1〉 전라북도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 제시 ····· 188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 10

〈그림 2-1〉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에 대한 주요내용 ····· 18
〈그림 2-2〉 이혼 증가의 원인 ····· 19
〈그림 2-3〉 OECD 국가의 조이혼율(2014) ····· 23
〈그림 2-4〉 이혼건수 및 유배우 이혼율 추이(2007-2017) ····· 24
〈그림 2-5〉 전국 시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7년) ····· 25
〈그림 2-6〉 전라북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2007-2017) ····· 26
〈그림 2-7〉 혼인지속기간별 및 연령차별 이혼비율 ····· 29
〈그림 2-8〉 전라북도 연도별에 따른 이혼사유 현황 ····· 32
〈그림 2-9〉 이혼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변화 ····· 35
〈그림 2-10〉 배우자 외도 시 및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혼에 대한 태도 ····· 36
〈그림 2-11〉 부부간 갈등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할 수 있음의 의견 ····· 37
〈그림 2-1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음의 의견 ····· 38
〈그림 2-13〉 사별·이혼 후 재혼에 대한 태도 ····· 39
〈그림 2-14〉 혼자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한 태도 ····· 39

〈그림 3-1〉 협의이혼 변천과정 ····· 45
〈그림 3-2〉 협의이혼 진행 절차 ····· 48
〈그림 3-3〉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추진체계 ····· 56
〈그림 3-4〉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진행절차 ····· 70
〈그림 3-5〉 서울가정법원의 '심화된 자녀양육안내' 진행절차 ····· 72
〈그림 3-6〉 서울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 운영 사례 ····· 72
〈그림 3-7〉 서울가정법원의 리플렛 제작 사례 ····· 73
〈그림 3-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가사재판 사례 및 상담지침 서적 제작 사례 ····· 74

〈그림 4-1〉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시점 ····· 94

〈그림 4-2〉 결혼생활 문제에 대한 의논 대상 ····· 95
〈그림 4-3〉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96
〈그림 4-4〉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이후, 이혼결정까지의 기간 ····· 97
〈그림 4-5〉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98
〈그림 4-6〉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100
〈그림 4-7〉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101
〈그림 4-8〉 혼인지속기간별 주된 이혼 사유(1순위 응답) ····· 105
〈그림 4-9〉 협의이혼 신청 전 필요했던 정보 ····· 106
〈그림 4-10〉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 107
〈그림 4-11〉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108
〈그림 4-12〉 예상되는 어려움(걱정) ····· 109
〈그림 4-13〉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준비도 ····· 109
〈그림 4-14〉 성별 예상되는 어려움(걱정) ····· 110
〈그림 4-15〉 성별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준비도 ····· 110
〈그림 4-16〉 어려움 대비 준비도(여성) ····· 110
〈그림 4-17〉 어려움 대비 준비도(남성) ····· 110
〈그림 4-18〉 이혼 이후, 적응을 위한 도움 ····· 111
〈그림 4-19〉 이혼 이후, 지지체계 상황 ····· 112
〈그림 4-20〉 이혼에 대한 자녀의견 청취 여부 ····· 113
〈그림 4-21〉 이혼결정을 자녀에게 알림 여부 ····· 114
〈그림 4-22〉 이혼 이후 면접교섭에 관한 자녀와 논의 여부 ····· 115
〈그림 4-23〉 자녀의 안녕 및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점 ····· 116
〈그림 4-24〉 부모교육 만족도 ····· 119
〈그림 4-25〉 법원의 상담 및 교육 내용의 도움정도 ····· 121

〈그림 5-1〉 연구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87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이 이혼, 사별,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해체되고 있음. 이 중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가족해체는 감소하는 반면, 이혼과 같이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가족해체는 지속 증가 추세임

- 전북의 이혼건수는 2016년 3,979건(조이혼율 2.1건)으로 전년 대비 6.0%(224건) 증가.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이 1990년 11.4%에서 2016년 48.4%로 증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비율은 50.1%가 넘고, 유배우 이혼율[1] 은 4.4건임

○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의 사유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나 폭력과 같은 '문제적 사건'이 이혼사유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성격차이' 혹은 '기타 및 알 수 없음'이 주요 이유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에 따른 이혼'이 전국 43.1%(45,676건), 전북 49.2%(1,821건)로 1위를 차지함. 2위는 '기타'로 전국 20%(21,195건), 전북 18.1%(670건)을 차지하였고, 3위는 '경제문제'로 전국 10.1%(10,742건), 전북 9.8%(362건)를 차지함. 한편, 4위와 5위가 '가족 간 불화'와 '배우자의 부정'으로 나타남(통계청, 2018. 3)

○ 부부가 합리적인 삶을 찾고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을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준비와 대책 없이 홧김에 충동적으로 하는 이혼을 부추겨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이미 오래 전에 부부관계가 와해된 가족을 지키라고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음

---

1) 유배우 이혼율 :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인구 천명당 인구 건수

○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 혹은 '기타 및 알 수 없음'으로 인한 비율이 67% 이상이며, 이혼으로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요보호아동 또한 매년 50명가량(전체 요보호아동 발생원인 중 20.2% 차지)이 발생하고 있고, 게다가 이혼에 대한 높은 후회와 만족도 또한 낮다는 점임

- 이혼 후 52% 이상이 '이혼을 후회하거나 잘 모름'으로 나타난 연구결과(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2)와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의 특성을 보면 이혼 남성의 40.5%가 후회하고, 혼인 3년 미만의 신혼부부(34.8%)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50% 이상) 후회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2)

- 이혼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이혼 진행과정에서 이혼관련 정보수집이나 이혼 이후의 사후대책 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함으로 주로 나타남(전영주, 원성희, 김수연, 2009)

○ 지속 증가 추세인 이혼현상은 특정 사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 사회현상으로서 삶의 과정 중 하나의 주요한 생애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음. 이혼에 대한 이러한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배우자 사망 다음으로 큰 스트레스며, 이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로 나타남. 또한, 이혼은 영유아자녀의 심리·정서 발달측면에 문제 초래, 청소년자녀의 비행, 모자가정의 빈곤화(빈곤아동의 30%이상이 이혼한 한부모 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 등 취약 및 위기가족 초래,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 또한 적지 않다는 등 부정적 사회문제들이 개인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만큼 심각함

○ 이혼의 시각차이(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이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문제 양산하는 사건)는 사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 두더라도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적 이혼진행 과정 중이나 이혼 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준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이와 더불어 이혼의 최대 피해자인 미성년자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혼의 법적진행 절차과정 중에 있는 즉,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의 절차를 단계별로 밟고 있는 미성년자녀를 둔 이혼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이혼의 발생원인 및 전반적인 이혼실태와 현 지원서비스의 한계점 및 개선점, 필요한 지원 서비스 등의 정책적 욕구분석을 이혼 전 · 이혼진행 과정 · 이혼 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이와 더불어 이혼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미성년자녀의 복지와 보호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이혼위기가족, 즉 이혼위기에 봉착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한 자 중 미성년자녀를 둔 자를 대상으로 이혼의 발생원인 및 전반적인 이혼실태, 그리고 협의이혼 진행 절차과정 중에서의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 도움 받고 싶은 서비스와 이혼 이후의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 등의 파악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녀의 복리도 함께 고려하여 실행될 수 있는 이혼위기가족의 이혼 전과 법적 진행과정 및 이혼 이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절차와 함께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 등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이혼위기가족과 이혼의 개념, 유형, (증가)원인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혼관련 통계 현황과 이혼관련 가치관 · 태도에 대한 변화를 분석함

○ 제3장에서는 이혼 및 이혼위기가족 관련법과 중앙과 전북의 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국내 타 지자체의 이혼위기가족 지원정책과 국외 이혼위기가족 지원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함

○ 제4장에서는 전북지역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개별면접조사와 더불어 협의이혼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각 기관별 현장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협의이혼 신청자의 이혼 전과 법적 진행과정 및 이혼 이후의 전반반적인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분석함

○ 마지막 제5장에서는 3장의 국내·외 지원정책 사례분석과 4장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신청자의 이혼관련 전반적인 실태 및 현 지원정책의 한계점과 정책적 욕구분석 등을 토대로 전북지역의 미성년자녀를 고려한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함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검토

○ 이혼위기가족 관련 논문 및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 등의 검토로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의 개념·사유·증가원인 등의 내용 고찰

○ 제·개정된 법률 검토로 이혼 및 이혼위기가족 관련법 분석

○ 보건복지부 및 전라북도 행정자료 수집·검토로 이혼위기가족 지원정책 현황 파악

2) 통계자료 분석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조사, 장래가구추계 등 자료로 전국 및 전북 이혼관련 통계현황 및 추이 파악

○ 통계청의 「사회조사(2006~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2012·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15)」 등의 자료 중 '이혼관련 가치관 및 태도' 변화를 분석함

3) 설문 및 심층면접조사

○ 설문조사

- (조사대상) 법원과 연계하여 상담을 받는 협의이혼신청자, 법원과 연계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안내를 받는 협의이혼신청자, 200명
- (조사방법) ①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하는 상담위원에게 1:1 면접 설문조사 부탁 ② 법원과 연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안내를 받는 협의이혼신청자 대상 교육장소에서 연구진이 직접 설문지 배부 및 회수
- (조사내용) 결혼기간, 자녀 수 및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및 맞벌이 여부, 이전 결혼경험 유무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혼의 주된 사유, 이

혼위기 및 이혼결정 시 가장 어려웠던 점, 이혼 전과 후 전반적 생활실태(주거 및 경제생활, 가족지원체계, 자녀양육과 교육 등) 및 현 정책지원의 도움정도와 문제점·개선점, 이혼위기 당시 및 이혼 이후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 등

○ 개별심층면접조사

- 심층면접조사는 참여자들의 관점과 주관성, 감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연구방법, 표준화된 설문조사로 드러나지 않은 심층적인 경험 실태, 각기 상이한 어려움 및 상황별에 따른 다층위적인 문제와 필요한 지원정책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조사대상) 법원과 연계하여 상담을 받고 있는 협의이혼신청자, 법원과 연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는 협의이혼신청자 중 개별심층면접에 동의한 사람 11명

- (조사방법) 개별면접신청자가 원하는 장소(주거지 근처 조용한 카페, 집, 연구원, 법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실)에서 약 1~2시간 정도 면접,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녹취내용 전사하여 자료 분석

- (심층면접내용) 면접신청자의 일반적 배경,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이혼의 주된 원인, 이혼 진행 절차 상 당면한 문제, 법원연계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의 만족도와 문제점, 이혼 이후의 생활과 당면한 어려움 및 사회적 지지정도, 현 지원 정책의 혜택정도·문제점·개선점 및 향후 바라는 정책 요구도 등 파악

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조사대상) 협의이혼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전문가(법원의 이혼상담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법원연계 교육사업 담당자, 법원 협의이혼 관련 실무자), 한부모 관련 사업 담당자 등 16명

- (조사방법) 동일 직종의 현장전문가 집단별 면접, 약 2시간 정도

- (조사내용) 일반적 배경(성별, 연령, 학력, 전공, 근무년수/경력, 자격증 등), 협의이혼신청자의 이혼관련 전반적인 실태와 주요 쟁점, 법원의 협의이혼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 및 이혼 이후의 어려워하는 점들, 현 지원정책의 효과성 및 한계점,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선방안 및 필요 지원정책 등

5) 전문가 자문

○ 전문가자문회의

- 연구 방향·방법 및 면접내용 구성과 연구결과에 따른 타당성, 정책 제언의 효과성에 대한 자문 및 기타 제안사항 등
- 가족(복지정책)학 전공 교수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가족정책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통해 전북지역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파악과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방향 수립

○ 전북도 담당부서 의견수렴

- 연구방향과 내용 및 연구결과에 따른 지원정책 관련 의견수렴 등

나. 연구절차

○ 위와 같은 연구내용과 방법에 따라 연구의 추진절차를 도식화하여 단계별 살펴보면 〈그림 1-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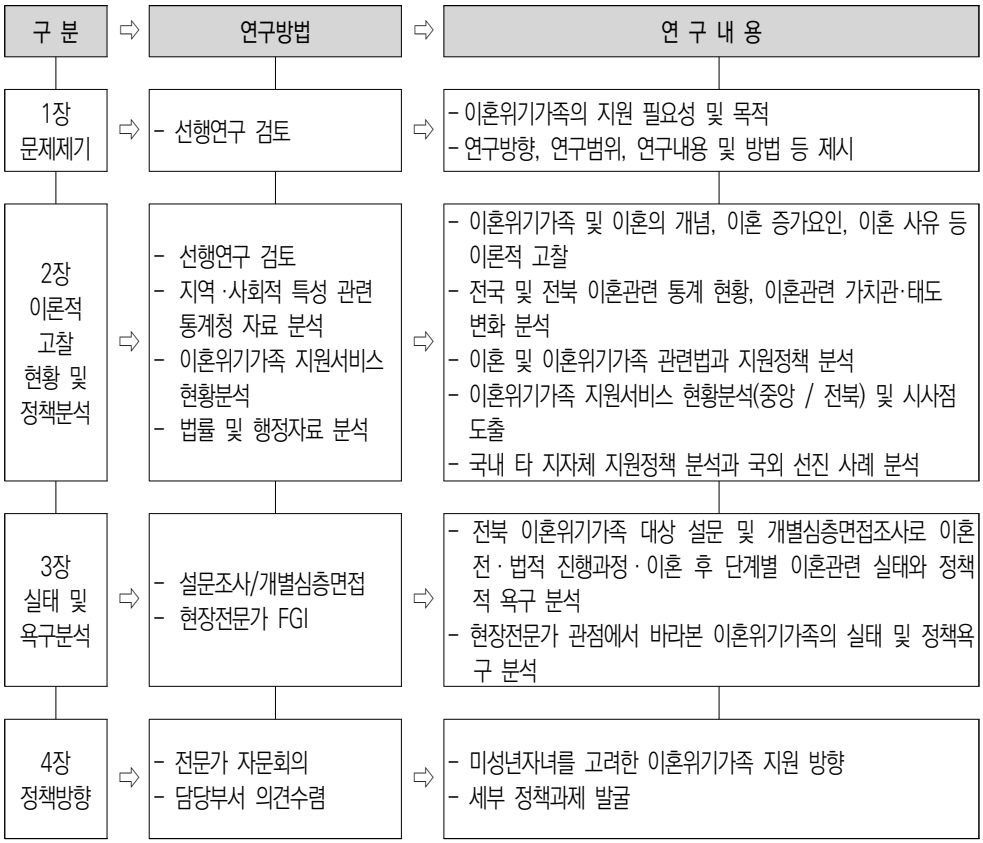
구 분
연구방법
연 구 내 용
1장
문제제기
- 선행연구 검토
- 이혼위기가족의 지원 필요성 및 목적
- 연구방향, 연구범위, 연구내용 및 방법 등 제시
2장
이론적
고찰
현황 및
정책분석
- 선행연구 검토
- 지역·사회적 특성 관련 통계청 자료 분석
-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분석
- 법률 및 행정자료 분석
-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의 개념, 이혼 증가요인, 이혼 사유 등 이론적 고찰
- 전국 및 전북 이혼관련 통계 현황, 이혼관련 가치관·태도 변화 분석
- 이혼 및 이혼위기가족 관련법과 지원정책 분석
-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분석(중앙 / 전북)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타 지자체 지원정책 분석과 국외 선진 사례 분석
3장
실태 및
욕구분석
- 설문조사/개별심층면접
- 현장전문가 FGI
- 전북 이혼위기가족 대상 설문 및 개별심층면접조사로 이혼 전·법적 진행과정·이혼 후 단계별 이혼관련 실태와 정책적 욕구 분석
-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이혼위기가족의 실태 및 정책욕구 분석
4장
정책방향
- 전문가 자문회의
- 담당부서 의견수렴
- 미성년자녀를 고려한 이혼위기가족 지원 방향
- 세부 정책과제 발굴

〈그림1-1〉 연구 추진 절차

제 3 절 본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함

○ 한국의 사회적 정서 상 여전히 부부갈등에 따른 이혼문제를 주위에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혼위기 부부나 가족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랐고 이에 경험적 연구가 미비한 실정임

○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갈등의 심화로 이혼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가 전문상담 기관을 찾아오는 사례들을 대상으로 상대적 사례 수는 적지만 양적 · 질적연구 성과가 다소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혼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형성훈, 2006), 이혼위기 극복을 위한 상담연구(이승하, 2006), 부부갈등 극복과 이혼위기 극복에 관한 연구(이화연, 2005),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를 위한 상담(조현주, 2008)등 다양한 주제의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박성주, 박재황, 2011; 49, 13-23, 재인용)[2)]

○ 최근까지 이루어진 이혼위기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혼위기'를 나타내는 조사대상자의 범주로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서미아, 2015; 윤경자, 2015)', '결혼생활에서의 불만족이 고조되어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상담을 받은 부부(박태영, 김태한, 김혜선, 2009; 이현주, 임명용, 2012)', '부부갈등이 심하여 부부관계의 불안정성 정도가 높은 부부(이명신, 2006)', '이혼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협의 및 재판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적절차를 단계별로 밟기 시작한 숙려기간에 있는 부부(박주성, 박재황, 2011; 변은주, 2017; 신유경, 2008; 오세정, 2015; 전현덕, 2016)'로 조작적 정의 한 연구들이 있음. 이중 다수의 연구들은 '이혼위기 대상자'를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에 있는 대상자를 연구의 조사대상자로 다루고 있었음

---

2) 박성주, 박재황(2011).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47-73.

○ 이상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이혼위기(부부)가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법원에 협의이혼의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협의이혼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자 및 숙려기간 내에 있는 자이면서 미성년 자녀를 둔 자로 한정하여 설문 및 개별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주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녀양육안내교육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 및 군산지원의 의무 상담을 받고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 중 자발적인 설문 응답자 및 면접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개별심층면접조사가 실시되었음

2 장

이혼위기가족 이론적 고찰 및 이혼관련 현황

제 1 절 이혼위기가족의 이론적 고찰
제 2 절 이혼관련 현황

제 2 장 이혼위기가족 이론적 고찰 및 이혼관련 현황

제 1 절 이혼위기가족의 이론적 고찰

가.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이해

1) 위기 및 위기가족의 개념

○ 위기란 개인이 접하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 중 일정기간 내에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대처능력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해결 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 그 자체와 함께 상황에 대한 공포, 충격, 고통의 감정도 함께 포함됨. 이에 위기는 어려운 사건과 상황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역기능을 초래함

○ 위기가족이란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원과 대처방식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일상적인 가족의 균형체계가 이전의 평형체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가족원 개개인이 당황, 위험, 곤경, 절박감 등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이로 인해 가족 경제체계의 기반 붕괴, 가족원간의 역할 변동, 갈등과 폭력 발생, 긴장과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해체를 초래함

○ 즉, 위기가족이란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원과 대처방식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일상적인 기능이 마비되며 가족관계를 위협하고 갈등을 심화시켜 결국에는 가족해체에 이르게 함

2) 이혼위기가족의 개념

○ 이혼위기가족이란 부부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의 위기에 처해있거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가족을 일컬음

○ 즉, 이혼위기가족이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 부부간의 성격 및 사고방식 차이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유로 서로에 대한 급성 혹은 만성적인 불만과 실망으로 갈등과 분노가 심화되어 결혼생활 전반에 위기가 닥쳐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려고 심각하게 고려하는 가족(부부)을 일컬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위기가족을 부부갈등의 심화로 이혼위기에 처해있거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부 중 특히 이혼하기 위해 법적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한 협의이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정함

나. 이혼에 대한 이해

1) 이혼의 개념 및 유형

○ '이혼'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법적으로 형성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고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함

○ 민법에서는 이혼을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함.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한 경우라 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은 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쪽 일방의 이혼에 대한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임(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18-04-15 작성 기준)

○ **(협의이혼)** 부부의 이혼을 초래하는 원인과 동기에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롭게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 협의 만 있으면 이루어짐

○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 의사 및 의지를 강제적으로 진행·청구하기 위해 법률이 규정한 이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 중 일정

이혼사유를 근거로 관할가정법원(지방법원)에 이혼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

2) 이혼의 주된 사유

○ 대표적인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면, 부부불화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부부불화에 해당되는 것은 성격차이, 배우자 부정, 정신·신체적 폭력 및 학대로 구분됨. 특히, 부부 간 성격차이가 배우자 부정이나 폭력 및 학대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즉, 이혼의 주된 사유는 부부관계 및 생활의 질과 관련된 요인인 성격차이, 생활양식·사고방식 차이, 대화 단절 등이 이혼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혼의 원인과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 및 폭력, 음주, 낭비 등 행동에 대한 문제적 사건들이 이혼의 사유로 작용하긴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이혼의 직접적 사유로는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직접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기존에 내재되어 있던 잠재적 문제에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현재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이혼 원인이 있어야 함.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어기는 일체의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악의로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할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본인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마지막으로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임

○ 1호에서 5호까지의 이혼원인이 유책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6호는 상대적 이혼사유로서 부부관계를 현실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고 있음

○ 위 6호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매우 다양함. 불신, 성격차이, 대화단절, 성교거부, 중독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중에서도 남녀 모두 ‘성격차이’가 가장 많음. 다음으로 여성은 경제갈등, 남성은 배우자의 이혼강요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2-1〉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에 대한 주요내용

○ 이와 같이 가장 많은 비율의 이혼사유로 작용한 ‘성격차이’는 단순히 부부 개개의 성격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며, 다음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내재해 나타남

- (가치관의 차이) 개인의 가치관이 부부간에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사회와 가정에 널리 퍼진 성평등 이념에 따르는 여성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임. 이로 인해 한 가족 안에서도 가부장적 가치관과 성평등적 가치관 간에 충돌이 가족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함

- (가족문화의 차이) 사회와 가족생활 양식 등에 있어서 가치관의 차이와는 다소 다른 측면으로 성장하면서 형성된 원가족의 생활양식, 행동양식 혹은 관습의 차이로서 상대방의 특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가치관만 주장하는 경우

- (성격특성에 따른 부조화) 부부간 행동양식의 차이는 위 두 요인 외에 각자가 지닌 심리학적 성격특성에 의해 영향 받음. 자신과 다른 성격특성에 대해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대할 때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 (경제운용방식의 차이) 6호 사유(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들 중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결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낭비벽 등으로 인해 불신의 골이 깊어져 결혼생활을 유지시키지 못하게 원인으로 작용함
- (의사소통의 문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남편의 대화부족임.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인 한국인들의 대화기술의 미숙은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함. 이로 인해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갈등을 증폭시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임

3) 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

○ 현대사회에서 이혼 증가의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음.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가치관의 변화, 도덕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적 자립, 이혼 관련 법제적 요인 변화, 자녀수 감소와 자녀가치관 변화, 사회적 의식 변화 등을 꼽을 수 있음(이영숙외 공저, 「가족문제론」, 학지사, pp. 3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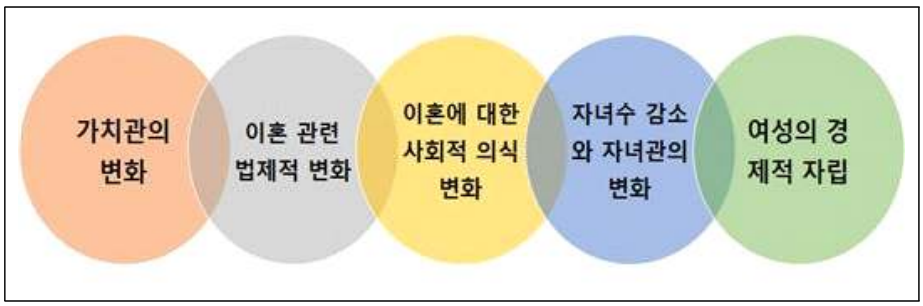

〈그림 2-2〉 이혼 증가의 원인

○ (가치관 변화) 과거에는 개인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 하였고, 가부장적 인식으로 남편의 권위를 우선시 하는 부부관계가 사회적 통념으로 작용함.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와 기능이 변화되어 부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집단의식에서 개인중심적인 의식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혼 역시 자신을 위한 삶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혼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

○ (이혼관련 법적 변화) 과거에는 가족유지를 목적으로 개인의 행복 보다 가족의 유지를 위해 이혼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음.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를 지향함과 동시에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고, 자녀의 면접교섭권, 자녀양육권의 선택 및 조정 등 이혼 관련 불평등 조항들이 개정됨

○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혼은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이혼을 실패한 인생으로 주위에서 받아들여졌음. 하지만 결혼이 개인의 행복을 저해할 경우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재출발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서 행복한 이혼을 선택하여 불행한 결혼생활을 단절하는 것이 좋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

○ (자녀 수 감소와 자녀관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 수 감소는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될 때 자녀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이혼으로 인해 얻게 되는 부담이 적을 수 있음. 또한 과거에는 자녀로 인해 이혼을 체념하였으나, 현재는 자녀로 인해 부부 개인의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가치관으로 변화함. 이혼가정이라도 부모의 갈등으로 불행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지속하는 것 보다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짐

4) 이혼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

○ 이혼의 사유가 무엇이든 이혼을 하면 부부갈등에서 벗어나는 해방감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경제적·정서적·사회적 문제가 뒤따름. 이혼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를 긍정적 및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봄

○ 이혼으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

- 스스로 이혼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남성과 여성은 불행한 결혼관계로 생겨나는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불행한 결혼을 유지하기보다 이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
- 이혼의 경험을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이혼이라는 시련을 통해 자신을 성숙된 인간으로 발전시킴. 즉 새로운 생활에 대한 도전을 통해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 또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함
- 자녀입장에서 부모의 심각하고 빈번한 갈등이 사라짐에 따라 한부모와의 집중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심리적 혼란감 등이 다소 해결됨
- 이혼 이후의 다양하고 많은 어려움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여성이 이혼한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 심리적으로 더 잘 적응하며,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경험하는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남(Wallerstein, 1986). 반면, 이혼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들은 미성년자녀와의 별거로 외로움과 자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함을 느끼며 많은 상실감과 함께 고통을 받게 됨

○ 이혼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변화

- 이혼이란 사건으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자녀 대부분은 심리 ·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됨. 자존감의 저하, 외로움, 상실감, 무력감, 자책감, 우울증상과 동시에 극심한 분노 등의 다양한 양가감정을 갖고 차츰 감정이 정리되면서 외로움이 가장 크게 자리 잡게 됨

- 다음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와 한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겪게 됨. 홀로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며, 집안관리 및 재정관리, 자녀교육관리, 노후관리까지의 다층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 신체적 건강의 악화도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함. 특히 남성의 경우 표현하지 않을 뿐 상당한 정서적 및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무기력감, 역할전환에 따른 자녀양육과 가사의 어려움 등도 겪음

-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의 심리적·행동적 문제 또한 발생함. 부모 이혼으로 자녀들은 분노, 공격성, 죄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유발과 더불어 왜곡된 자아개념, 낮은 자존감, 반사회적 행동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동승자, 2000; 박태영 , 2004; 이훈구, 2004). 정신과 전문의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혼 자녀의 50%가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며, 특히 사춘기 이하의 자녀들이 갖는 심리적 타격은 심각함(동아일보, 2003.11.23)

-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심각함. 황의각 외(2004)연구보고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직접비용으로 위자료, 자녀양육비, 자녀와 만나기 위한 비용을, 간접비용으로 사회적 체면 품위손상비용, 정신적 고통으로 산정한 결과 이혼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총 2조 9천 9백 4십 억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산함

제 2 절 이혼 현황

가. 전국 및 전북의 이혼관련 통계 현황

○ 어떤 방식으로 이혼율을 산정하여도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혼인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그 증가율과 감소율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우리나라 이혼율 증가 추세는 혼인하는 부부 대비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의 변화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1996년에 434,911쌍이 혼인하고 79,895쌍이 이혼하여 그 비율이 18.37%였던 것이 2017년에는 264,455쌍이 혼인하고 106,032쌍이 이혼하여 그 비율이 40.1%가 되어 20년 동안 2.2배가량 증가함.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가정의 자녀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OECD의 2016년 가족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이혼율 2.1으로 OECD 평균 2.0보다 높은 수준으로 1970년 0.4, 1995년 1.5로 지속 증가 추세. 34개 조사대상국 중 미국(3.2), 리투아니아(3.1), 덴마크(3.0) 등에 이어 한국은 6위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로 나타남. 일본 조이혼율은 1.7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며 서구 국가들의 이혼율 역시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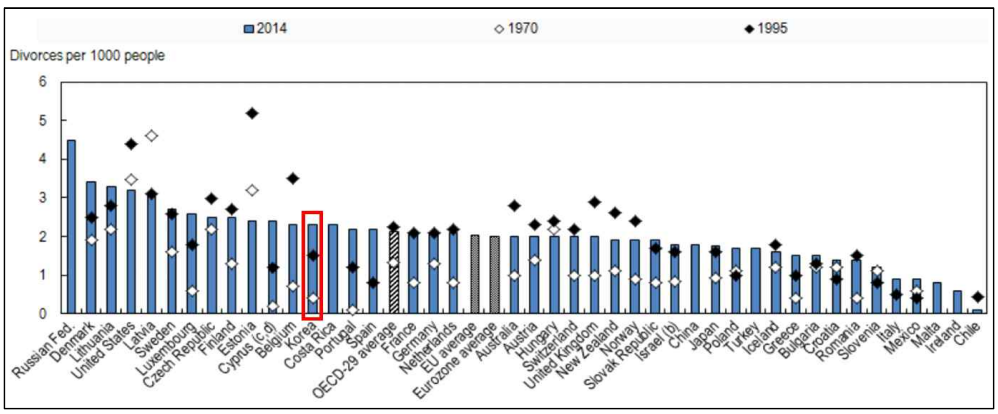

주: Data extracted on 28 May 2018 02:00 UTC (GMT) from OECD.Stat

〈그림 2-3〉 OECD 국가의 조이혼율(2014)

1) 이혼건수 및 이혼율 현황

○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 이혼건수는 106,032건으로 전년보다 1.2%감소(-1천3백건)함. 조이혼율(인구 천 명 당 이혼건수)은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최저임.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천 명 당 이혼건수)은 4.4건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2017년 한 해 동안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부부가 하루 평균 290쌍으로 나타남

〈표 2-1〉 이혼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2007-2017)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혼건수(천 건)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유배우 이혼율	5.2	4.9	5.2	4.8	4.7	4.7	4.8	4.8	4.5	4.4	4.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년 12월말 기준(2018. 3. 20발표)
유배우 이혼율 : 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천 명당 건

〈그림 2-4〉 이혼건수 및 유배우 이혼율 추이(2007-2017)

○ 전국 시·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을 살펴보면, 시도별 이혼건수는 경기도가 26,9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7,083건, 경남 7,355건, 인천 6,988건 순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인혼건수는 세종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 경북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이혼구성비를 살펴보면, 역시 경기도가 25.4%로 가장 높고, 서울 16.2%, 경남 6.9% 순으로 나타났고, 조이혼율은 인천·제주가 2.4건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남 2.3건, 경남·울산 2.2건으로 나타남

〈표 2-2〉 전국 시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7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혼건수	17,083	6,651	4,380	6,988	2,694	2,855	2,519	465	26,924	3,263	3,461	4,835	3,698	4,008	5,505	7,355	1,533
구성비	16.1	6.3	4.1	6.6	2.5	2.7	2.4	0.4	25.4	3.1	3.3	4.6	3.5	3.8	5.2	6.9	1.4
조이혼율	1.8	1.9	1.8	2.4	1.8	1.9	2.2	1.8	2.1	2.1	2.2	2.3	2.0	2.1	2.1	2.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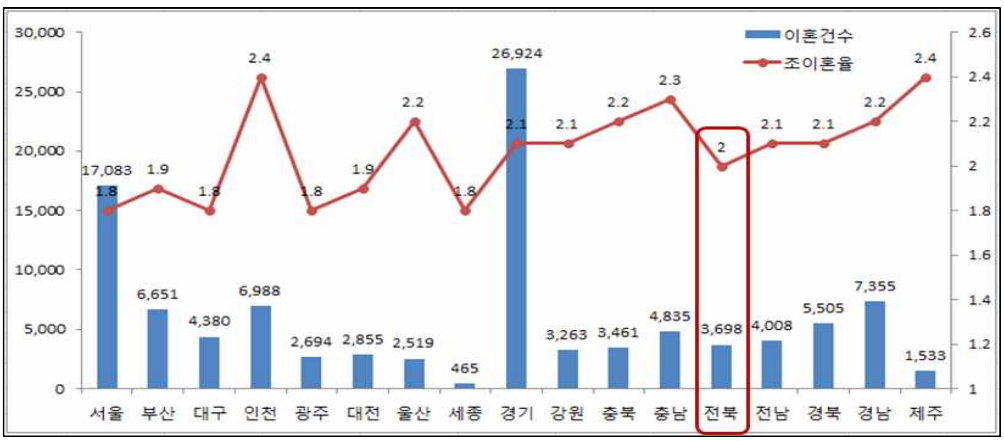

〈그림 2-5〉 전국 시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7년)

○ 전라북도 이혼건수는 3,698건으로 전년보다 7% 감소(-281건)함. 조이혼율은 2.0건이나, 유배우 이혼율은 4.4건으로 유사함. 전북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부부가 하루 평균 10쌍으로 나타남

○ 전국과 전북 모두 이혼이 감소하는 것은 혼인건수 자체가 점차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3〉 이혼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2007-2017)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이혼건수(천 건)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조이혼율	2.5	2.4	2.5	2.3	2.3	2.3	2.3	2.3	2.1	2.1	2.1
	유배우 이혼율	5.2	4.9	5.2	4.8	4.7	4.7	4.8	4.8	4.5	4.4	4.4
전북	이혼건수(천 건)	4.4	3.8	4.3	3.9	4.2	3.9	4.1	4.1	3.8	4.0	3.7
	조이혼율	2.4	2.0	2.3	2.1	2.2	2.1	2.2	2.2	2.0	2.1	2.0
	유배우 이혼율	5.1	4.8	5.0	4.7	4.7	4.6	4.7	4.6	4.4	4.4	4.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년 12월말 기준(2018. 3. 20발표)

조이혼율 : 인구 천명당 이혼 건수(총 이혼건수÷연앙 총 인구)×1000, 유배우이혼율: (총 이혼건수÷ 유배우가구수)×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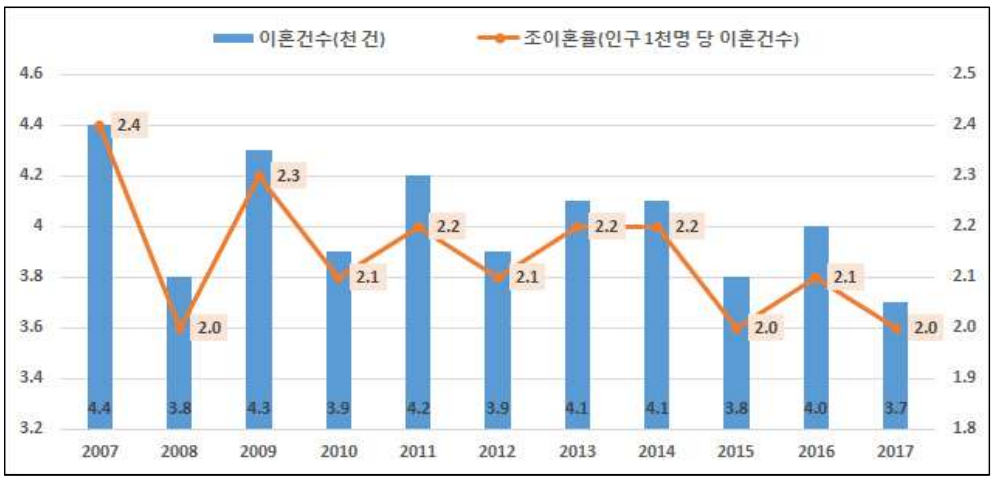

〈그림 2-6〉 전라북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2007-2017)

○ 2017년 기준 전라북도 지역별 이혼건수를 살펴보면, 전주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북도 총 이혼건수 중 30.9%의 비율을 차지함. 다음으

로 익산 680건(18.4%), 군산 650건(17.7%), 정읍 252건(6.8%) 등의 순을 보임. 군 단위에서는 완주 200건, 고창 118건, 부안 109건을 보였고 무주가 30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조이혼율을 살펴보면, 군산이 2.4로 가장 높았으며, 익산 2.3, 정읍 2.2, 완주 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군산의 조이혼율(2.4)는 가장 낮게 나타난 무주(1.2)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이혼건수가 가장 많은 전주는 인구 천 명당 이혼율인 조이혼율이 전라북도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익산과 군산은 전북에서 2·3순위의 이혼건수를 나타내면서 조이혼율 또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내어 전북지역에서 이혼위기가족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줌

〈표 2-4〉 전라북도 시군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7년)

구 분	이혼건수	비율	조이혼율 (천명당)
전국	106,032		2.1
전라북도	3,698		2.0
전주	1,141	30.9	1.8
군산	653	17.7	2.4
익산	680	18.4	2.3
정읍	252	6.8	2.2
남원	159	4.3	1.9
김제	173	4.7	2.0
완주	200	5.4	2.1
진안	45	1.2	1.7
무주	30	0.8	1.2
장수	38	1.0	1.6
임실	60	1.6	2.0
순창	40	1.1	1.3
고창	118	3.2	2.0
부안	109	2.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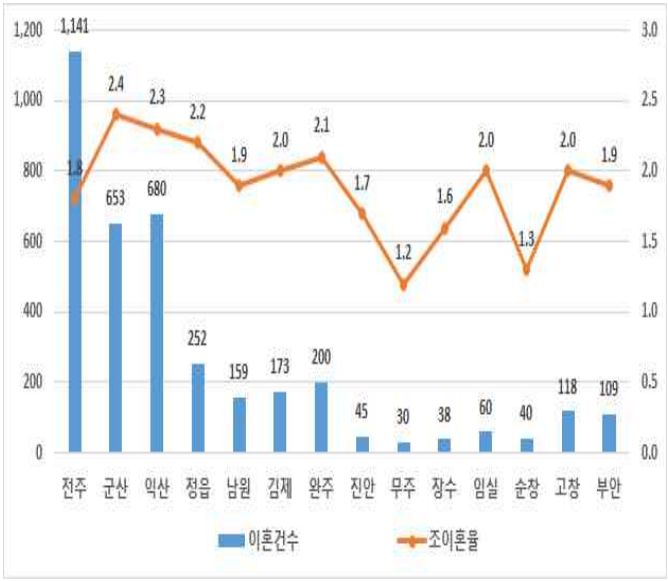

2) 평균 이혼연령 및 혼인지속 기간에 따른 이혼건수

○ 전국 평균 이혼연령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남성 47.6세, 여성 44.0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4.4세, 4.5세가 상승함. 전북의 경우도 2017년 기준 평균 이혼연령이 남성은 47.2세, 여성은 43.1세로 나타났고, 전국대비 남성은 0.4세, 여성은 0.9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18.7%, 40대 초반 15.8%, 50대 초반 15.2%순임. 여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 17.3%, 40대 초반 17.1%, 30대 후반 15.9% 순임

〈표 2-5〉 남녀 평균 이혼 연령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증감	
									전년대비	10년전 대비
전국	남	43.2	44.5	45.4	46.2	46.9	47.2	47.6	0.4	4.4
	여	39.5	40.7	41.5	42.4	43.3	43.6	44.0	0.4	4.5
전북	남	42.8	44.1	44.9	45.7	46.7	46.7	47.2	0.5	4.4
	여	38.8	40.0	41.0	41.8	42.3	42.7	43.1	0.4	4.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년 12월말 기준(2018. 3. 20발표)

○ 전국 이혼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5년으로 나타남. 혼인지속기간 4년 이하(22.4%) 또는 20년 이상(31.2%) 부부이혼이 전체 이혼의 53.6%를 차지함. 즉 이혼의 절반이상은 결혼 4년차 이하나 20년 이상 부부에서 주로 발생함

○ 전북의 경우 혼인지속기간별 이혼율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전국보다 1.5%p 낮은 29.7%로 가장 많고, 4년 이하가 22.4%로 뒤를 이음

○ 5년 이상 20년 미만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혼인지속기간이 10년 이하인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41.1%를 차지함. 이는 많은 이혼가족의 자녀들은 대부분이 10세 미만의 어린나이이며, 이 어린나이에 부모의 이혼과정과 이혼을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경험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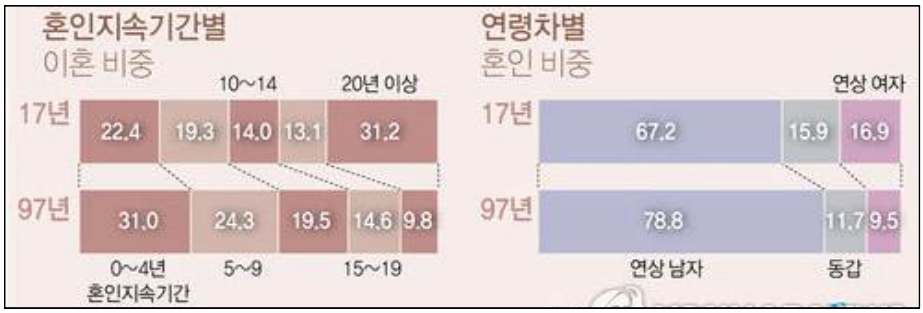

〈그림 2-7〉 혼인지속기간별 및 연령차별 이혼비율

〈표 2-6〉 혼인지속기간별 이혼건수 및 비율

	구분	1997	비율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비율
전국	계	91,160	(100.0)	124,072	123,999	114,284	115,292	109,153	107,328	106,032	(100.0)
	4년 이하	28,235	(31.0)	33,670	33,718	30,689	27,299	24,666	24,597	23,749	(22.4)
	5~9년	22,115	(24.3)	25,493	23,636	21,700	21,533	20,796	20,606	20,471	(19.3)
	10~14년	17,775	(19.5)	21,662	19,986	17,370	16,851	14,860	14,663	14,842	(14.0)
	15~19년	13,315	(14.6)	18,252	18,398	16,226	17,176	16,205	14,868	13,846	(13.1)
	20년이상	8,931	(9.8)	24,995	28,261	28,299	32,433	32,626	32,594	33,124	(31.2)
	평균	12.3	-	12.3	12.9	13.2	14.1	14.6		15.0	-
전북	계	3,270	(100.0)	4,417	4,285	4,176	4,144	3,755	3,979	3,698	(100.0)
	4년 이하	1,027	(31.4)	1,265	1,155	1,198	1,047	852	933	829	(22.4)
	5~9 년	805	(24.6)	885	800	812	778	761	796	691	(18.7)
	10~14년	666	(20.4)	797	709	647	613	536	593	581	(15.7)
	15~19년	464	(14.2)	609	649	574	616	588	569	500	(13.5)
	20년이상	286	(8.7)	861	972	945	1,090	1,018	1,088	1,097	(29.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년 12월말 기준(2018. 3. 20발표)

3)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이혼건수

○ 전국의 이혼건수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의 이혼은 5만 1백건으로 전체 이혼의 47.2%임. 이 중 미성년자녀가 단 1명인 이혼 구성 비율은 25.2%, 2명은 18.5%, 3명 이상은 3.5%를 차지하고 있음

○ 전북의 경우 2017년 이혼건수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의 이혼은 1천 9백건으로 전체 이혼의 51.6%를 차지하였고, 이중 미성년 자녀가 1명인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23.4%, 2명은 22.3%, 3명 이상은 5.9%였음. 한편, 2017년 전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부부의 이혼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약 10%p가 감소하였으나 전국 비율 보다는 4.4%p 높음

〈표 2-7〉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비율(2007-2017)

구분		2007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율)
전국	계	124.1 (100.0)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100.0)
	미성년 자녀있음	72.8 (58.7)	63.0	68.5	62.9	60.1	60.3	59.0	57.2	52.8	51.0	50.1 (47.2)
	1명	32.2 (26.0)	28.5	31.5	30.0	29.0	29.9	30.1	30.0	27.8	27.3	26.7 (25.2)
	2명	35.2 (28.3)	29.8	31.9	28.3	26.7	26.2	24.7	23.3	21.2	20.0	19.7 (18.5)
	3명이상	5.4 (4.4)	4.7	5.1	4.6	4.4	4.1	4.2	3.9	3.8	3.7	3.7 (3.5)
	미성년 자녀없음	50.9 (41.0)	52.9	55.1	53.7	53.9	53.7	56.1	58.1	55.6	55.4	54.4 (51.3)
전북	계	4.4 (100.0)	3.8	4.3	3.9	4.2	3.9	4.1	4.1	3.8	4.0	3.7 (100.0)
	미성년 자녀있음	2.7 (61.1)	2.2	2.5	2.2	2.3	2.1	2.2	2.2	2.0	2.1	1.9 (51.6)
	1명	1.1 (24.2)	0.9	1.0	0.9	1.0	0.9	1.0	1.0	0.9	1.0	0.9 (23.4)
	2명	1.3 (29.0)	1.0	1.2	1.0	1.0	0.9	1.0	0.9	0.8	0.8	0.8 (22.3)
	3명이상	0.4 (8.0)	0.3	0.3	0.3	0.3	0.2	0.2	0.2	0.2	0.2	0.2 (5.9)
	미성년 자녀없음	1.7 (38.5)	1.6	1.8	1.7	1.9	1.7	1.9	1.9	1.8	1.9	1.8 (47.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년 12월말 기준(2018. 3. 20발표)

4) 이혼사유

○ 2000년대 이전 이혼사유를 부부불화, 경제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분류하였을 때, 전체 이혼에서 80%이상이 부부불화로 인한 이혼으로 분류되었던 것에 비해, 2000년 이후 배우자 부정행위, 정신적·신체적 학대, 가족간의 갈등·불화,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등으로 보다 세밀하게 이혼사유를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성격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즉, 2017년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성격차이에 따른 이혼'이 전국 43.1%(45,676건), 전북 49.2%(1,821건)으로 1위를 차지함. 2위는 경제문제(전국 10.1%(10,742건), 전북 9.8%(362건)가 차지함. 3위와 4위는 가족간 불화와 배우자의 부정으로 나타남

〈표 2-8〉 이혼사유별 이혼현황

구분	소계	성격차이	경제문제	가족간 불화	배우자 부정	이유 불분명	정신·육체적 학대	건강문제	기타
전국	106,032 (100.0)	45,676 **(43.1)**	10,742 (10.1)	7,523 (7.1)	7,528 (7.1)	8,937 (8.4)	3,837 (3.6)	594 (0.6)	**21,195 (20.0)**
전북	3,698 (100.0)	1,821 **(49.2)**	362 (9.8)	307 (8.3)	243 (6.6)	121 (3.3)	151 (4.1)	23 (0.6)	**670 (18.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년 12월말 기준(2018. 3. 20발표)

○ 전라북도의 연도별에 따른 이혼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성격차이'가 각 연도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높게 나타남. 한편, 과거와는 다르게 '가족간 불화' 및 '배우자의 부정'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반면에 '기타' 사유로 인한 이혼 비율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다양한 이유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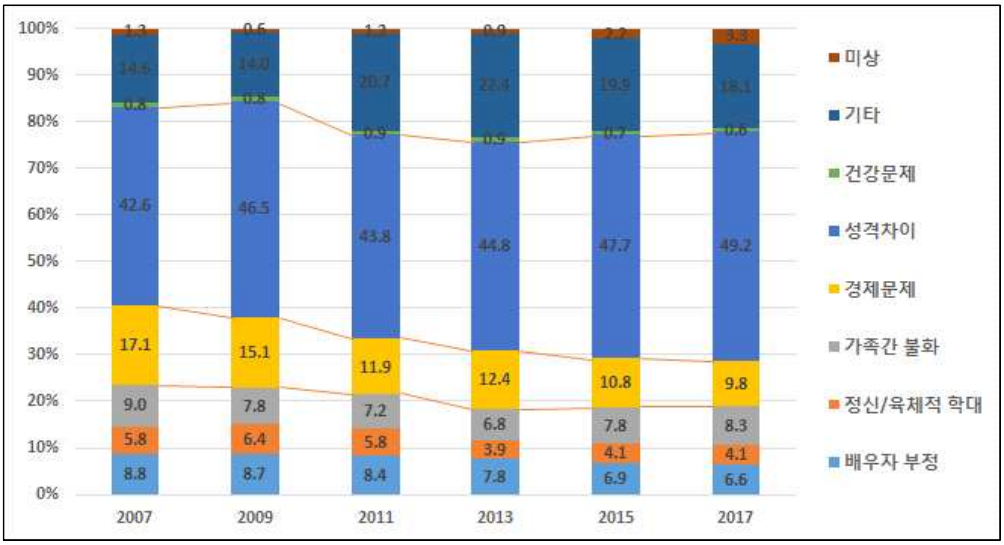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년 12월말 기준(2018. 3. 20발표)

〈그림 2-8〉 전라북도 연도별에 따른 이혼사유 현황

○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5) 자료에서 배우자와 이혼·별거한 사유에 대한 응답을 성별 및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녀 모두 경제적 문제, 외도 등 애정문제 순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외도 등 애정문제,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및 중독에 의한 이혼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남

○ 반면, 30대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도 등 애정문제가 높게 나타남. 40대 이후부터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높게 나타남

〈표 2-9〉 성별과 연령대별 이혼사유

구 분		외도 등 애정문제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실직 및 빚보증)	자녀 문제	친인척 문제	폭력	중독 (술/도박)	나이차이	기타
성별	남성	12.2	**63.8**	**18.6**	1.0	1.4	**0.0**	1.8	0.3	1.0
	여성	18.0	**45.4**	**18.6**	1.3	1.3	**4.7**	8.9	0.7	1.1
	전체	15.6	**52.8**	**18.6**	1.2	1.3	2.8	6.1	0.5	1.0
연령	20대	**29.6**	**22.0**	**23.6**	0.0	0.0	0.0	**24.8**	0.0	0.0
	30대	**25.9**	**48.1**	**9.1**	2.2	1.5	8.1	5.0	0.0	0.0
	40대	11.8	**55.8**	**19.0**	0.0	2.6	2.6	7.3	0.0	0.9
	50대	14.2	**54.2**	**21.2**	0.8	1.0	2.1	4.5	0.6	1.5
	60대	11.0	**57.0**	**22.1**	0.0	0.0	1.5	5.5	1.5	1.3
	70대이상	**32.5**	30.3	12.7	11.6	0.0	0.0	10.6	2.2	0.0
	전체	15.6	52.8	18.6	1.2	1.3	2.8	6.1	0.5	1.0

자료: 여성가족부(2015) 가족실태조사

○ (시대별 이혼사유의 변화)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서 1956년에서 2015년까지의 이혼관련 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대별로 이혼관련 상담내용과 이혼 사유 등에 뚜렷한 특징이 나타남

○ 60년간 이혼사유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60년대 까지는 외도, 간통, 혼인빙자간음 등에 의한 이혼이 높았고, 8·90년대에는 남편의 가정폭력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IMF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이 많이 나타났음. 최근 2010년대에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에 의한 이혼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0〉 시대별 이혼사유의 변화

구분	이혼 사유	
1950~60년대	**사실혼 해소**	외도, 간통, 혼인빙자간음 등의 사유
70년대	**생사불명**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으로 오랜 기간 배우자 생사 불명
80년대	**가정폭력**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간 아내 가출
90년대	**가정폭력**	남편의 폭력에 대한 부당 대우 호소
2000년대	**부당대우 및 경제문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IMF로 인한 경제문제
2010년대	**성격 차 및 삶의 질**	애정상실·대화 단절 등 추상적이고 입증 어려운 사유 부모부양 갈등, 유언·상속, 파산 등

자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시대별 이혼 상담 통계분석

5) 이혼종류별(협의 및 재판)에 따른 이혼현황

○ 이혼종류별(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등)에 따른 이혼건수 및 이혼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1997년 협의이혼 건수가 재판이혼 건수에 비해 약 4배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997년 이후 협의이혼 건수는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124,072건으로 전체 이혼의 약 84.7%%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 기준 협의이혼은 전체 이혼의 약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협의이혼 비율이 재판이혼 비율보다 4배가량 높으며 2017년 기준 협의이혼 비율이 전체 이혼건수의 약 79%로, 재판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건수의 약 21%를 나타냄. 즉 협의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혼부부의 1/2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있는 현실임

〈표 2-11〉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및 이혼율

구 분		1997	2000	2007	2010	2016	2017
전국	계	91,160	119,455	124,072	116,858	107,328	106,032
	협의이혼	73,863(81.0)	99,797(83.5)	105,055(84.7)	87,834(75.2)	84,008(78.3)	83,038(78.3)
	재판이혼	16,833(18.5)	19,213(16.1)	18,871(15.2)	29,018(24.8)	23,295(21.7)	22,973(21.7)
	미상	464(0.5)	445(0.4)	146(0.1)	6(0.0)	25(0.0)	21(0.0)
전북	계	3,270	4,200	4,417	3,910	3979	3,698
	협의이혼	2,624(80.2)	3,501(83.4)	3,701(83.8)	2,877(73.6)	3098(77.9)	2,926(79.1)
	재판이혼	639(19.5)	641(15.3)	715(16.2)	1,033(26.4)	881(22.1)	772(20.9)
	미상	7(0.2)	58(1.4)	1(0.0)	0(0.0)	0(0.0)	0(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년 12월말 기준(2018. 3. 20발표)

나. 이혼관련 가치관 및 태도 변화

1) 통계청, 「사회조사(2006~2016)」

○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혼에 대한 수용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전북의 경우 2010년 이전에는 전국에 비해 이혼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낮았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전국에 비해 이혼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보다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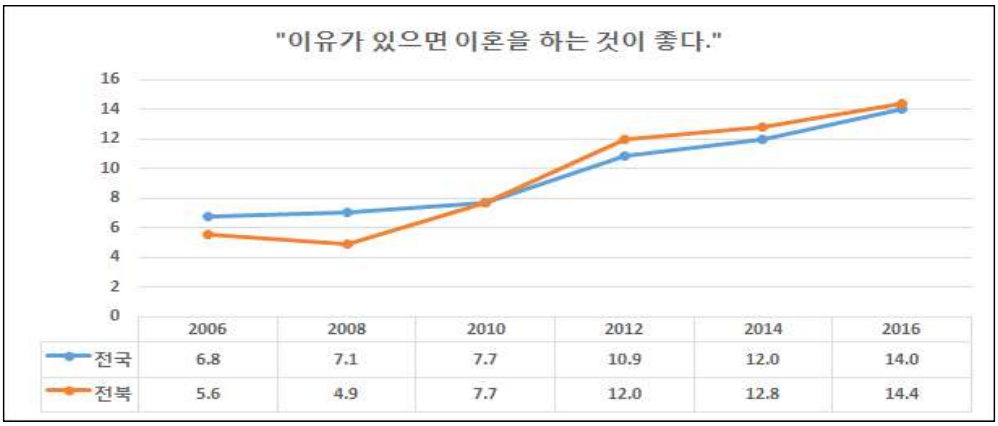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그림 2-9〉 이혼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변화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2012·2014)」

○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견해]** 응답 여성 중 2012년에는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43.4%(매우 그렇다 10.2%, 조금 그렇다 33.2%) 2014년에는 48.4%(매우 그렇다 10.9%, 조금 그렇다 37.5%)로 2012년에 비해 5%p가 높아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2년과 2014년 모두 20대와 30대는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60%를 넘김

○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에 대한 태도]** 응답여성 중 2012년에는 47.6%(매우 그렇다 6.9%, 조금 그렇다 40.7%), 2014년에는 54.1%(매우 그렇다 5.6%, 조금 그렇다 48.5%)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남. 더불어 응답 여성 중 젊은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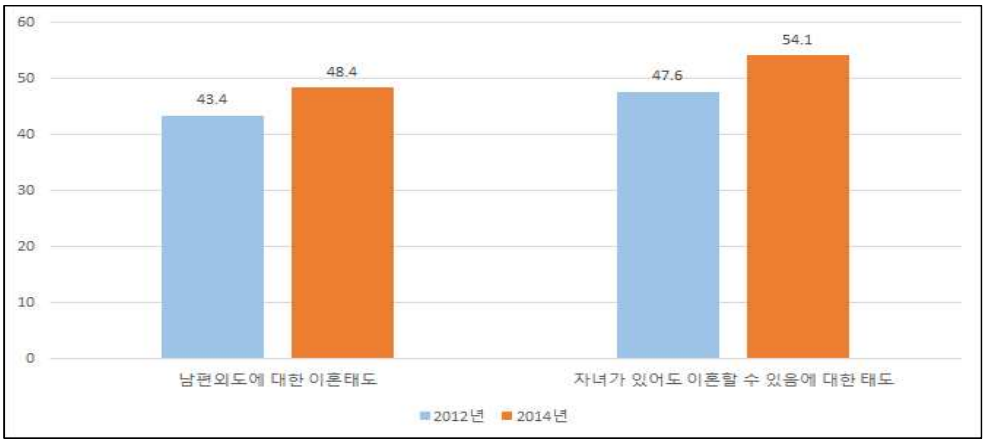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2012년, 2014년).

〈그림 2-10〉 배우자 외도 시 및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혼에 대한 태도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2015)」

○ **[부부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기혼여성(15-49세)의 65.5%(전적 찬성 12.3%, 대체로 찬성 5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남. 더불어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이혼·별거·미혼모 88.5%, 사별 74.1%, 유배우 64.2%)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미혼남성(60.4%)과 미혼여성(74.3%) 모두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을 하는 게 낫다고 창성하는 긍정적 태도가 우세하게 나타남

- 이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보편화 되었음을 의미하며, 혼인상태에 따라 본인의 상황과 맞물려 합리화 효과가 작용하여 이혼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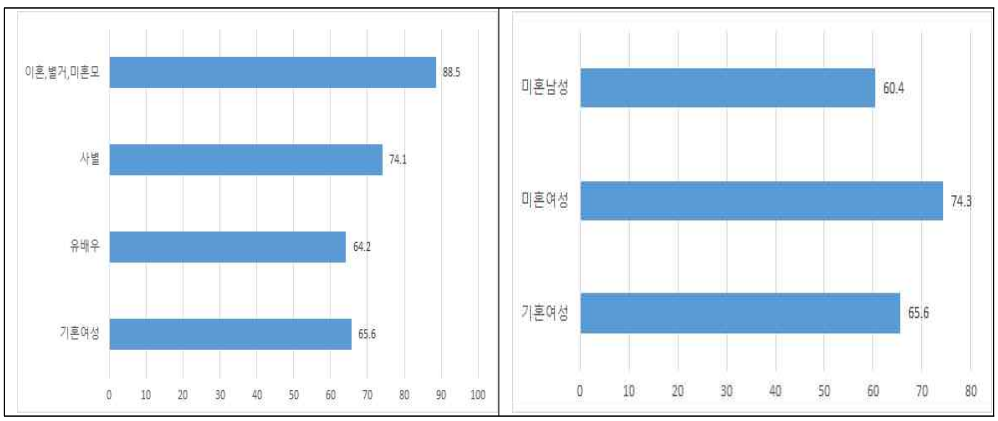

〈그림 2-11〉 부부간 갈등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할 수 있음의 의견

○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기혼여성(15-49세)의 60.9%(전적 찬성 8.3%, 대체로 찬성 52.6%)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특히 결혼생활을 길게 경험할수록 불가피한 경우에 자녀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가 높게 나타남

○ 미혼남성의 50.7%, 미혼여성의 72.1%가 찬성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결혼을 억지로 유지하여 발생하는 불행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고 풀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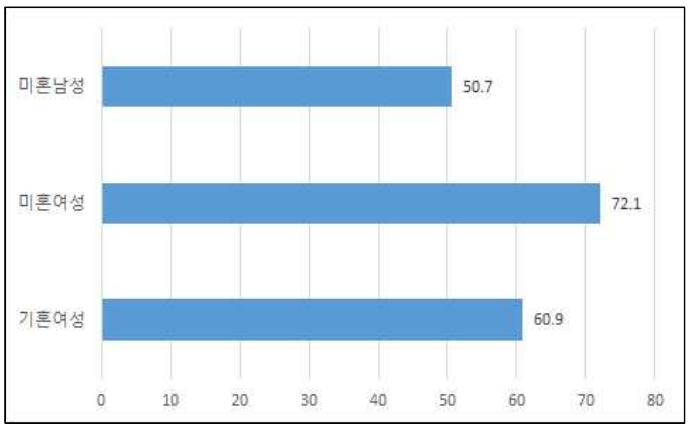

〈그림 2-1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음의 의견

○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기혼여성(15-49세)의 64.7%(전적 찬성 11.4%, 대체로 찬성 5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미혼남성의 78.5%, 미혼여성의 82.3%가 찬성하여 미혼 남녀 모두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보다 더 우세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음. 특히 사별이나 이혼 후 재혼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라도 혼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기혼여성(15-49세)의 66.6%(전적 찬성 10.3%, 대체로 찬성 56.3%)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별·이혼한 기혼여성의 경우에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미혼남성의 60.0%, 미혼여성의 68.0%가 찬성하여 미혼 남녀 모두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자녀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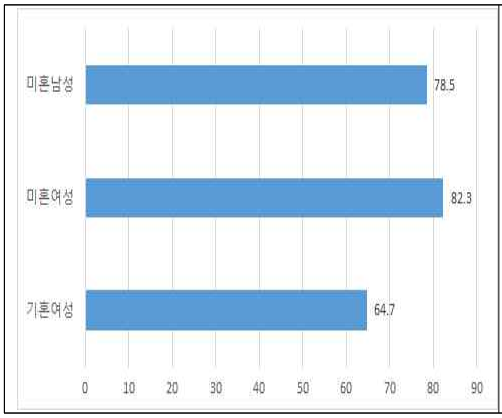

〈그림 2-13〉 사별·이혼 후 재혼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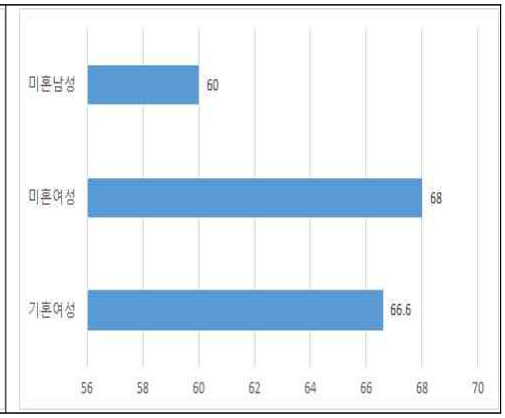

〈그림 2-14〉 혼자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한 태도

3 장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Jeonbuk Institute

제 1 절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 관련법
제 2 절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분석
제 3 절 국내외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례분석

제3장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 관련법

가. 이혼위기가족 관련 법률

1) 건강가정기본법 : 이혼예방 및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

○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해체 예방 및 이혼위기와 이혼가족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들을 담고 있음. 무엇보다 이혼 전·후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부간 갈등 해결 및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과 아울러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건강한 이혼과 이혼 후 가족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가족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제9조(가족해체 예방)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함

○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함.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해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해야 함

○ 반면, 이혼 전·후 가족상담 운영 모형의 필요성에 대한 부각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담 전달 및 운영 모형을 이혼 전·후 과정에 걸쳐 연속성을 가지는 동시에 이혼의 각 단계에 따라 상담 목적과 형태를 차별화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이혼 관련 법률

1) 민법 : 협의이혼에 대한 규정

○ 협의상이혼(민법 제834조 ~ 제839조) :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협의이혼은 이혼하려는 이유나 혼인 파탄의 원인 혹은 경위 등은 문제되지 않고 서로의 협의에 의해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것
- 즉, 법원의 협의이혼 관련 의사 확인 과정에서 부부간의 이혼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되고, 혼인의 파탄여부나 책임성 여부는 별도로 문제되지 않음. 또한, 외부에 알리지 않으니 비밀도 보장되고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이혼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함
- 한편, 협의이혼의 문제점으로 첫째, 협의이혼 부부의 다수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두고 있어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 가능하여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소홀히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이혼의사만 서로 일치하면 이혼이 가능하기에 충동적 이혼이나 홧김에 하는 이혼을 부추겨 준비 없는 이혼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이 있음
- 이상 협의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2005년부터 이혼 전 숙려제도를 운영함. 최근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2014년 10월부터 기존의 의무적인 상담과 더불어 이혼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동안 무료로 10회의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도 함(오세정, 2015)

2) 협의이혼 변천과정

- 이혼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에서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함. 2005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숙려제 도입, 그 결과 2005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협의이혼 신청자 중 이혼을 취한 비율이 17.2%로 2004년의 취하율 9.99%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혼율이 감소함(통계청, 2008). 이혼숙려기간은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단순히 이혼을 재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 그 효과성을 입증함(한국일보,2006.1월22일자)

1960 민법 : 이혼방식 구별(협의·재판상)

1963 협의이혼 신고의 심사제도 도입

1977 협의이혼 의사 확인제도 도입

2007. 12. 2 민법 법률 제8720호 개정, 2008. 6. 22. 시행
'이혼숙려기간 제도' 도입 (신중하지 못한 이혼, 이혼가정 자녀양육 환경 고려)
협의이혼 절차 대폭 개선 및 강화
- 자녀양육사항(양육자 · 양육비 결정, 친권자 결정 등 합의 의무화
- 상담 권고 제도 도입 (법률지식 및 준비 없는 이혼 발생 방지)

2009. 05. 08 민법 법률 제 9650호 개정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도입 (양육비 지급 의무화 및 지급이행 되지 않을 시 가사소송법 상 이행명령 신청 가능)

2012. 09. 19 민법 제836조의 2에 따라 '자녀양육안내' 실시(2012. 11. 01 시행)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자녀양육안내' 실시
- 이혼에 관한 안내의 하나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청자 대상 실시
- 자녀양육안내 내용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과정 상에서의 자녀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이후 자녀양육 시 부모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안내

〈그림 3-1〉 협의이혼 변천과정

- 이혼숙려제도 시행 초기 1주일간의 이혼 숙려기간은 짧다는 지적과 이혼위기 부부에 대한 상담개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해 2006년 3월부터 3주일로 늘여 운영하다가 2008년 1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하는 법령이 국회에 통과되어(박성주, 박재황, 2011), 2008년 6월 22일에 법령이 공시됨.

- 이에 이혼위기가족이 협의 이혼 신청 시 이혼과정 중에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가짐으로써 이혼 결정에 대한 숙고 및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치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론적 개입 기초를 마련함. 더 나아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로 하여금 협의이혼 과정 중 이혼 전 숙려기간을 통해 이혼과 자녀양육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혼 후의 자녀양육 문제에 대하여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함
- 특히, 협의이혼 전 상담권고 제도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협의이혼 신청자 부부에게 숙려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고 자녀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혼 후 자녀의 복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3) 협의이혼 진행절차(민법 제 836조의 2)

㉠ 협의이혼의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부부가 이혼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함

㉡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공통안내 및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자녀양육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제836조의 2 제1항) 받음

제5조(자녀양육안내의 내용)

①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녀양육안내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부모의 이혼과 지속적 갈등이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2. 이혼과정 및 이혼 이후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물리적 보호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고려사항
3. 이혼 이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② 법원은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면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아래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함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
2.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
3. 이혼 후의 양육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자녀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2조의 규정)

제9조(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자녀양육 안내 등)

①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등에게 자녀양육안내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의 의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를 제출해야함을 고지해야 함

②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을 안내 해야 함

③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취하되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함

(출처 :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2조의 규정)

제3장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위원에 의한 상담

제14조 (상담위원의 상담실시)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상담 받으려는 경우, 지정된 상담위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일, 상담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담위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상담 전 질문지[전산양식 C1842]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상담기간) 상담은 1회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장기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산양식 C1805-2].

제16조 (상담결과보고)

① 상담위원은 상담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상담보고서[C1805]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상담수당) 상담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회기 상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에 의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수당액

(출처 :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개정 2017. 1. 23. [재판예규 제1637호, 시행 2017. 2. 1]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및 이혼에 관한 안내(공통안내, 자녀양육안내)와 전문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알림과 함께 '이혼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자녀만 일을 경우 1개월)'을 가짐

㉧ 이혼숙려기간을 보낸 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날짜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분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함

㉨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 법원에서 교부한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함. 단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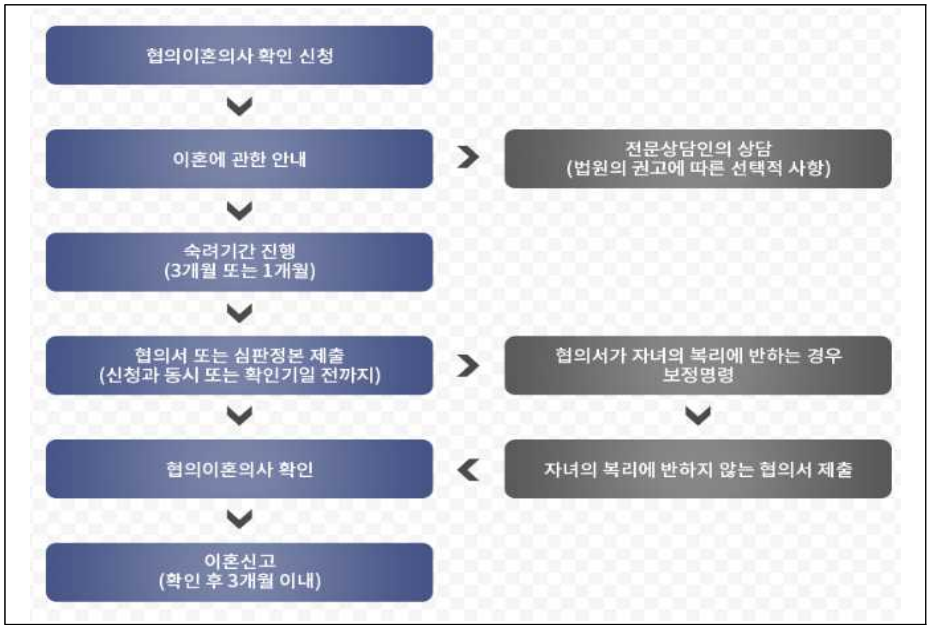

〈그림 3-2〉 협의이혼 진행 절차

다. 이혼가족 관련 법률

1) 한부모가족 지원법

- 한부모가족의 정책적 접근은 모자복지법 제정(1989년), 모·부자복지법(2002년)으로 변경, 65세 이상의 노인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까지 확대한 한부모가족지원법(2007. 10. 17)으로 최종 변경됨
- (목적)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함
- 이혼 등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급속한 증가로 한부모가족이 안고 있는 한부모의 역할과중과 자녀돌봄 문제, 자녀와의 갈등문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과 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제2조(국가등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 권익 및 자립을 위한 지원노력,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함. 이에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정부로부터 생계와 의료지원 등 기초보장의 혜택이 주어져 있음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 -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의 자녀, 자녀 1명당 월 13만원
>
>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당 연 5.41만원
>
> ► 한부모가족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월 5만원
>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지원사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지원을 받는 비율은 약 30%에 불과, 법에 명시된 지원수준이 저조하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체계로서는 여전히 미흡함.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 대상 심리·정서적 지원 및 한부모 대상 자녀양육방법, 부모교육,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보다 필요함

〈표 3-1〉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 관련법 현황

구분	관련법	주요내용
이혼위기가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9조(가족해체 예방),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2조(건강가정교육)
법적 이혼 진행과정 지원	민법	민법 제834조, 제836조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이혼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전체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4조의 2(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지원

제 2 절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분석

가. 중앙정부 지원정책

1) 법무부

○ 현행 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과정 중에 '이혼에 관한 안내(미성년자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는 부모양육안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에 대한 '상담권고제도' 및 '이혼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경솔한 판단이나 홧김에 흥분하여 충동적 이혼을 예방하는 동시에 건강한 혼인 해소와 이혼 뒤 안정된 생활을 돕고 미성년자녀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중한 협의 기회와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함임

○ 법률지식이나 이혼 전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음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문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상담권고제도 도입함

❒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

○ (목적) 미성년 자녀의 복지 도모

○ (정의)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 상 자녀의 심리적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후 미성년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부모 역할과 역할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을 안내하는 것

○ (적용범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 (자녀양육안내의 주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와 위촉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가 실시

○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위촉)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법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사회, 그밖에 적당

*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관련 지침(제1400호, 대법원, 2012.09.19.) 참고

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 위촉할 사람 모색.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사재판 등 관련 상담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

❒ 「이혼숙려제도」

○ (정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이혼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

○ (숙려기간 도입 목적) 자녀보호의 초점과 함께 혼인의 유지와 문제해결, 이혼결정에 대한 재 숙고, 이혼당사자의 보호, 무엇보다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의 충동적 · 홧김에 하는 이혼을 방지하는데 있음

- 미성년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면제될 수 있음(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 숙려기간의 활용(민법 개정안 제836조의 2 제1항) : 숙려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혼을 지연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당사자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을 때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이혼 절차와 결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음. 상담의무화를 협의이혼에만 적용할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비용부담의 문제로 강제적인 상담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해 상담의무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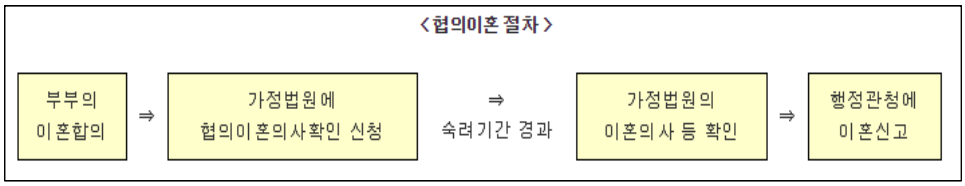

❒ 「상담권고 및 상담지원을 위한 제도」

○ (도입 목적) 이혼이 이혼당사자 및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나 이를 예방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이 미흡함. 이에 이혼 당사자 및 이혼과정에서의 최대피해자인 미성년자녀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상담권고제도가 도입됨

○ (정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협의이혼신청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음(민법 제 836조의 2 제1항)

○ (상담내용) 이혼절차 및 법률적 정보제공, 자녀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 장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련된 내용,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등

2) 여성가족부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 (법적근거) 「건강가정지본법 제31조」 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사업목적) 여성가족부가 이혼예방 및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와 자녀의 가족기능 회복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전액 무료로 상담·교육·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

- 이혼준비 가족 또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 지원

---

*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고로 작성

- 부부의 이혼 진행 과정 중 미성년자녀가 겪는 심리 및 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등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 지원

○ 2011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강남구·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가정법원이 협의 및 재판 이혼과정에서 이혼위기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갈등 및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공동사업으로 시범적 진행

- 재판이혼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 협의이혼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상담원이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1주일에 1번씩 법원 출장 상담 진행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혼위기의 부부대상 가족상담(최소 6회기 이상), 부모교육과 집단상담 제공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미술 및 놀이치료 등 심리치료 제공

- 2012년부터 호남권 · 수도권 · 중부권 · 영남권 4개 권역별 확대 시행
- 2015년부터 구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으로 명칭 변경

○ (사업실시 지역) 법원 연계 이혼 준비 중인 이혼위기 부부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2011년 시범 사업, 2012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남 5개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 2018년 현재에는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

○ (사업대상) 지방법원에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자녀

○ (예산액) 406,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 1개당 국비 22,200천원 내외 보조(지방비 매칭 필요)

○ (지원내용) 이혼 위기 상담(법원에 이혼 신청가정 상담 및 조정, 자녀의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 부부문제 상담,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에 대한 작성안내 등), 부모와 부모교육, 문화서비스(부부 및 가족 캠프)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이혼 이후 생길 수 있는 자녀양육비 분담과 면접교섭권 등 법률상담, 자녀심리 상담 등에 대해 전문상담인의 도움을 받음

- 지역별로 가족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위한 1박 2일 가족캠프, 이혼 후 가족

관계 수용 및 자녀 심리이해를 위해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1박2일 가족캠프, 전문상담사를 통한 이혼상담, 법률 상담, 자녀심리상담,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

○ 2018년 기준 여성가족부는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지원'을 위해 협의 및 재판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혼위기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2〉 2018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의 예산 현황(국비)

단위: 100만원

사업명	사업량 단위	2017년		2018년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개소	5	157	9	203

〈표 3-3〉 지역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2018년)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수행기관
서울	개인 및 가족상담, 이혼전·후상담, 집단상담, 가족캠프, 부부교실, 서울가족학교(부모교육), 예비부부교실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부산	한부모가족교육, 가족캠프, 부부캠프, 이혼위기가족캠프, 부모집단상담, 자녀집단상담, 부모교육, 이혼전후가족프로그램, 양육비이행상담, 긴급가족돌봄지원, 지지리더 파견사업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개별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부모교육(심화), 부부캠프, 상담위원 역량강화교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인천	부부 및 자녀상담, 부모교육, 가족캠프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광주	가족캠프, 가족교육, 부모-아동집단상담, 예비부부교육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대전	부부 및 자녀상담, 부모교육, 부모교육, 가족교육, 예비부부교육	대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울산	가족상담, 이혼전후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개인상담, 상담위원역량강화슈퍼비전, 부부교육, 가족교육, 부모교육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경기	가족캠프, 부부캠프, 부모교육, 가족상담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전남	부부 및 자녀상담, 이혼위기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캠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부설 순천여성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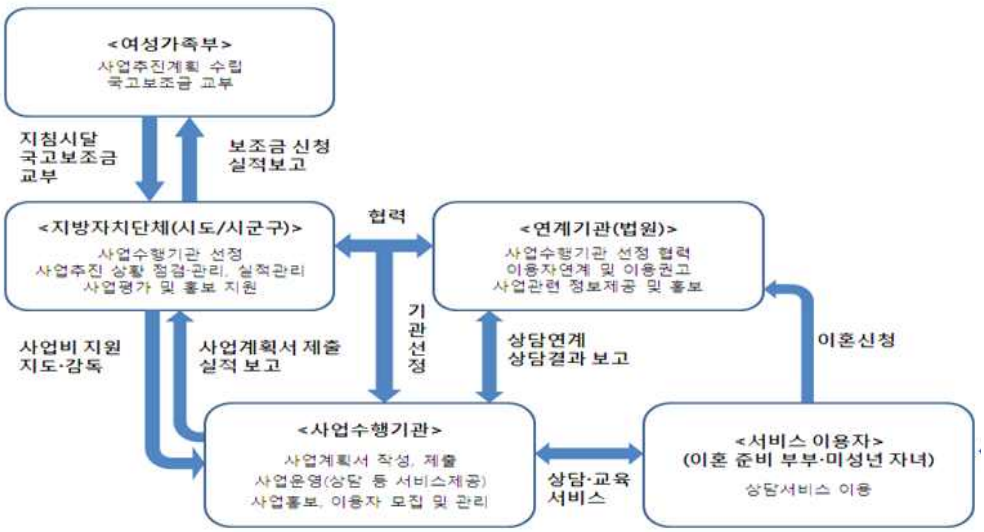

〈그림 3-3〉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추진체계

〈표 3-4〉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의 표준 프로그램 내용

분야	내용	횟수
상담 서비스	■ **개인·부부상담** -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등 부부갈등 ·조정 -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 등 상담 - 비양육부모의 아동면접권, 양육비분담 결정 등 지원 -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관련 심리적 지원	지속성 및 효과성을 위해 주1~2회 실시
	■ **자녀상담** - 아동심리상태 확인 - 이혼위기가정 아동의 심리정서 표현 지원 - 자녀 상담치료 등 심리·정서적 지원	
	■ **가족상담** - 가족관계 회복, 가족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안에서의 자기탐색지원 - 부모-자녀관계 상담 - 단기가족치료 등	
교육 서비스	■ **부모교육** -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사항 이행 교육 - 이혼으로 인한 자녀 심리·정서적 문제이해 - 올바른 부모역할 교육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 **부부교육** - 부부갈등 다루기, 배우자 이해하기 등 부부관계 회복 지원 - 올바른 의사소통 등 부부대화법	
문화 서비스	■ **부부·가족캠프** - 부부 + 자녀 참여 - 부부관계 개선 도모, 가족화합 도모	연 2회 이상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이혼 전 · 이혼진행 · 이혼 후 단계별 지원 사업

〈이혼 전 단계의 지원 사업〉

①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 가족교육

○ (목적) 결혼 - 출산 - 육아 - 유아기 - 학령기 - 청소년기 - 성인기 - 중·장년기 - 노년기 - 사망 등의 생애주기별 단계마다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가족문제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내용 제공

○ 예비 부부 및 신혼기 부부교육 : 결혼을 앞두고나 교제중인 미혼남녀 및 결혼을 한 신혼기 부부 대상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결혼 초기 적응을 돕는 교육. 건강한 결혼생활과 가족가치관을 확립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부 및 결혼생활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갖출 수 있도록 도움 줌

○ 영유아기 및 아동기(초등학년) 자녀 부모교육 : 자녀와의 대화방법, 부모역할, 자녀문제해동에 대한 지도 방법 등 부모역할을 함으로써 여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

○ 사춘기 자녀 부모교육 : 사춘기자녀를 다루는 방법, 의사소통방법, 진로에 대한 걱정 등을 해결하고 문제행동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교육

○ 중년기 부부 및 가족교육 : 중장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원과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

○ 노년기 부부 및 가족교육 : 은퇴 등으로 인해 인생에 있어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로 가족관계 변화, 경제적 수준의 변화 및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교육이자 새로운 역할에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교육 더불어 건강한 노후생활과 죽음준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마련

② 가족상담

○ (목적)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과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원만한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가족, 부부, 부모-자녀)상담 진행. 부부간의 성격차이 문제, 가치관의 문제, 종교문제, 성문제, 외도, 자녀의 문제행동, 원가족과의 갈등문제 등 부부와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음

○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가족상담, 다문화상담 등이 있음

〈이혼위기 및 법적 이혼진행 단계의 지원 사업〉

① 이혼 전 · 후 상담

○ (목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혼위기 부부는 장시간 동안 결혼 및 부부관계에 있어서 붕괴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침. 이때 당사자 뿐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게 됨.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사회적 문제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상담적 돌봄을 제공하여 이혼위기의 부부와 가족을 효과적으로 돕고자 함

○ (지원내용) 이혼 전 상담, 이혼 보류 단계의 상담, 이혼 결정 단계의 상담, 이혼 이후의 상담 등 단계별 상담이 진행됨. 이혼 위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상담, 집단상담과 미성년 및 청소년기 자녀대상 심리검사, 자녀대상 집단상담, 부모와 자녀 대상 가족캠프 및 비양육자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이혼 전·후 상담 전문기관 인증)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혼 전후 상담 전문기관의 역량강화와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이혼전문상담 인증제도”를 도입함. 2017년 11월 말 총 63개의 센터에서 인증을 받음

○ 전라북도는 단 1곳(전주시)만 이혼전문상담 인증을 받음

〈표 3-5〉 이혼전문상담 인증 건강가정지원센터(2017년)

권역	이혼전문상담 인증 건가센터	권역	이혼전문상담 인증 건가센터
서울 (14)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울중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부산 (7)	금정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하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중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인천중구
광주	광산구, 광주동구, 광주서구	대전	대전광역시
울산	울산남구	강원	원주시
경기 (17)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화성시	충남	당진시, 보령시, 천안시, 태안구
		전북	전주시
전남	광양시, 여수시, 목포시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	제주	제주시

② 법원연계 이혼상담

○ (목적)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진행 중인 부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이혼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혼 이후 생활과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이혼위기 및 이혼가정 대상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뿐만 아니라 부부집단상담 및 가족캠프 등이 포함됨. 부부간의 성격 이해 및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교육도 진행함

○ (상황) 모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법원연계 이혼상담이 실시되지 않고 여성가족부로부터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에 선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 동대문구 건가센터, 부산광역시 건가센터, 광주서구 건가센터, 대전 건가센터, 울산 남구 건가센터, 안산시 건가센터; 총 6곳) 및 일부 지자체와 법원(지원)장과 의지와 협의 하에 재정을 마련하여 건가센터 등에서 사업이 실시되는 곳이 있음

〈이혼 이후 단계의 지원 사업〉

① 긴급위기가족지원사업*

○ (법적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 (사업의 목적) 가정폭력, 이혼(법적 이혼발생 전에 생계비 중단 등으로 가정이 위기상태에 높인 가족),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 등의 충격을 경험한 당사자와 가족이 정서적 고통과 충격을 완화하여 가족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이혼 신청 중인 가족지원

- 지원대상 : 이혼 신청 중인 가족,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 지원내용 : 상담(개인 및 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교육(부모교육, 부부교육), 문화서비스(부부 및 가족캠프) 등 지원

② 취약 · 위기 가족지원사업(한부모가족지원)**

○ (법적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 (사업의 목적) 경제, 심리·정서,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위기가족이 보다 당당하고 힘있는 가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가족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제공되는 집중 사례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72%이사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 (지원방법) 17개 시·도의 47개 센터로 문의 및 방문

○ (지원내용) 심리·경제적 자립, 가족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부모교

---

*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familyability/familyability3.do 참고

**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사업 내용(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familyability/familyability2.do) 참고

육·가족관계·자녀양육 교육,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연계, 가족관계 향상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자녀의 학습정서지원서비스(배움지도사 파견), 생활도움지원서비스(키움보듬이 파견), 자조모임운영

가족사례관리	지원대상 및 내용
자녀학습·정서지원	초·중학생자녀에게 배움지도사 파견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족에게 긴급상황 발생 시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자녀 및 부모의 자존감 향상, 가족관계 향상,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③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제도*

○ (법적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제3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 (사업 목적)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지원내용)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및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관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원, 최장 9개월)

○ (신청절차 및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다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우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

*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참고

나. 전라북도 지원서비스 현황

1) 전주지역 법원(지자체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 전주지방법원

① 법원 연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녀양육안내' 지원

○ 법원에 협의 및 재판이혼을 신청한 자 중 미성년자녀를 둔 이혼위기가족 대상 전주지방법원과 협력·연계하여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녀양육안내' 사업 추진

- 사업대상 : 법원에 협의 및 재판이혼을 신청한 자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족
- 사업내용 : 약 1시간 30분 동안 부모교육과 함께 동영상 시청, 월 3회 진행
- 총사업비 : ◦ 전라북도(사업비) 100,000천원 / 자치단체보조 / 도비 100%
  ◦ 전주지방법원 450만원
- 전라북도 예산 지원 현황 : 2017년 10,000천원, 2018년 10,000천원

②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상담의무제 실시

○ (목적) 이혼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이 이를 극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분쟁을 줄이고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 즉 부모의 이혼진행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발생과 이혼에 대한 부부간의 분쟁 해결 및 타협을 통해 자녀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

○ 전주지방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동안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갈등상황에 방치되거나 이로 인해 자녀에게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에 전문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신청자 대상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상담대상) 만 12세(초등 6년)이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 (상담장소) 전주지방법원 내 상담실

○ (상담시간) 협의이혼 신청 부부 커플 당 약 30여분 정도

- 상담 실시 후 상담위원으로부터 상담확인서 법원 제출. 상담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부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법원 상담이 어려울 경우 법원과 연계한 상담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음

○ (상담내용) 이혼의사 확인, 자녀 양육자 확인, 양육비 협의, 양육 장소, 면접교섭 방법, 위자료 및 재살분할 협의, 비양육부모의 역할 등

- 사업내용 : 약 26명의 상담위원 위촉, 한 커플 당 약 4만원의 상담료 지불. 상담위원 한 사람등 약 3건에서 4건의 상담을 1시간 30분 동안 실시.

- 사업비 : 전주법원 지원 약 45,000천원

③ 법원과 연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박 2일 캠프' 지원

○ 전주지방법원 연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대상 '1박2일 캠프' 지원

○ (사업대상) 한부모 가족, 1년에 1회

○ (사업내용) 법원 연수원(순창)에서 1박 2일간 프로그램 진행

- 사업비 : 전주지방법원 약 500만원 지원

❒ 군산지원

① 군산지원·군산시청 연계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 지원(17. 4)

○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로 아동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미성년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의무상담 지원

-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가 상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녀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상담 대상) 만12세(초등 6년)이하 미성년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부부

○ (상담 장소) 각 민간 상담기관(3곳) 및 대학교 교수 연구실(1곳)

○ (상담위원 위촉) 총 4명(전문상담기관의 상담가 및 대학교 교수 등)

- 상담위원은 매주 목요일마다 군산지원에서 '부모양육안내'를 정해진 순서에 의해 강의하고, 만 12세 이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부부 대상 의무적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함을 공지.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4곳)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지한 후 당사자 주거지와 근접한 지역 및 선호하는 전문 상담사를 선별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담 시간) - 1회기 당 1시간 정도

- 기본 3회기 상담이 의무(1회기 기본상담, 2·3회기 심화상담)
- 4·5회기 추가 상담 요구 및 필요 시 지원
- 사업비 ; 군산지원 - 약 15,000천원
  군산시 - 약 10,000천원

구분	상담내용	예산지원
1회기(기본상담)	부부가 함께 오는 것이 기본 이혼의사 확인, 자녀 친권 및 양육권 결정과 확인, 양육장소, 양육비 합의, 면접교섭방법 등	군산지원
2·3회기(의무/심화상담)	이혼원인, 갈등내용, 부부 성격심리검사 등	군산시청
4·5회기(추가 상담)	자녀양육, 부모교육, 자녀심리상담 등	군산지원 (18년부터 지원)

❒ 익산시법원

① 군산지원·익산시·민간상담기관 연계 위기가정 의무상담제도 지원(18.2.21)

○ 익산시와 군산지원 및 상담기관(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센터장)은 미성년자녀(초등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위기가정 의무상담제도 실시

○ 의무상담제도는 초등학생 이하 협의이혼 과정 중에 있는 부부의 마음 상처 치유와 미성년자녀의 정신적 충격 완화 및 이혼에 대해 제고하는 기회 마련을 위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 2018년 3월부터 시행

○ (사업방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의 '부부소통증진서비스'와 연계

○ (지원대상) 초등6년(만12)까지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 (상담시간) - 1회기 당 1시간 정도

- 총 5회기 실시(기본 1회기 법원의무상담, 심화상담 4회기)

구분	상담내용	예산지원
1회기(기본상담/지원의무)	부부가 함께 오는 것이 기본 이혼의사 확인, 자녀 친권 및 양육권 결정과 확인, 양육장소, 양육비 합의, 면접교섭방법 등	군산지원
2~4회기(심화상담)	이혼원인, 갈등내용, 부부 성격심리검사 등 자녀양육, 부모교육, 자녀심리상담 등	익산시청

❒ **남원지원 :** 법원연계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상담의무제 지원

○ (상담대상) 미취학자녀(7세 이하)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 (상담시간) 1회기 당 1시간 정도(자녀양육안내 및 가사상담 실시)

○ (상담기관 및 상담위원) 남원 YWCA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장수 사회복지협의회 및 1318디딤돌 등 남원지원에서 전문 상담기관 협력 하에 상담위원을 위촉하고 협의이혼 상담 겸 자녀양육안내를 담당하게 함

❒ **정읍지원** : 자녀양육안내

○ (상담대상)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 신청자 부부

○ (교육장소) 법원 내 비디오 시청실

○ (교육시간) 약 40-50분 정도의 비디오 시청

○ (교육일시) 매월 정해진 교육일자에 실시(월 2회)

○ 고창·부안 협의이혼 신청자는 정읍지원에 정해진 일정에 교육·상담 실시

〈표 3-6〉 전북지역 자녀양육안내 및 의무상담제 현황

	자녀양육안내	의무상담제
전주지방법원	(누가) 민간상담소의 부모교육 강사 (장소)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시간) 1시간 30분, (교육방식) 동영상 및 교육 (대상) 만18세미만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일시) 월 3회(토 오전 1회, 수요일 저녁 2회)	(누가) 법원 위촉 상담위원 약 20명 (장소) 법원 내 상담실 (시간) 커플 당 약 30분, 1회기 (대상) **만12세미만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신청부부 (일시) 평일 오후 3:00~4:30 - 1시간 30분 동안 3~4(5)팀의 부부 상담 실시
군산지원	(누가) 법원 상담위원 4명, 1주일씩 담당 (장소) 군산지원, (시간) 약 1시간 (교육방식) 동영상 40분, 교육 20분 - 상담위원의 전공에 따라 교육내용 20분은 약간의 차별성을 갖고 있음 (대상) 만18세미만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일시) 매주 목요일 2시	(누가) 법원 상담위원 4명 (장소) 각 민간상담기관 내 상담소 및 교수 연구실 (시간) 커플 당 1시간, 기본 3회기 - 기본상담 3회, 심화상담 2회 - 총 5회기까지 상담지원 (대상) **만12세미만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신청부부 (일시) 상담자와 협의이혼 신청자(부부)간의 일정 조정
익산법원	(누가) 법원 실무자 (장소) 익산시법원 내 (시간) 약 40~50분정도 (교육방식) 비디오 시청 (대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일시) 협의이혼신청 날 바로/일정이 되는 날 자녀양육안내 받을 수 있음(단, 화요일 제외)	(누가)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상담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부소통증진서비스"연계 (장소) 상담기관의 상담실 (시간) 커플 당 약 1시간, 기본 1회 - 기본상담 1회, 심화상담 4회 - 총 5회기까지 상담지원 (대상) **만12세미만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신청부부 (일시) 상담자와 협의이혼 신청자(부부)간의 일정 조정
정읍지원	(누가) 법원 실무자 (장소) 법원 내 (시간) 약 40~50분정도 (교육방식) 비디오 시청 (대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일시) 정해진 교육일자 있음(월 2회)	(누가) 법원 위촉 상담위원 (장소) 법원 내 (시간) 한 커플 당 약 30분 (대상) 만12세미만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부부 (일시) 평일 오후
고창	서류만 관할, 자녀양육안내는 정읍에서	서류만 관할, 의무상담은 정읍에서
부안	서류만 관할, 자녀양육안내는 정읍에서	서류만 관할, 의무상담은 정읍에서
남원지원	■ 18세미만 미성년자둔 협의이혼신청부부 (누가) 법원 협의이혼 담당자, (장소) 법원 (시간) 약 1시간, (교육방식) 동영상 시청 (대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일시) 협의이혼 신청한 날 바로 혹은 일정이 되는 날에 자녀양육안내 받을 수 있음 **■7세미만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부부(남원/순창/장수)** (누가) 법원이 위촉한 상담/복지기관 상담사 (장소) 상담/복지기관 상담실, (시간) 약 1시간 (교육방식) 동영상 시청 (일시) 상담자와 협의이혼 신청자(부부)간의 상담 조정	(누가) 법원 위촉한 상담/복지기관 내 상담사 (장소) 상담/복지기관의 상담실 (시간) 커플 당 1시간(1회) (대상) **만7세미만(미취학아동)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일시) 상담자와 협의이혼 신청자(부부)간의 일정 조정 ※상담/복지기관: 남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YWCA
순창	(누가) 법원 실무자 (장소) 법원 내 (시간) 약 40~50분정도 (교육방식) 비디오 시청 (대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일시) 협의이혼신청 날 바로/일정이 되는 날 자녀양육안내 받을 수 있음	(누가) 법원 위촉 상담위원 (장소) 협약기관 내* (시간) 한 커플당 약 30분 (대상)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부부 (일시) 평일 오후 ※상담/복지기관: 순창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장수	(누가) 법원 실무자 (장소) 법원 내 (시간) 약 40~50분정도 (교육방식) 비디오 시청 (대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녀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일시) 협의이혼신청 날 바로/일정이 되는 날 자녀양육안내 받을 수 있음	(누가) 법원 위촉 상담위원 (장소) 협약기관 내* (시간) 한 커플당 약 30분 (대상)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부부 (일시) 평일 오후 ※상담/복지기관: 사회복지협의회, 1318디딤돌지역아동센터

2) 전주지역 민간기간관의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 지자체 현황 : 군산시

① 군산시 : 어린이를 위한 위기가정지원

○ (목적) 이혼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이혼율 및 결손가정 감소와 비행청소년 양산 방지

○ (지원대상)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부부

○ (사업비) 17년 10,000천원, 18년 10,000천원, 19년 10,000천원

○ (지원내용) 성격검사 및 부부간 심리치료와 상담실시. 법원 협의이혼 신청부부 1회에 한하여 전문상담사와의 의무상담 실시

○ (추진방법) 군산지원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의이혼 부부상담 및 전문상담사 정보 공유

② 군산시 :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

○ (목적) 어린이와 시군 모두의 행복을 위해 부부관계 개선과 부모교육을 통한 자녀세대 이해 소통하는 장 마련으로 행복한 가족관계 증진, 부부·부모교육을 통해 어린이 행복 분위기 확산

○ (사업대상) 예비부부, 부모 등

○ (사업장소) 어린이행복부모학교 교육장(어린이공연장 2층)

○ (추진방법) 가족단위의 관계 진단 및 개선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집단운영

○ (사업내용) 부모교육 통합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감정 실습교육을 기본으로 인성, 힐링, 안전 등 교육 커리큘럼 구성, 부모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한 부모교육 시행 등

○ (사업비) 100,000천원(군산시비 85,00천원, 도비 15,000천원)

3) 전라북도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주요쟁점 및 문제점

○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보면, 군산과 익산을 제외하고는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곳이 거의 없음. 법원 및 지자체 기관장의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마련에 대한 의지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나타남

○ 또한, 법원을 통해 지원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 및 의무상담제 이외 기타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이혼위기가족 대상 사업은 거의 부재한 상황. 즉 군산시의 이혼위기가족 지원 및 부모학교 운영사업 이외 기타 지역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부모교육 사업에 대한 수요조차 익산, 군산, 전주시 외 거의 없는 상황임. 그리고 법원 내에서 실시하는 협의이혼신청자 대상 지원사업도 군 단위 지역으로 갈수록 접근성의 문제와 인적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원 서비스가 취약한 상황임

○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문제점으로 법원연계 협의이혼 진행절차 과정 중에서 시행되어야 할 '자녀양육안내교육' 및 '의무상담제'와 숙려기간 모두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 있음

○ 먼저는 자녀양육안내교육은 지자체마다 실시하는 방법과 시간이 제 각각이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다음으로 군산과 익산을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상담제의 효과성에 의문이 생길 정도로 형식적이고 사업 내실화에 충실하지 못함이 나타남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혼상담 및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싶어도 대상자 발굴관련해서 힘들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협의 이혼 관련 법원 담당자의 빈번한 보직변경(짧으면 1년 길면 2년이라는 주기로 시행)으로 인해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이 더디고 어려운 상황임

제 3 절 국내·외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례분석

○ 본 절에서는 이혼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뉴스기사, 선행연구검토 등을 통해 국내 및 국외에서 이혼절차 시작 전 및 진행과정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숙려기간, 상담과 조정제도 등) 및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전라북도에 적용가능한 점들을 모색하고자 함

가. 국내 지원정책 사례

1)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자녀양육 안내 이수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전까지 후견프로그램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한편,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결정에 다시 한 번 재고할 기회를 갖기 위해 '의무면담제도'와 '장기상담제도'를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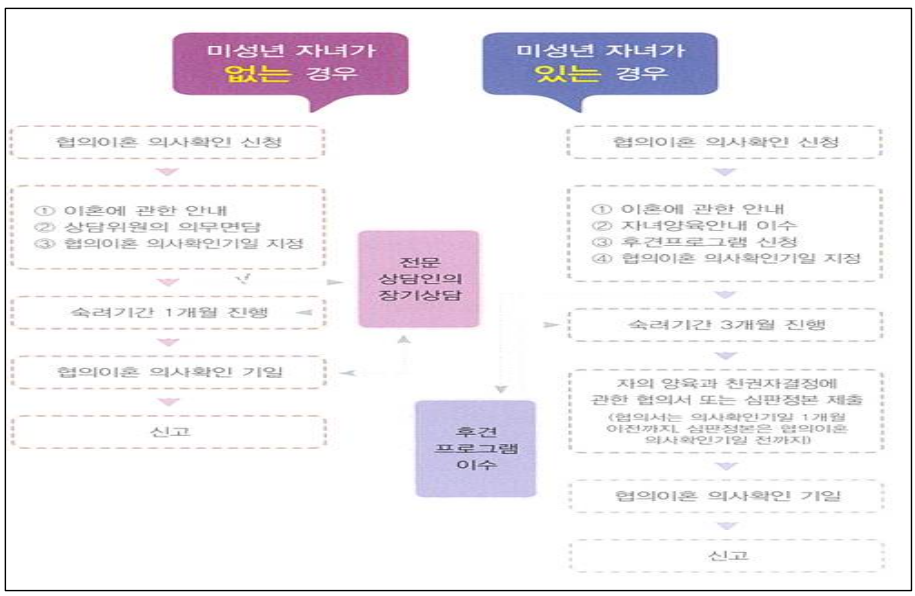

〈그림 3-4〉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진행절차

-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 법원에서 각 기관으로 신청서를 전달하고 → 기관에서 당사자 연락 및 참석을 확인하고 → 당사자가 프로그램에 참석한 후 → 법원에 참석확인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됨

〈표 3-7〉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신청자 대상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후견 프로 그램	자녀 관련 프로 그램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부부갈등에 노출된 자녀의 스트레스 관리와 훈육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36개월~초등자녀 제한) ·대상: 협의이혼 신청 부부 중, 주양육자와 자녀 함께 ·장소: 외부 상담기관 -(토요일)
		부부 관련 프로 그램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오랜 갈등에 지친 부부들에게 위로와 전문적 안내, 그리고 희망을 주는 관계 치유 프로그램 ·대상: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함께) ·장소: 서울가정법원
		맞춤형 개별 프로 그램	**장기상담**: 재결한 또는 건강한 이혼을 위해 상담전문가와 부부상담, 개별상담, 부모교육 등 당사자 욕구에 맞는 상담 진행 ·대상: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또는 일방 ·일시: 일정 협의(최대 10회기 진행) ·장소: 외부 상담기관 **의무상담**: 전문가 면담을 통해 이혼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원조,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함께) ·장소: 서울가정법원 내 상담실 -(1시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의무면담제도		협의이혼 신청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에 대하여 이혼 과정 전·후의 심리적·정서적 원조 등의 문제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부상담 안내를 위한 의무면담제도를 시행. 부부는 의무적으로 법원에 상주하는 상담위원의 면접을 거친 이후 협의이혼신청서 접수가 가능함
	장기상담제도		협의이혼 신청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가 부부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전문가와 장기간 상담을 10회까지 무료로 진행, 부부의 갈등조정 및 원만한 이혼에 관한 도움을 지원함

○ 또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비송/조정)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심화된 자녀양육안내」를 진행하고 있음

〈신청대상〉
▸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부모 간 다툼이 있는 경우
▸ 면접교섭 행사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가 일관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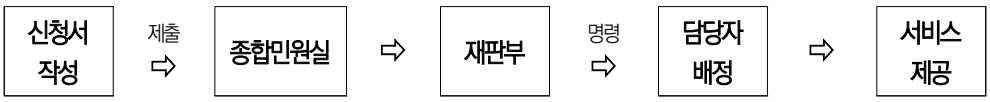

〈그림 3-5〉 서울가정법원의 '심화된 자녀양육안내' 진행절차

○ 한편,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법원 내에 설치·운영함. 이를 통해, 이혼 이후 건강한 면접교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서비스 내용으로는 '면접지원 서비스'와 '인도지원 서비스'로 구분됨(서울에 거주하는 만13세미만 자녀)

면접지원서비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면접교섭위원의 지도하에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도움

인도지원서비스
면접교섭 시 자녀를 인도할 때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실제 면접교섭은 부모가 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는 자녀의 인도만을 지원함. 면접교섭센터에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고, 면접교섭이 끝난 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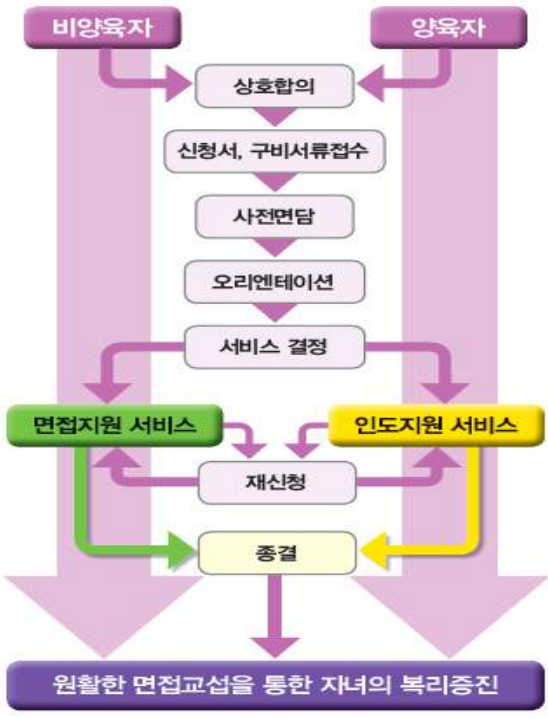

〈그림 3-6〉 서울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 운영 사례

○ 그 밖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자녀양육안내 길라잡이」 리플렛을 제작하여 이혼 및 양육 관련 참고도서 소개하고, 이혼위기가정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며, 이혼 이후 자녀의 적응을 돕는 부모의 행동 등 다양한 내용을 안내·홍보하고 있음. 또한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이혼을 고민 중이신가요?」 리플렛을 제작하여 이혼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3-7〉 서울가정법원의 리플렛 제작 사례

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① 협의이혼 부모대상 심화부모교육 진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협약 하여 협의이혼 진행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대상 심화 부모교육'을 실시함

○ (목적) 심화부모교육(성장하는 부모되기)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부모들이 공동양육의 관계를 형성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하는 프로그램

○ (내용)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모들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의 해소, 이혼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설명하는 방법, 면접교섭 시 유의해야 할 점, 비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교육, 이혼 후 가족원들의 역할 변화 및 이혼과정 중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느낄 자녀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심화부모교육은 2015년 5월부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의 협약 이후 시작됨

- 교육은 매월 1회 진행

② 가사재판 사례 및 상담지침 서적 발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18년 1월 부부간 불화로 인한 위기가정을 존립시키는데 활용할 가사상담 및 협의이혼 상담 매뉴얼 사례집을 발간함

- 고양지원은 2015년 11월부터 가사상담 매뉴얼 집필계획 수립 후, 축적된 가사상담 및 협의이혼 사례 기반의 상담 노하우를 집대성한 가사사건 및 재판 해결의 길라잡이가 될 책 집필

가사상담 운용 방식, 자녀양육안내 가이드라인, 상담사례, 가사상담 및 재판에 활용될 각종 양식 등 포함. 또한 원만한 협의이혼에 대한 아름다운 이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이혼부부의 자녀양육 책임 규정, 캠프 및 상담을 통한 부부관계 회복 및 재결합, 상담 시 부모이혼에 대한 자녀의 시각 차 반영 등의 내용, 건강한 이혼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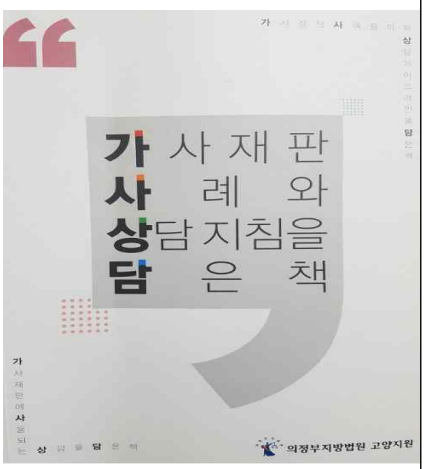

〈그림 3-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가사재판 사례 및 상담지침 서적 제작 사례

3) 대구광역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 대구광역시는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으로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상담위원 역량강화교육 및 사례연구, 간사기관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8〉 대구광역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상담 서비스	개별상담	이혼을 고려중이거나,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부부 및 자녀를 대상으로 성급한 이혼을 지양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
	가족상담	이혼위기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상담을 통해 가족관계를 재확립하여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역량을 강화함
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중, 만 15세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인식하도록 도움
	심화된 부모교육	양육분쟁이 심각하여 부부가 재판이혼을 신청한 경우, 양육권 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
	부부캠프 “행복한 내일설계”	이혼위기를 맞은 부부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과 관계회복을 위한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부부관계회복을 도움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및 사례연구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및 사례연구	이혼/자녀/가족상담 등 전문상담위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위한 정확한 법률지식과 상담기법을 교육하여 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상담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
간사기관활동	워크숍	전국 9개 이혼 전·후 가족관계회복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의 활동내용을 교류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성과보고회	전국 9개 이혼 전·후 가족관계회복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를 교류함으로써 사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함

출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934090)

나. 국외 지원정책 사례

1) 미국*

○ [이혼법 개요] 1969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파탄주의'에 관한 이혼법을 최조 지정한 이후 1985년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무책사유를 유일한 이혼사유로 규정하거나, 기존 유책 사유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무책이혼사유를 채택하고 있음. 이혼제도의 운영은 미국의 각 주나 각 카운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파탄주의'를 유일한 이혼사유로 지정하는 주가 15개 정도이고, 그 외 대부분의 주가 파탄주의 이혼사유를 채택하고 있음. 주법사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Uniform State Laws)는 파탄주의에 입각하여 「혼인·이혼통합법(Uniform Marriage & Divorce Act, UMDA)」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대부분의 주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음

- 파탄주의(UMDA 제302조) : 혼인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것이 인정될 경우 이혼 판결을 하도록 규정(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

○ [친권(양육)자 결정기준] 전통적으로 모가 자녀의 안녕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부적당한 사람이 아닌 이상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모(母)선호추정이 유지되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부모의 성(性) 보다는 '자녀의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르는 추세임. 「UMDA」 제402조에 따르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다음의 요소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모의 희망
▸ 양육자에 관한 자녀의 희망
▸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친·인척에 대한 상호관계
▸ 가정, 학교, 이웃에 대한 자녀의 적응

* 본 내용은 명현경(2017). 이혼가정 가족관계 재구성을 위한 가사상담 활성화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의 외국사법제도연구(4),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업무협약 체결 1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중 자녀양육의 관점에서 본 세계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작성함

○ [양육계획 작성] 부모의 의사결정, 양육시간, 주거계획 등에 관한 부부 간 할당에 대해 기술한 문서로, 이혼 후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예를 들어, 미네소타 주에서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양육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이고 자세히 수립되지 않은 기술서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였더라도 법원이 이를 거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합리적인 양육계획은 향후 부부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녀의 이익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 명시적으로 양육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부부가 스스로 양육계획을 작성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조정이나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음

▸ 자녀의 주거 및 교육 ▸ 면접교섭 ▸ 공휴일, 생일, 방학 중 면접교섭 ▸ 자녀의 교통수단	▸ 현실적 상황에 근거한 양육비 ▸ 자녀와 관련된 기록의 접근방법 ▸ 자녀의 치료에 대한 결정 책임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 [양육비 이행] 「UMDA」 제309조에 따르면, 법원은 파탄주의에 입각하여 이혼이 진행되지만, 자녀 및 양육에 관한 비용에 관해서는 유책주의를 참조하여 결정함. 양육비는 자녀의 신체·정서적 조건과 교육적 필요, 제반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양육비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음. 모든 주에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몇몇 주에서는 경우에 따라 성년 이후까지 연장키기도 하며, 워싱턴 주에서는 자녀가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음

○ [상담과 조정] 미국은 이혼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상담(counseling)과 조정(mediation)이 강조되고 있고 다양한 복리와 후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상담과 조정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 되어 있으며, 법원과 민간기관, 그리고 개인자격으로서의 이혼조정사 등이 활동하고 있음.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개심리보다 이혼 조정의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함. 이혼중재 형태는 총 3가지 법원의 조정, 이혼법원의 이혼 판결 전 화해 조정, 법원 외 민간기관의 조정으로 구별

됨. 1939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원 부속으로 '관계조정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초기에는 부부의 화합을 위한 가족상담을 제공했으나, 이후에는 이혼상담이나 자녀양육 상담으로 그 중심이 옮겨져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주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시 여부에 대해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조정자는 가족상담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혼조정자의 자격기준이나 연수체계에 있어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통상 일정한 학력과 관련 분야 연수과정의 수료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유타 주의 경우 조정인은 반드시 ADR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함. '이혼 전 상담'은 대개 상담명령으로 진행되고 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중심인데, 이혼 예방을 위한 부부 갈등 중재가 포함되기도 함.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입증되어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비용부담은 참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참여자부담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음.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음

○ [부모교육]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후 공동양육 및 갈등해결을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강제하기도 함.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이혼 후 변화한 가족환경에 자녀들의 적응을 돕기 위함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법원 외부의 공공기관, 민간기관, 대학, 정신건강센터 등이 있음. 한편, 미성년자녀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상기시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음

- 캔자스 주 법원은 프로그램을 위무화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자체 규칙에 두고 있으며,
- 오하이오 주에서는 '이혼 후 아동지원프로그램(Helping Children Succeed After Divorce)'을 만들어 2명의 전문가가 2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강의, 유인

물, 영상시청으로 진행하고 있고,

-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은 조정위원회와 지역사회 기관들이 함께 이혼가정을 위한 양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이혼 부부들에게 참석하도록 명령하고 있음. 프로그램은 2회기(각 3시간씩)로 운영되며, 1회기에는 자녀들과 부모의 감정변화 과정, 이혼이 자녀의 연령단계에 따라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 단계에 따라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2회기에는 양육계획, 양육공간 지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유타 주의 경우,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법원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수강해야만 함. 교육방식은 온라인과 직접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30$~50$의 수수료가 부과됨
-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 등의 주 들은 교육프로그램 참석을 위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부모는 법정모독에 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함

○ [기타] 이혼과정에서 법원이 제공하는 상담이나 교육의 서비스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사회 각 부분의 다양한 기관이나 전문가를 연계하는데, 잭슨 카운티의 가정법원 청사에는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가족자원센터(Family Resource Center)'를 두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14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는 '의무양육프로그램(Mandatory Parenting Programme: MPP)'를 수료해야 함. 이는 강정법원에서 이혼신청 전 부모를 위한 상담이라 할 수 있음. 부모가 이혼 후 친권에 대해 합의된 경우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야 함. 한편, 자녀와 관련한 분쟁이 심한 경우, 법원 전문상담사 혹은 사회복지사에게 회부하며,

* 본 내용은 이나련(2017). 법원과 연계한 이혼위기 가족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함

법원은 아동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아동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음

○ [상담과 조정] 가정법원은 법원 내 전문가가 제공한 상담 및 중재를 통해 가족분쟁 해결을 도움. 특히, 2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법원에서 상담과 중재를 받아야 하며, 상담의 목표는 이혼과정의 가족분쟁을 해결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것임. 특히, 가정법원의 주된 관심은 자녀의 안녕이 초점이라 할 수 있음. 법원의 전문가는 가족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나 가족중재자, 아동복지 및 가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가족상담원으로 구성됨. 한편, 가정법원에서는 가족분쟁해결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양육계획에 대해 변호사와 당사자가 함께 참석해야함. '중재'는 이혼 당사자와 변호사가 만나 자녀관련 문제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돕고, 가족상담사와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 호주*

○ [이혼법 개요] 호주는 1975년 제정된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라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유일한 이혼사유로 지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별거기간이 12개월 이상 된 경우 파탄으로 추정함. 한편,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만 이혼을 허가하고 있음. 법률에 특기할만한 점은 혼인지속기간이 2년 미만인 부부들에게 가족유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상담과 조정] 이혼 청구 시 법원이 인증한 조정·상담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혼인지속기간이 2년 미만인 부부는 이혼과정에서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음. 호주는 상담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는 이혼 절차 시작 전에 상담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또한 법원은 절차 진행과정에서라도 필요하면 언제든 상담을

* 본 내용은 박복순(2011).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함

명령할 수 있음

○ [이혼절차] 「이혼신청 → 안내 → 조정/상담 → 중재 → 준비절차 → 심리 전 모임 → 본 심리」의 과정을 통해 이혼절차가 이루어짐

- 안내(Information Session):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과정에 대한 전반적 절차를 설명해주는 설명을 들음
- 조정/상담(Conciliation/Counselling): 가족법상으로 상담의 기능이 중시되며,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권유/명령 가능함
- 중재(Meditation): 법원의 명령에 근거한 상담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판사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지 않음.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력이 부여됨
- 준비절차(Directions Hearing): 조정/상담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판사가 당사자를 불러 본 절차에 들어감. 이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면 아동이익최우선 원칙에 따라 '대리인(Child Representative)'이 선임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나라에서 부담하는 독특한 제도임
- 심리 전 모임(Pre Hearing Conference): 조정/상담이 재차 실패하면, 판사는 조정위원이나 조사관과 함께 심리 전 모임을 진행함. 이 단계에서 가정법원 조사관은 자녀양육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4) 오스트리아*

○ [이혼법 개요] 오스트리아의 모든 이혼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가능함. 혼인법은 '유책사유에 따른 이혼', '기타 사유로 인한 이혼', '가족공동체 해체에 따른 이혼', '협의상 이혼' 등 4가지의 이혼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관해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슷함. 협의상 이혼은 혼인법에 규정이 있는데 다음의

* 본 내용은 명현경(2017). 이혼가정 가족관계 재구성을 위한 가사상담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함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 혼인의 공동생활이 최소 6개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부부의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 부부 간 이혼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 한편, 오스트리아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전체 이혼의 87.4%가 협의 이혼 절차를 통한 이혼이었음

○ [협의이혼 절차에서 의무적 상담] 오스트리아 가사상담제도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상담을 일반적 의무규정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부부가 협의이혼을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녀의 심리에 관한 상담을 거쳐야 하고, 증명서를 법원에 근거로 제출해야 함. 협의이혼 절차에서 가사상담이 의무화된 이후 이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혼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이 자녀를 위한 바른 선택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오히려 상담이 의무화되지 않은 이혼절차에서도 이혼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상담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함. 이러한 가사상담 의무화 규정의 도입은 상담기관들이 법무성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결과이며,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모든 상담기관은 법무성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법원의 관리를 받음으로서 상담의 내용과 기관의 질 관리를 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담의 방법이나 그 내용의 수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 연방법무성과 연방가정청소년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전문가들이 '가사상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도 하였음

다. 시사점

○ 우리나라의 이혼숙려제도는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법원에서의 결정이 전에 이혼과 관련한 중재나 상담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협의이혼 신청자들에 대한 상담지원으로서 법원소속 상담위원의 위촉, 외부전문상담기관 활용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 같이 이혼 관련 상담과 중재 활성화는 부부 간 원만한 의견조율을 가능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임

○ 호주의 경우, 혼인지속기간이 2년 미만인 부부들에게 가족유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점은 특기할 점임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과 오스트리아의 가사상담제도는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와 유사한 법제형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관련한 가사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한편, 법원과 지역사회,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가사상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상담의 질과 효과를 높이려 하는 노력이 두드러짐

○ 외국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녀를 둔 경우 요구되는 이혼교육에 대한 안내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의 법적 절차 안내와 짧은 시간의 자녀양육안내만 되어있음

- 다수의 국가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원만하지 않은 결혼생활이 지속될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이혼에 있어서 비교적 허용적인 편이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매우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제시하게 함으로서 '아동의 안녕과 복리'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 볼 대목임. 또한,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상담 강제성 부여에 대한 기준선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당사자 간의 갈등문제 또한 중요하지만, 결국 이혼과정에서의 핵심은 미성년자녀의 안녕과 복리로 숙려기간 중 상담제도 의무화로 상담받기 위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물리적·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4 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정책욕구

Jeonbuk Institute

제 1 절 이혼위기가족 설문조사
제 2 절 이혼위기가족 심층면접조사
제 3 절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제 4 절 소결

제4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정책욕구

전북지역 내 이혼위기가족의 이혼 발생원인 및 이혼관련 전반적인 실태와 정책욕구를 파악하고자 첫째,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이혼을 준비 중인 협의이혼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둘째,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이혼위기가족의 구체적인 경험실태를 이혼사유별, 자녀연령대별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욕구 파악 및 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개별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셋째,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와 현행이혼 및 이혼위기가족관련 법·제도·사업 등이 갖고 있는 문제점·한계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관련기관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제 1절 이혼위기가족 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 조사대상자

- 본 연구는 이혼위기가족의 실태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가 있으면서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협의이혼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방법

-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함
- 조사방법은 전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협의이혼 신청자들 중
-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기 위해 00건강가정지

원센터의 교육 일정에 맞춰 집단교육 장소에 참석한 협의이혼 신청자에게 교육 시작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결과활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설문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익명성에 대해 공지 한 후, 이에 동의한 협의이혼 신청자 중심으로 연구진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함

- 물론 설문조사 실시에 앞서 00건강가정지원센터의 책임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함. 집단교육 장소에 책임연구원과 전문연구원이 항시 참석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문항의 이해 증진을 위한 추가적 설명을 실시함
- 총 25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이중 223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응답 기재 및 신뢰성이 의심되는 것을 제외한 20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함

○ 조사내용

- 설문의 내용 구성과 문항 개발은 여러 선행연구들(박복순, 박선영, 신연희, 2011;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4)을 토대로 1차적으로 구성 한 뒤 법원의 상담위원 2명, 부모교육안내 사업 실무자 1명에게 설문 문항과 내용을 검토 받았음. 3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지를 협의이혼 신청자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가 어려운 문장 등을 수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완성함
-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먼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별, 나이, 학력, 결혼기간, 자녀 수 및 연령, 동거인 등),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및 맞벌이 여부, 이전 결혼경험 유무 등을 살펴봄. 다음으로 협의이혼 신청자의 이혼과 관련된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혼의 원인, 이혼위기 및 이혼결정 시 가장 힘들었던 점, 이혼 전과 후의 변화하는 생활실태(주거 및 경제생활, 가족지원체계, 자녀양육과 교육) 등)와 그에 따른 어려움 등을 파악함. 마지막으로 현 정책지원의 도움정도와 문제점·개선점, 이혼위기 당시 및 이혼 진행과정 및 이혼 이후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욕구 등을 파악함

〈표 4-1〉 설문 영역 및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일반적 특성	◦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별, 나이, 학력), 거주 지역, 결혼 전 교제기간, ◦ 결혼기간, 결혼하게 된 주된 이유, 자녀 수 및 연령, 현 동거가족, 별거경험 ◦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및 맞벌이 여부, 이전 결혼경험 유무 등
이혼 관련 전반적 실태	**〈이혼 이전〉** ◦ 결혼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결혼생활 문제에 대한 의논 유무 및 대상 ◦ 원만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했었던 도움 ◦ 이혼을 결정하게 된 계기, 이혼 결심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 ◦ 이혼 결정 시 의논 유무 및 대상
	〈법적 협의이혼 진행과정〉 ◦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인 사유 ◦ 협의이혼 신청 전과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향후 이혼 이후〉 ◦ 이혼 이후 가장 큰 어려움과 그에 대한 대책 준비정도 ◦ 이혼 이후 적응 위해 가장 도움 받고 싶은 부분, 이혼 이후 지지체계 상황
자녀 관련사항	◦ 이혼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 반영 여부, 이혼 결정을 자녀에게 알림 여부 ◦ 면접교섭권 유형과 방법 자녀와 의논 여부 ◦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 사항
지원정책 평가	◦ 법원 자녀양육안내 및 의무상담에 대한 인지여부 및 정보 경로, 만족도 및 도움정도

○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의 SPSS for Windo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분산분석 등을 중심으로 실시함

나.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전체 200명의 응답자 중 여성 60%(120명), 남성 40%(80명)

○ [혼인기간] 전체 188명의 응답자 중 10~14년 31.4%(59명), 5~9년 21.3%(40명), 15~19년 19.7%(37명), 20년이상 14.4%(27명), 4년이하 13.3%(25명) 순이었으며, 평균 12.05년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전체 200명의 응답자 중 전주 78.5%(157명), 완주 10.5%(21명)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북도 내 5.5%(11명), 전북도 외 5.5%(11명) 순임(*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음)

○ [결혼유형] 전체 199명의 응답자 중 연애결혼 88.9%(177명), 중매 7.0%(14명), 다문화 4.0%(8명) 순이었음

○ [교제기간] 전체 181명의 응답자 중 1~2년 47.0%(85명), 1년미만 21.5%(39명). 3~4년 19.9%(36명), 5년이상 11.6%(21명) 순이었으며, 평균 2.13년으로 나타남

○ [연령] 전체 199명의 응답자 중 여성(119명)의 경우, 40대 46.2%(55명), 30대 36.1%(43명) 순으로 많았으며, 평균 39.12세로 나타남. 남성(80명)의 경우, 50대 58.8%(47명), 30대 22.5%(18명)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평균 41.78세로 나타남

○ [학력] 전체 194명의 응답자 중 여성(117명)과 남성(77명) 모두 고졸이하(여성 45.3%, 남성 49.4%), 대학교졸(여성 29.1%, 남성 29.9%), 전문대졸(여성 25.6%, 남성 20.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결혼이유] 전체 193명의 응답자 중 사랑해서 라는 응답이 49.2%(95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혼전임신 26.4%(51명)로 높게 나타남

○ [직업] 전체 198명의 응답자 중 여성(120명)은 서비스직 21.7%(26명), 사무직 15.8%(19명), 전문직 15.0%(18명), 주부/학생 13.3%(16명), 무직

12.5%(15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무직이거나 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25.8%를 차지하였음. 남성(78명)의 경우, 서비스직 29.5%(23명), 생산직 23.1%(18명), 사무직 14.1%(11명), 관리직 10.3%(8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결혼횟수] 전체 198명의 응답자 중 초혼비율이 87.4%(173명)로 가장 많았으나, 재혼가정의 재이혼 비율도 12.6%(25명)로 나타남

○ [소득수준] 전체 194명의 응답자 중 여성(116명)의 경우, 150~199만원 27.6%(32명), 무소득 25.9%(30명), 200~249만원 14.7%(17명), 100~149만원 11.2%(13명) 등의 순이었음. 남성(78명)의 경우, 400만원 이상 23.1%(18명), 200~249만원 16.7%(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녀수] 전체 199명의 응답자 중 2자녀 51.8%(103명), 1자녀 30.2%(60명), 3자녀 이상 18.1%(36명) 순이었음

○ [자녀연령] 전체 369명의 자녀 중 8~13세 39.8%(147명), 7세이하 24.7%(91명), 17~19세 13.3%(49명), 14~16세 11.4%(42명)로 “초등기 〉 영·유아기 〉 고등기 〉 중등기” 순이었음

○ [별거경험] 전체 196명의 응답자 중 없음 55.6%(109명), 있음 44.4%(87명)로 나타남

○ [별거기간] 전체 86명의 별거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년미만 34.9%(30명), 1~2년 31.4%(27명), 5년이상 18.6%(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동거가족] 전체 194명의 복수응답 중 여성(119명)의 경우, 자녀 76.5%(91명), 배우자 26.1%(31명), 본인부모 17.6%(21명), 혼자 7.6%(9명) 순으로 응답함. 남성(75명)의 경우, 자녀 41.3%(31명), 배우자 36.0%(27명), 혼자 33.3%(25명), 본인부모 17.3%(13명) 순으로 응답함

〈표 4-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여성	120	60.0
	남성	80	40.0
	계	200	100.0
혼인 지속기간	4년이하	25	13.3
	5~9년	40	21.3
	10~14년	59	31.4
	15~19년	37	19.7
	20년이상	27	14.4
	계	188	100.0
	(평균)	(12.05년)	
결혼유형	연애결혼	177	88.9
	중매결혼	14	7.0
	다문화	8	4.0
	계	199	100.0
거주지역	전주	157	78.5
	완주	21	10.5
	도內	11	5.5
	도外	11	5.5
	계	200	100.0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	사랑해서	95	49.2
	조건부합	18	9.3
	혼전임신	51	26.4
	결혼적령기	6	3.1
	가치관	11	5.7
	기타	12	6.2
	계	193	100.0
학력 (여성)	고졸이하	53	45.3
	전문대졸	30	25.6
	대학교졸	34	29.1
	계	117	100.0
직업 (여성)	무직	15	12.5
	전문직	18	15.0
	관리직	3	2.5
	사무직	19	15.8
	판매직	12	10.0
	서비스직	26	21.7
	생산직	11	9.2
	주부/학생	16	13.3
	계	120	100.0

구분		빈도	%
연령 (여성)	20대	15	12.6
	30대	43	36.1
	40대	55	46.2
	50대이상	6	5.0
	계	119	100.0
	(평균)	(39.12세)	
연령 (남성)	20대	7	8.8
	30대	18	22.5
	40대	47	58.8
	50대이상	8	10.0
	계	80	100.0
	(평균)	(41.78세)	
결혼 전 교제기간	1년미만	39	21.5
	1~2년	85	47.0
	3~4년	36	19.9
	5년이상	21	11.6
	계	181	100.0
	(평균)	(2.13년)	
결혼횟수	초혼	173	87.4
	재혼	25	12.6
	삼혼이상	0	0.0
	계	198	100.0
학력 (남성)	고졸이하	38	49.4
	전문대졸	16	20.8
	대학교졸	23	29.9
	계	77	100.0
직업 (남성)	무직	5	6.4
	전문직	5	6.4
	관리직	8	10.3
	사무직	11	14.1
	판매직	6	7.7
	서비스직	23	29.5
	생산직	18	23.1
	농어업	2	2.6
	계	78	100.0

〈계속〉

구분		빈도	%
소득 (여성)	없음	30	25.9
	99만원이하	8	6.9
	100~149만원	13	11.2
	150~199만원	32	27.6
	200~249만원	17	14.7
	250~299만원	6	5.2
	300~349만원	5	4.3
	350~399만원	1	0.9
	400만원이상	4	3.4
	계	116	100.0
자녀수	1명	60	30.2
	2명	103	51.8
	3명이상	36	18.1
	계	199	100.0
	(평균)	(1.95명)	
자녀연령	7세이하	91	24.7
	8~13세	147	39.8
	14~16세	42	11.4
	17~19세	49	13.3
	20세이상	40	10.8
	계	369	100.0
별거기간	1년미만	30	34.9
	1~2년	27	31.4
	3~4년	13	15.1
	5년이상	16	18.6
	계	86	100.0
	(평균)	(2.61년)	

구분		빈도	%
소득 (남성)	없음	7	9.0
	99만원이하	1	1.3
	100~149만원	3	3.8
	150~199만원	5	6.4
	200~249만원	13	16.7
	250~299만원	11	14.1
	300~349만원	11	14.1
	350~399만원	9	11.5
	400만원이상	18	23.1
	계	78	100.0
현재 동거가족 (여성) n=119	배우자	31	26.1
	자녀	91	76.5
	본인부모	21	17.6
	배우자부모	3	2.5
	혼자	9	7.6
	친구	3	2.5
	계*	158	132.8
현재 동거가족 (남성) n=75	배우자	27	36.0
	자녀	31	41.3
	본인부모	13	17.3
	배우자부모	0	0.0
	혼자	25	33.3
	친구	2	2.7
	계*	98	130.7
별거경험	없다	109	55.6
	있다	87	44.4
	계	196	100.0

주: * 복수응답

2) 이혼 관련 전반적 실태

① 이혼 이전

○ [결혼생활 문제인식 시점] 전체 135명의 응답자는 결혼 후 평균 4.68년째부터 본인의 결혼 및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평균 3.96년째부터, 남성은 5.90년째부터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음(t=-2.39, p<,01). 즉, 아내가 남편보다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좀 더 빠른 시점에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시점

		N	M	SD	t	중위값	최빈값
전체		135	4.68	4.63	-	3.00	1
성별	여성	85	3.96	4.32	-2.39**	2.00	1
	남성	50	5.90	4.91		5.00	1 , 5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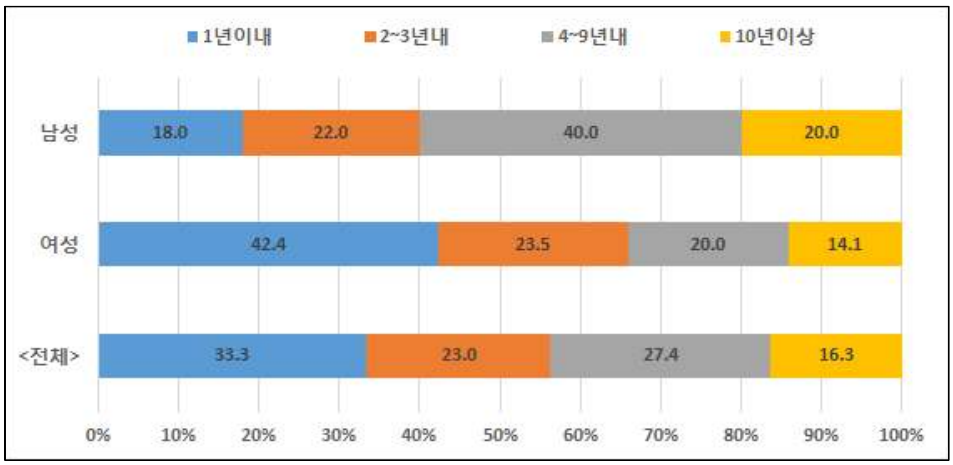

〈그림 4-1〉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시점

○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의논 대상] 전체 193명의 응답자 중 36.8%는 '친구'에게 결혼생활 문제를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누구와도 결혼생활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32.6%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친구'와 의논하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던 반면, 남성의 경우 '의논한적 없다'는 비율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부 간의 상대적 비율차이를 보였음

- 그 외 여성은 남성보다 주로 부모나 형제자매와 의논 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4〉 결혼생활 문제에 대한 의논 대상

		부모	형제자매	친구	종교기관	상담기관	의논한적 없음	기타	계
전체		9.3	14.5	36.8	1.0	4.1	32.6	1.6	193(100.0)
성별	여성	12.0	17.1	41.9	1.7	3.4	22.2	1.7	117(100.0)
	남성	5.3	10.5	28.9	0.0	5.3	48.7	1.3	76(100.0)
$X^2(df)$ = 17.290(6)**									

*p<.05, **p<.01, ***p<.001

주: 6셀(42.9%)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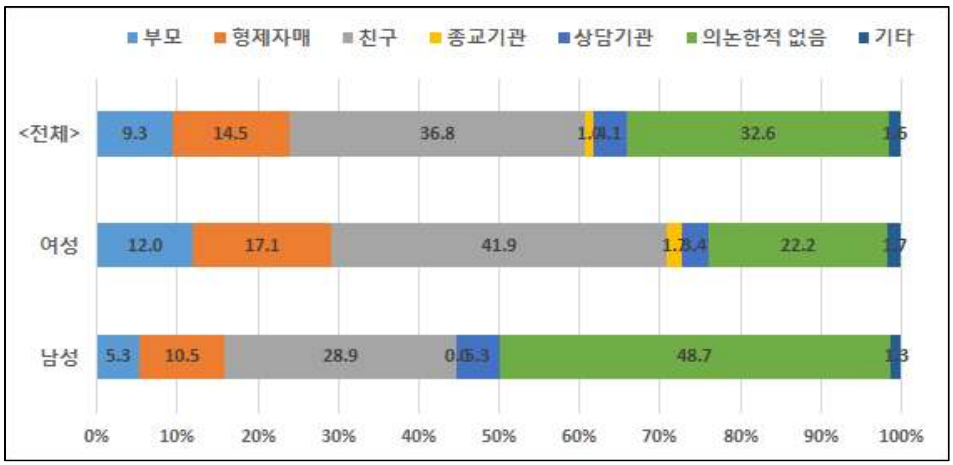

〈그림 4-2〉 결혼생활 문제에 대한 의논 대상

○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전체 188명의 응답자 중 57.4%가 부부가 해결하려고 대화한 것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남. 반면, 상담기관을 찾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 비율은 11.7%에 그쳤음. 더욱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26.6%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아무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5〉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도움요청	상담기관 찾음	부부가 해결하려 대화함	아무노력 안함	기타	계
전체		3.2	8.5	57.4	26.6	4.3	188(100.0)
성별	여성	2.6	11.2	56.0	24.1	6.0	116(100.0)
	남성	4.2	4.2	59.7	30.6	1.4	72(100.0)
$X^2(df)$ = 5.981(4)							

*p<.05, **p<.01, ***p<.001

주: 4셀(4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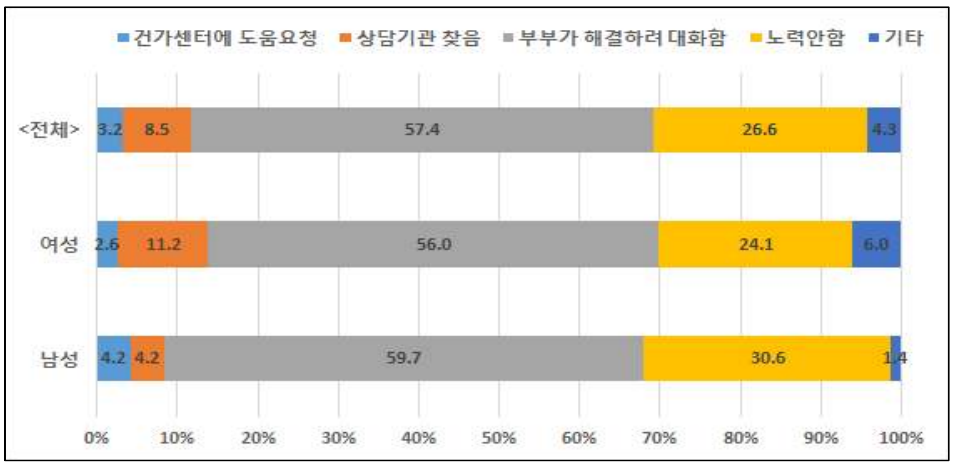

〈그림 4-3〉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결혼생활 문제인식 이후,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기간] 전체 137명의 응답자는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시점 이후 평균 5.53년이 지나서 이혼을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83명)의 경우 문제인식 이후 평균 5.63년이 지나서, 남성(54명)은 5.37년 지나서 이혼을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t=.29, n.s),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은 남편이 아내보다 이혼결정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향을 나타냄

〈표 4-6〉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이후, 이혼결정까지의 기간

		N	M	SD	t	중위값	최빈값
전체		137	5.53	5.12	-	3.00	1
성별	여성	83	5.63	5.23	.29	3.00	1
	남성	54	5.37	4.99		3.50	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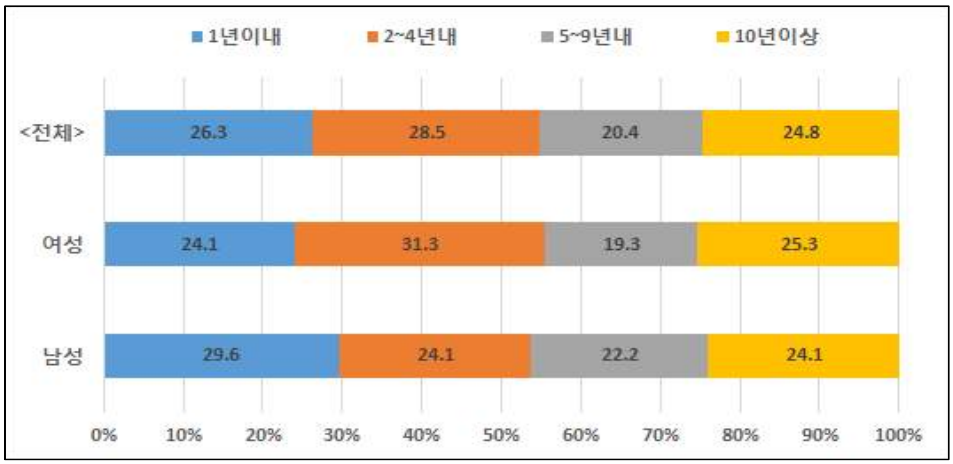

〈그림 4-4〉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이후, 이혼결정까지의 기간

○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걱정되었던 점]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임의가중치를 부여하여 살펴본 결과, '자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혼자서 자녀양육과 살림에 대한 걱정'이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혼자 자녀양육과 살림에 대한 걱정'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순으로 높게 나타나 부부 간 차이를 보였음

〈표 4-7〉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걱정되었던 점(전체응답)

구분	1순위(n=195)			2순위(n=155)			전체
	빈도	가중치	값	빈도	가중치	값	
경제적인 걱정	10	200	2,000	10	100	1,000	3,000
혼자 자녀양육과 살림에 대한 걱정	23	200	4,600	20	100	2,000	6,600
주변 시선	5	200	1,000	17	100	1,700	2,700
이혼한다고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6	200	1,200	9	100	900	2,100
이혼 후 외로움	3	200	600	2	100	200	800
결혼은 깨지면 안되니까	2	200	400	4	100	400	800
가족, 주변인의 만류	7	200	1,400	4	100	400	1,800
결혼실패자가 되기 싫어서	7	200	1,400	23	100	2,300	3,700
부모님 실망시킬 수 없어서	8	200	1,600	28	100	2,800	4,400
자녀에 대한 걱정	123	200	24,600	33	100	3,300	27,900
기타	1	200	200	5	100	500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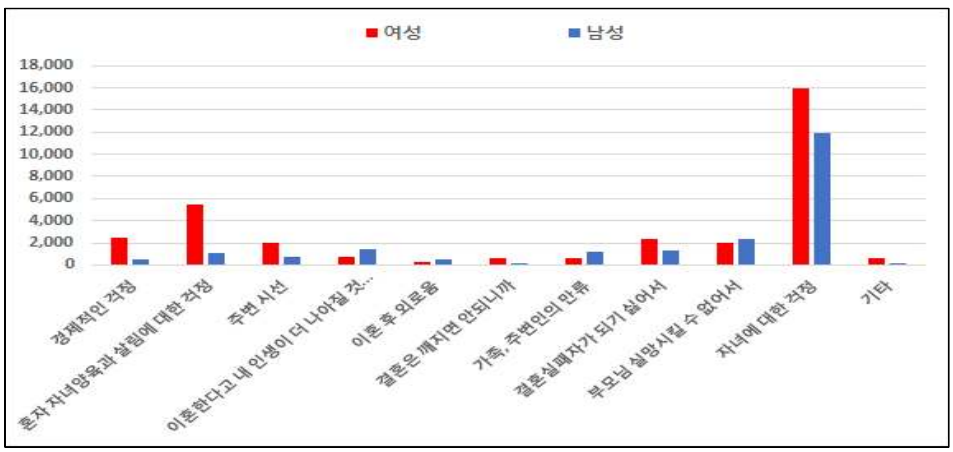

〈그림 4-5〉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표 4-8〉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걱정되었던 점(아내응답)

구분	1순위(n=118)			2순위(n=96)			전체
	빈도	가중치	값	빈도	가중치	값	
경제적인 걱정	8	200	1,600	9	100	900	2,500
혼자 자녀양육과 살림에 대한 걱정	20	200	4,000	15	100	1,500	5,500
주변 시선	4	200	800	12	100	1,200	2,000
이혼한다고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2	200	400	3	100	300	700
이혼 후 외로움	1	200	200	1	100	100	300
결혼은 깨지면 안되니까	2	200	400	2	100	200	600
가족, 주변인의 만류	3	200	600	0	100	0	600
결혼실패자가 되기 싫어서	3	200	600	18	100	1,800	2,400
부모님 실망시킬 수 없어서	4	200	800	12	100	1,200	2,000
자녀에 대한 걱정	70	200	14,000	20	100	2,000	16,000
기타	1	200	200	4	100	400	600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걱정	1위	자녀에 대한 걱정
혼자 자녀양육과 살림에 대한 걱정	2위	부모님 실망시킬 수 없어서
경제적인 걱정	3위	이혼한다고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결혼실패자가 되기 싫어서	4위	결혼실패자가 되기 싫어서

〈표 4-9〉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걱정되었던 점(남편응답)

구분	1순위(n=77)			2순위(n=59)			전체
	빈도	가중치	값	빈도	가중치	값	
경제적인 걱정	2	200	400	1	100	100	500
혼자 자녀양육과 살림에 대한 걱정	3	200	600	5	100	500	1,100
주변 시선	1	200	200	5	100	500	700
이혼한다고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4	200	800	6	100	600	1,400
이혼 후 외로움	2	200	400	1	100	100	500
결혼은 깨지면 안되니까	0	200	0	2	100	200	200
가족, 주변인의 만류	4	200	800	4	100	400	1,200
결혼실패자가 되기 싫어서	4	200	800	5	100	500	1,300
부모님 실망시킬 수 없어서	4	200	800	16	100	1,600	2,400
자녀에 대한 걱정	53	200	10,600	13	100	1,300	11,900
기타	0	200	0	1	100	100	100

○ [이혼 결정 시, 의논 대상] 전체 197명의 응답자 중 40.6%가 이혼을 결정할 때에 아무와도 의논을 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의논을 했던 응답자는 '부모'가 21.3%, 친구(16.8%), 형제·자매(14.7%) 순이었으며, 상담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4.6%에 불과하였음.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이혼 결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10〉 이혼 결정에 대한 의논 상대

		부모	형제자매	친구	상담기관	의논하지 않음	기타	계
전체		21.3	14.7	16.8	4.6	40.6	2.0	197(100.0)
성별	여성	24.4	16.8	19.3	4.2	32.8	2.5	119(100.0)
	남성	16.7	11.5	12.8	5.1	52.6	1.3	78(100.0)
$X^2(df)$ = 8.38(5)								

*p<.05, **p<.01, ***p<.001

주: 3셀(25.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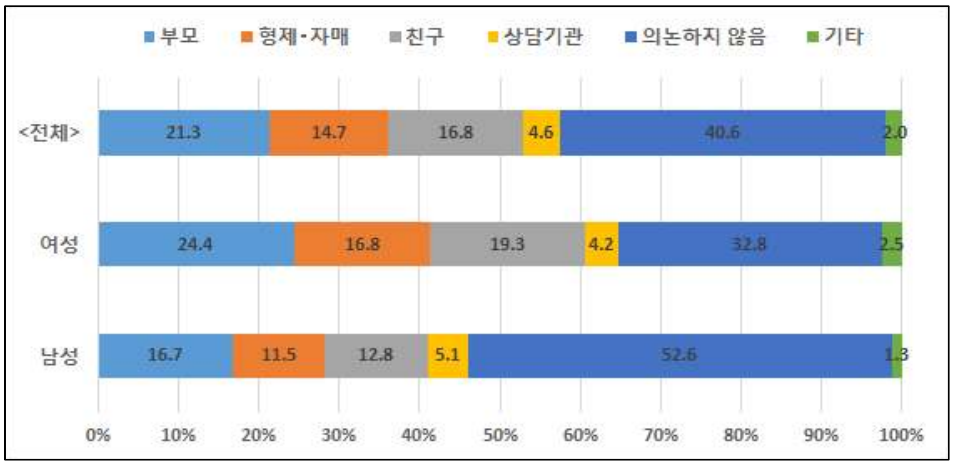

〈그림 4-6〉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도움] 전체 175명의 응답자 중 과거를 돌아볼 때, '성격·가치관의 이해(54.9%)'와 '사고방식·생활습관 개선(54.3%)'에 관한 도움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성별로는 여성은 사고방식·생활습관 개선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남성은 성격·가치관의 이해를 가장 많이 선택함. 그 외에, 여성은 부모역할, 경제적 측면의 도움이 필요했었던 것 같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11〉 과거를 돌아볼 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필요했던 도움(복수응답)

		일자리	직업교육	사고방식 개선	의사소통 기술	성격·가치관 이해	감정조절 방법	갈등해결 상담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방법	계
전체 n=175		13.1	5.1	54.3	36.6	54.9	44.0	33.1	43.4	33.7	557 (318.3)
성별	여성 n=106	17.9	8.5	51.9	36.8	47.2	42.5	32.1	49.1	35.8	341 (321.7)
	남성 n=69	5.8	0.0	58.0	36.2	66.7	46.4	34.8	34.8	30.4	216 (313.0)
혼인 지속 기간 별	4년↓ n=22	13.6	4.5	81.8	40.9	40.9	68.2	50.0	63.6	18.2	84 (381.8)
	5~9년 n=34	11.8	5.9	50.0	35.3	58.8	58.8	35.3	44.1	26.5	111 (326.5)
	10~14년 n=52	9.6	5.8	48.1	36.5	51.9	34.6	34.6	42.3	38.5	157 (301.9)
	15~19년 n=34	17.6	5.9	61.8	50.0	55.9	38.2	26.5	35.3	47.1	115 (338.2)
	20년↑ n=23	8.7	0.0	52.2	30.4	56.5	43.5	34.8	34.8	39.1	69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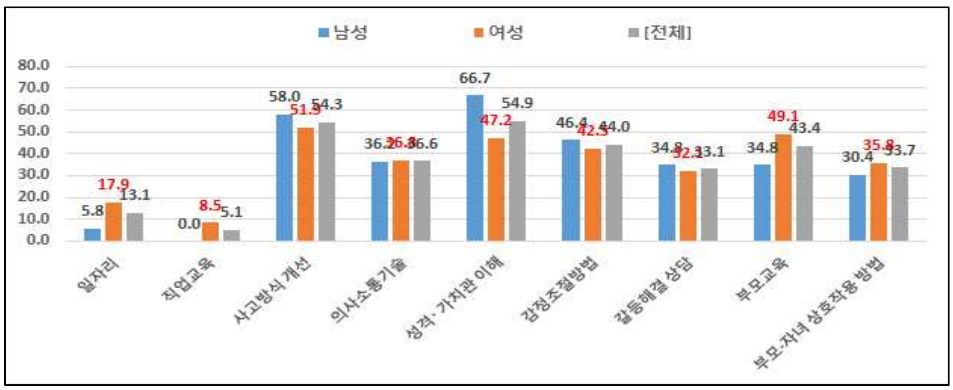

〈그림 4-7〉 결혼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② 이혼 진행과정

○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 각 응답 순위에 임의가중치를 부여하여 살펴본 결과, '사고방식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외도', '가정에 무관심'등의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아내는 '사고방식 차이', '외도', '가정에 무관심' 등의 순으로 선택한 반면, 남편은 '사고방식 차이', '신뢰감 상실', '의견불일치' 등의 순으로 선택하여 부부 간 차이를 보였음

〈표 4-12〉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전체응답)

구분		1순위(n=198)		2순위(n=189)		3순위(n=171)		전체	
		빈도	값*	빈도	값*	빈도	값*		
부정/부당한 행위	**외도**	30	9,000	4	800	5	500	10,300	2
	의처증/의부증	3	900	3	600	1	100	1,600	21
	의심증	5	1,500	1	200	2	200	1,900	19
학대/폭력	신체폭력	8	2,400	6	1,200	2	200	3,800	12
	언어폭력	7	2,100	18	3,600	7	700	6,400	5
중독/장애	알코올중독	4	1,200	2	400	3	300	1,900	20
	도박중독	6	1,800	5	1,000	2	200	3,000	15
	정신장애	3	900	1	200	0	0	1,100	24
시댁/처가 갈등	배우자가족과 갈등	14	4,200	6	1,200	5	500	5,900	6
	본인가족과 갈등	3	900	6	1,200	1	100	2,200	17
성격 차이	**사고방식차이**	45	13,500	32	6,400	18	1,800	21,700	1
	의견불일치	5	1,500	13	2,600	10	1,000	5,100	7
부부관계	**가정에 무관심**	16	4,800	12	2,400	9	900	8,100	3
	애정부족	3	900	9	1,800	8	800	3,500	13
	신뢰감상실	11	3,300	14	2,800	14	1,400	7,500	4
	거짓말	1	300	10	2,000	9	900	3,200	14
	성생활불만	2	600	7	1,400	5	500	2,500	16
	대화부족	3	900	7	1,400	16	1,600	3,900	11
경제문제	생활비 미지급	8	2,400	8	1,600	9	900	4,900	9
	경제적 무능	8	2,400	7	1,400	7	700	4,500	10
	잦은 이직	0	0	1	200	0	0	200	27
	낮은 보수	0	0	1	200	1	100	300	26
	과소비	1	300	2	400	7	700	1,400	22
자녀문제	양육방식 차이	1	300	2	400	7	700	1,400	23
	자녀에 무관심	2	600	6	1,200	3	300	2,100	18
	학업성취/진로문제	0	0	0	0	2	200	200	28
	자녀사망	0	0	0	0	1	100	100	29
기타	배우자의 이혼요구	8	2,400	6	1,200	15	1,500	5,100	8
	종교생활	1	300	0	0	1	100	400	25

주: * '값'은 순위별 가중치(100~300)를 곱한 수치임

〈표 4-13〉 주된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 간 비교

〈아내〉	사고방식 차이	외도	가정에 무관심	언어 폭력	배주자 가족과 갈등	생활비 미지급	신체폭력	경제적 무능	신뢰감 상실	도박중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남편〉	사고방식 차이	신뢰감 상실	의견 불일치	배우자 이혼 요구	외도	애정 부족	가정에 무관심	본인가족 과갈등	배주자 가족과 갈등	성생활 불만

〈표 4-14〉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아내응답)

구분		1순위(n=120)		2순위(n=118)		3순위(n=110)		전체	
		빈도	값*	빈도	값*	빈도	값*		
부정/부당한 행위	**외도**	22	6,600	2	400	5	500	7,500	2
	의처증/의부증	2	600	3	600	1	100	1,300	18
	의심증	3	900	1	200	1	100	1,200	19
학대/폭력	신체폭력	8	2,400	6	1,200	2	200	3,800	7
	언어폭력	7	2,100	14	2,800	7	700	5,600	4
중독/장애	알코올중독	4	1,200	2	400	2	200	1,800	13
	도박중독	4	1,200	5	1,000	2	200	2,400	10
	정신장애	1	300	1	200	0	0	500	22
시댁/처가 갈등	배우자가족과 갈등	10	3,000	5	1,000	3	300	4,300	5
	본인가족과 갈등	0	0	2	400	0	0	400	24
성격차이	**사고방식차이**	18	5,400	20	4,000	14	1,400	10,800	1
	의견불일치	1	300	3	600	5	500	1,400	17
부부관계	**가정에 무관심**	13	3,900	7	1,400	9	900	6,200	3
	애정부족	2	600	3	600	3	300	1,500	16
	신뢰감상실	5	1,500	5	1,000	9	900	3,400	9
	거짓말	1	300	7	1,400	3	300	2,000	12
	성생활불만	1	300	3	600	1	100	1,000	20
	대화부족	1	300	5	1,000	11	1,100	2,400	11
경제문제	생활비 미지급	6	1,800	7	1,400	8	800	4,000	6
	경제적 무능	7	2,100	5	1,000	5	500	3,600	8
	잦은 이직	0	0	0	0	0	0	0	28
	낮은 보수	0	0	1	200	1	100	300	25
	과소비	0	0	2	400	1	100	500	23
자녀문제	양육방식 차이	0	0	2	400	5	500	900	21
	자녀에 무관심	2	600	5	1,000	2	200	1,800	14
	학업성취/진로문제	0	0	0	0	2	200	200	26
	자녀사망	0	0	0	0	0	0	0	28
기타	배우자의 이혼요구	2	600	2	400	7	700	1,700	15
	종교생활	0	0	0	0	1	100	100	27

주: * '값'은 순위별 가중치(100~300)를 곱한 수치임

〈표 4-15〉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남편응답)

구분		1순위(n=78)		2순위(n=71)		3순위(n=61)		전체	
		빈도	값*	빈도	값*	빈도	값*		
부정/부당한 행위	외도	8	2,400	2	400	0	0	2,800	5
	의처증/의부증	1	300	0	0	0	0	300	21
	의심증	2	600	0	0	1	100	700	17
학대/폭력	신체폭력	0	0	0	0	0	0	0	-
	언어폭력	0	0	4	800	0	0	800	16
중독/장애	알코올중독	0	0	0	0	1	100	100	25
	도박중독	2	600	0	0	0	0	600	18
	정신장애	2	600	0	0	0	0	600	19
시댁/처가 갈등	배우자가족과 갈등	4	1,200	1	200	2	200	1,600	9
	본인가족과 갈등	3	900	4	800	1	100	1,800	8
성격차이	**사고방식차이**	27	8,100	12	2,400	4	400	10,900	1
	의견불일치	4	1,200	10	2,000	5	500	3,700	3
부부관계	가정에 무관심	3	900	5	1,000	0	0	1,900	7
	애정부족	1	300	6	1,200	5	500	2,000	6
	신뢰감상실	6	1,800	9	1,800	5	500	4,100	2
	거짓말	0	0	3	600	6	600	1,200	12
	성생활불만	1	300	4	800	4	400	1,500	10
	대화부족	2	600	2	400	5	500	1,500	11
경제문제	생활비 미지급	2	600	1	200	1	100	900	13
	경제적 무능	1	300	2	400	2	200	900	14
	잦은 이직	0	0	1	200	0	0	200	24
	낮은 보수	0	0	0	0	0	0	0	-
	과소비	1	300	0	0	6	600	900	15
자녀문제	양육방식 차이	1	300	0	0	2	200	500	20
	자녀에 무관심	0	0	1	200	1	100	300	22
	학업성취/진로문제	0	0	0	0	0	0	0	-
	자녀사망	0	0	0	0	1	100	100	26
기타	배우자의 이혼요구	6	1,800	4	800	8	800	3,400	4
	종교생활	1	300	0	0	0	0	300	23

주: * '값'은 순위별 가중치(100~300)를 곱한 수치임

- 혼인지속기간별 주된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4년이하 부부'는 사고방식 차이, 배우자가족과 갈등, 가정무관심, 경제적 무능 등의 이유로 나타남. '5~9년차 부부'는 사고방식 차이, 외도, 배우자가족과 갈등, 언어폭력 등을 선택하였으며, '10~14년차 부부'는 사고방식 차이, 외도, 가정무관심, 신뢰감 상실 등의 이유로 나타남. '15~19년차 부부'는 사고방식 차이, 외도, 가정무관심,

신체폭력, 도박중독 등을 선택하였으며, '20년차 이상 부부'는 사고방식 차이, 외도, 배우자가족과 갈등, 의견불일치, 신뢰감 상실, 경제적 무능을 주로 선택하였음. 1순위를 제외하고 혼인지속기간에 따라 주된 이혼의 사유가 차이를 보였음

〈표 4-16〉 혼인지속기간별 주된 이혼 사유(1순위 응답)

		1위	2위	3위	4위
혼인지속기간별	4년↓	사고방식 차이	배우자가족갈등, 가정무관심, 경제적 무능		
	5~9년	사고방식 차이, 외도		배우자가족갈등	언어폭력
	10~14년	사고방식 차이	외도	가정무관심, 신뢰감 상실	
	15~19년	사고방식 차이	외도	가정무관심, 신체폭력, 도박중독	
	20년↑	사고방식 차이	외도	배우자가족갈등, 의견불일치, 신뢰감상실, 경제적 무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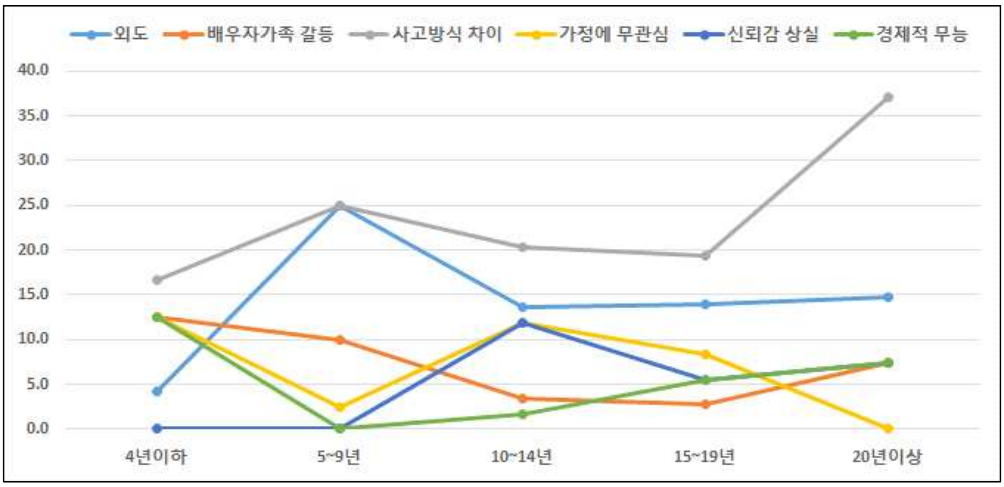

〈그림 4-8〉 혼인지속기간별 주된 이혼 사유(1순위 응답)

○ [협의이혼 신청 전 필요했던 정보]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임의가중치를 부여하여 살펴본 결과,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정보가 가장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이혼법률' 관련 정보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정보 필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혼 후 자녀양육방법' 등의 순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부부갈등 전문상담' 필요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혼 관련 법률'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부부 간 차이를 보였음

〈표 4-17〉 협의이혼 신청 전 필요했던 정보(전체응답)

구분	1순위(n=187)			2순위(n=172)			전체
	빈도	가중치	값	빈도	가중치	값	
이혼법률	29	200	5,800	14	100	1,400	7,200
협의이혼 절차	49	200	9,800	31	100	3,100	12,900
적절한 상담기관	12	200	2,400	10	100	1,000	3,400
이혼 후 경제대책	9	200	1,800	13	100	1,300	3,100
이혼 후 자녀양육	23	200	4,600	28	100	2,800	7,400
이혼 후 적응	4	200	800	7	100	700	1,500
부부갈등 전문상담	20	200	4,000	13	100	1,300	5,300
의사소통기술	4	200	800	10	100	1,000	1,800
감정조절법	7	200	1,400	8	100	800	2,200
심리치료	3	200	600	1	100	100	700
자녀심리상담	16	200	3,200	9	100	900	4,100
자녀 이해시키는 방법	11	200	2,200	28	100	2,800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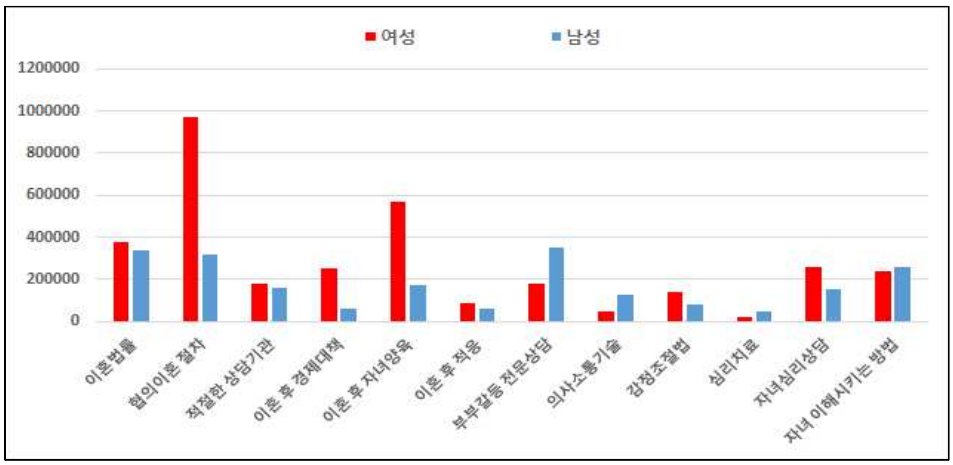

〈그림 4-9〉 협의이혼 신청 전 필요했던 정보

아내		남편
협의이혼 절차	1위	부부갈등 전문상담
이혼 후 자녀양육방법	2위	이혼 관련 법률
이혼 관련 법률	3위	협의이혼 절차
자녀심리상담	4위	자녀 이해시키는 방법
이혼 후 경제대책	5위	이혼 후 자녀양육

○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임의가중치를 부여하여 살펴본 결과,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혼을 자녀에게 이해시키는 방법', '자녀의 심리상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1위~3위까지의 필요도가 자녀 관련 사항으로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부부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4-18〉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전체응답)

구분	1순위(n=183)			2순위(n=164)			전체
	빈도	가중치	값	빈도	가중치	값	
이혼법률	16	200	3,200	9	100	900	4,100
협의이혼 절차	13	200	2,600	12	100	1,200	3,800
적절한 상담기관	11	200	2,200	6	100	600	2,800
이혼 후 경제대책	17	200	3,400	10	100	1,000	4,400
이혼 후 자녀양육	45	200	9,000	29	100	2,900	11,900
이혼 후 적응	8	200	1,600	13	100	1,300	2,900
부부갈등 전문상담	6	200	1,200	10	100	1,000	2,200
의사소통기술	5	200	1,000	5	100	500	1,500
감정조절법	7	200	1,400	9	100	900	2,300
심리치료	6	200	1,200	8	100	800	2,000
자녀심리상담	22	200	4,400	26	100	2,600	7,000
자녀 이해시키는 방법	27	200	5,400	27	100	2,700	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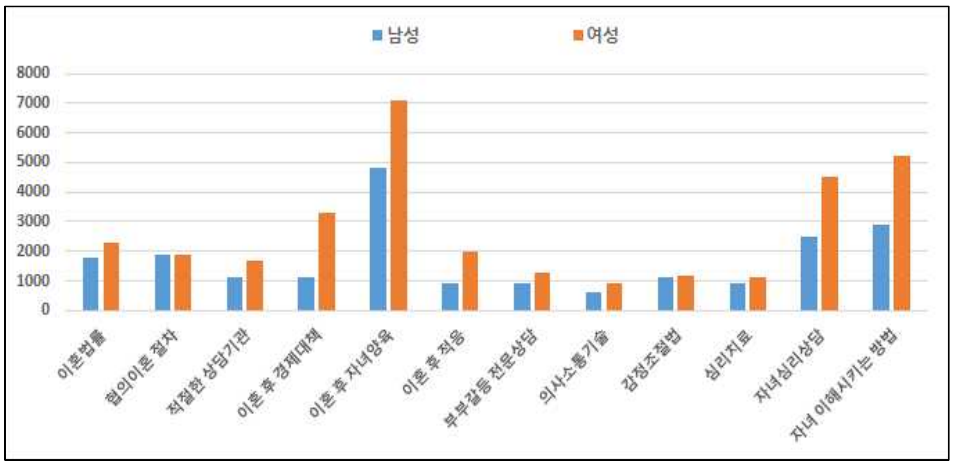

〈그림 4-10〉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아내		남편
이혼 후 자녀양육 대책	1위	이혼 후 자녀양육 대책
자녀를 이해시키는 방법	2위	자녀를 이해시키는 방법
자녀의 심리상담	3위	자녀의 심리상담
이혼 후 경제대책	4위	협의이혼 절차
이혼 관련 법률	5위	이혼 관련 법률

○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전체 167명의 응답자 중 34.7%가 '감정대결' 때문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음. 다음으로 '부부 간 대화단절' 이유가 높게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은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은 '합리적 기준을 몰라서'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9〉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상대방의 강압	부부 간 대화단절	감정대결	합리적 기준선을 몰라서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소송 피하고자	기타	계
전체		2.4	29.3	34.7	18.0	7.2	4.2	4.2	167(100.0)
성별	여성	2.1	27.8	36.1	14.4	10.3	3.1	6.2	97(100.0)
	남성	2.9	31.4	32.9	22.9	2.9	2.7	1.4	70(100.0)
$X^2(df)$ = 8.02(6)									

*p<.05, **p<.01, ***p<.001

주: 6셀(42.9%)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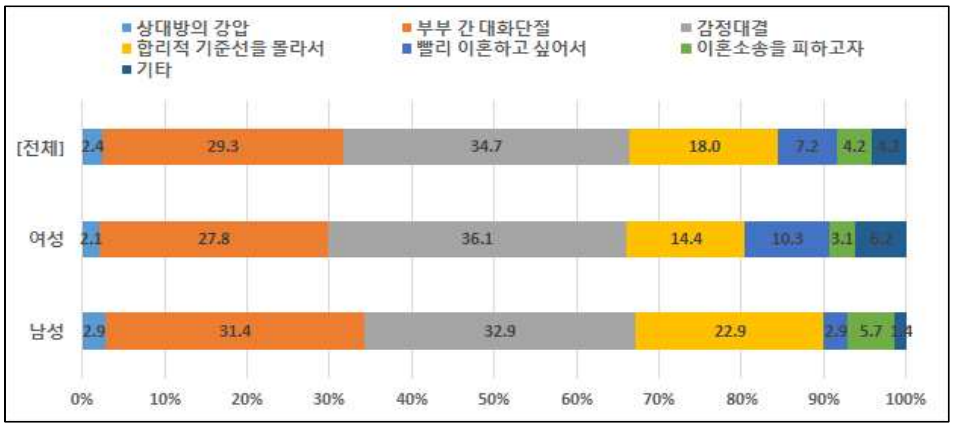

〈그림 4-11〉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③ 이혼 이후

○ [이혼 이후,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책] 전체 응답자의 이혼 이후 걱정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자녀 정서문제(3.16점)'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문제와 자녀양육(각 2.77점), 상실감(2.58점) 등의 순이었음. 이에 대한 대책마련 정도를 보면, '편견(2.50점)'에 대한 준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문제(2.51점), 상실감(2.54점), 자녀의 심리·정서문제(2.58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남

〈표 4-20〉 이혼 후,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책(4점만점)

구분	어려움(걱정되는) 정도				대책마련 준비도			
	전체	여성	남성	t	전체	여성	남성	t
경제적 어려움	2.77	3.07	2.32	5.21***	2.51	2.60	2.38	1.68
자녀의 심리·정서 문제	3.16	3.23	3.08	1.31	2.58	2.69	2.41	2.12*
자녀양육 및 교육	2.77	2.81	2.70	.78	2.65	2.79	2.41	2.69**
상실감과 외로움	2.58	2.67	2.45	1.41	2.54	2.69	2.32	2.44**
주거문제	2.51	2.65	2.30	2.13*	2.78	2.85	2.66	1.22
주변인의 편견	2.55	2.68	2.36	2.07*	2.50	2.60	2.34	1.72

*p<.05, **p<.01, ***p<.001

주: 전체응답 기준

〈그림 4-12〉 예상되는 어려움(걱정)　　〈그림 4-13〉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준비도

- 이혼 후, 예상되는 어려움(걱정)과 이에 대한 준비정도를 성별로 비교해 살펴보면, 어려움(걱정)의 수준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경제문제(t=5.21, p<.001)', '주거문제(t=2.13, p<.05)', '주변

편견(t=2.07,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남. 한편, 여성이 남성보다 걱정 수준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자녀의 심리·정서문제(t=2.12, p<.05)', '자녀양육(t=2.69, p<.01)', '상실감(t=2.44, p<.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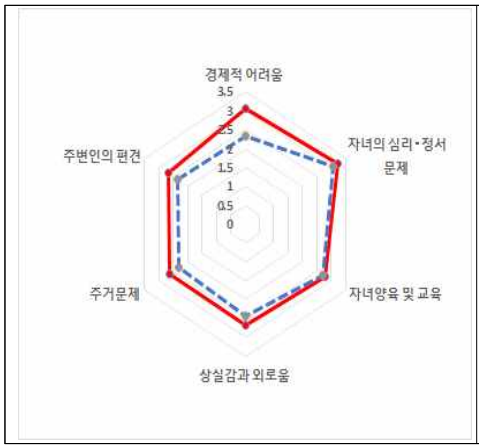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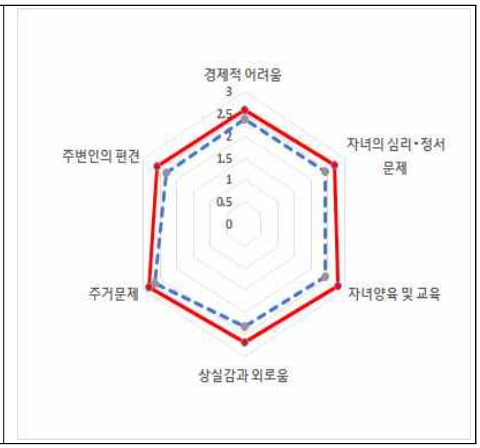

주: 여성(–), 남성(…)

〈그림 4-14〉 예상되는 어려움(걱정)　　〈그림 4-15〉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준비도

- 어려움 대비 준비도로 보면, 여성은 '편견, 경제문제, 자녀 정서문제' 항목에서 어려움(걱정) 대비 준비도가 취약하였으며, 남성은 '자녀 정서문제, 자녀양육, 상실감' 항목에서 어려움에 대한 준비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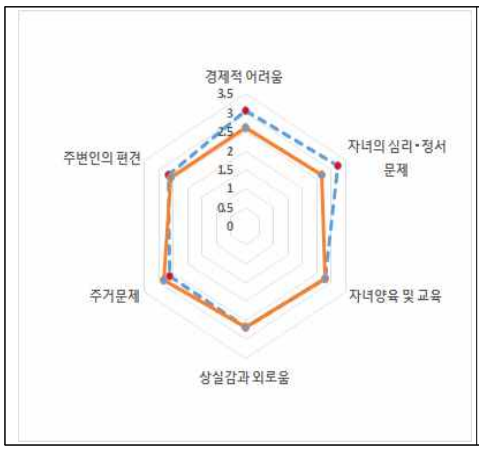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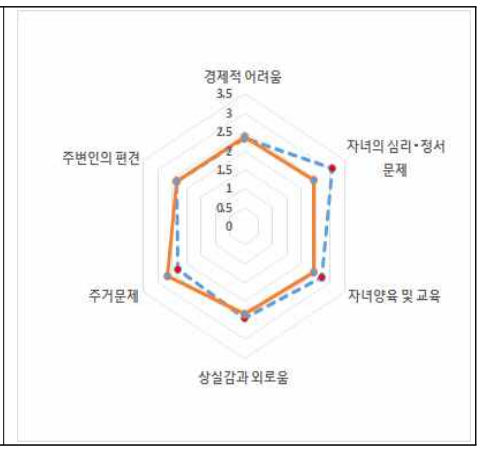

주: 준비도(–), 어려움(…)

〈그림 4-16〉 어려움 대비 준비도(여성)　　〈그림 4-17〉 어려움 대비 준비도(남성)

○ [이혼 이후, 적응을 위한 도움]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임의가중치를 부여하여 살펴본 결과,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양육비용', '자녀 심리·정서지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는 이혼 이후 적응을 위한 도움으로 모두 경제적 측면의 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일자리 알선'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 이혼 이후, 적응을 위한 도움(전체응답)

구분	1순위(n=194)			2순위(n=177)			전체
	빈도	가중치	값	빈도	가중치	값	
경제적 지원	58	200	11,600	21	100	2,100	13,700
일자리 알선	11	200	2,200	11	100	1,100	3,300
자녀양육비용	33	200	6,600	40	100	4,000	10,600
혼자 아이키우기 도움	24	200	4,800	29	100	2,900	7,700
자녀 심리·정서 지원	27	200	5,400	27	100	2,700	8,100
이혼자 심리상담	11	200	2,200	5	100	500	2,700
주거지원	8	200	1,600	13	100	1,300	2,900
이혼에 대한 편견개선	17	200	3,400	16	100	1,600	5,000
이혼자 자조모임 지원	1	200	200	4	100	400	600
이혼자를 위한 기관 안내	3	200	600	9	100	900	1,500
기타	1	200	200	2	100	200	400

〈그림 4-18〉 이혼 이후, 적응을 위한 도움

○ [이혼 이후, 지지체계 상황] 전체 192명의 응답자 중 50.0%가 이혼 후,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조금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거의 없다(23.4%)'의 순으로 평균 2.62점(4점만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지지체계 상황은 취약한 편이라 할 수 있음.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음

〈표 4-22〉 이혼 이후, 지지체계 상황

		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	평균 (4점만점)
전체		100.0(192)	13.5	23.4	50.0	13.0	2.62
성별	여성	100.0(117)	12.8	21.4	52.1	13.7	2.67
	남성	100.0(75)	14.7	26.7	46.7	12.0	2.56
X^2(df) = 1.035(3) / t = .82							

*p<.05, **p<.01, ***p<.001

주: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그림 4-19〉 이혼 이후, 지지체계 상황

3) 자녀관련 사항

○ [이혼에 대한 자녀의견 청취 여부] 전체 197명의 응답자 중 52.3%가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의 의견을 물어본 경우, 자녀모두에게 물어본 경우는 35.0%, 일부 자녀에게만 물어본 경우는 12.7%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64.1%의 응답자가 이혼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은 것으로 여성(44.5%)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X^2=8.71, p<.01)

〈표 4-23〉 이혼에 대한 자녀의견 청취 여부

		예		아니오	계
		(자녀모두)	(일부 자녀만)		
전체		35.0	12.7	52.3	197(100.0)
성별	여성	42.9	12.6	44.5	119(100.0)
	남성	23.1	12.8	64.1	78(100.0)
X^2(df) = 8.714(2)**					

*p<.05, **p<.01, ***p<.001

주: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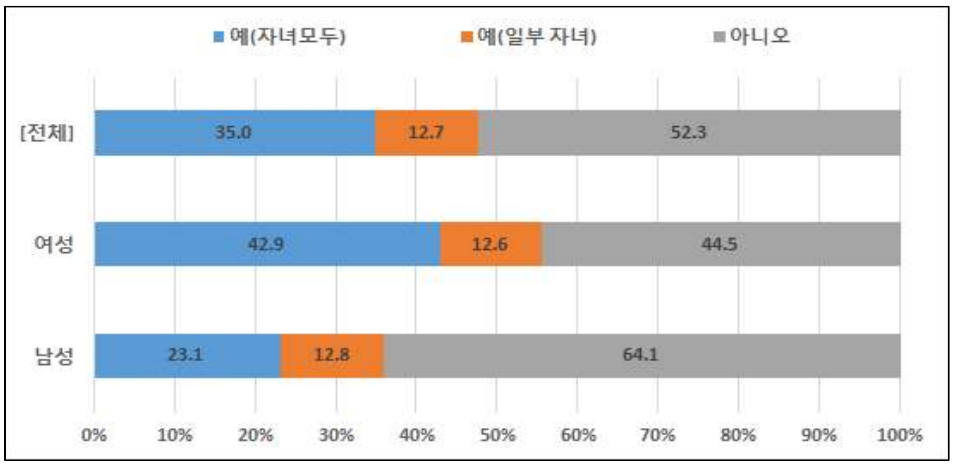

〈그림 4-20〉 이혼에 대한 자녀의견 청취 여부

○ [이혼결정을 자녀에게 알림 여부] 전체 197명의 응답자 중 44.2%가 부모의 이혼결정에 대해 자녀에게 아직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에게 이혼결정을 알린 경우, 자녀모두에게 알린 경우는 41.6%, 일부 자녀에게만 알린 경우는 14.2%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50.0%의 응답자가 이혼결정에 대해 자녀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여성(40.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4〉 이혼결정을 자녀에게 알림 여부

		예		아니오	계
		(자녀모두)	(일부 자녀만)		
전체		41.6	14.2	44.2	197(100.0)
성별	여성	47.9	11.8	40.3	119(100.0)
	남성	32.1	17.9	50.0	78(100.0)
		X^2(df) = 5.107(2)			

*p<.05, **p<.01, ***p<.001

주: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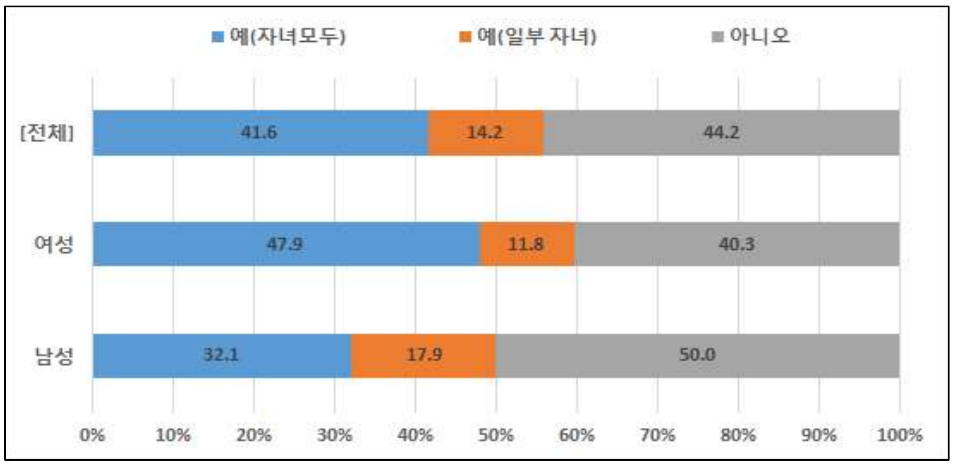

〈그림 4-21〉 이혼결정을 자녀에게 알림 여부

○ [면접교섭에 관한 자녀와 논의 여부] 전체 196명의 응답자 중 64.8%가 부모의 이혼 이후, 면접교섭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 자녀와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와 상의를 한 경우, 자녀모두에게 알린 경우는 28.1%, 일부 자녀에게만 알린 경우는 7.1%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72.7%의 응답자가 이혼 이후 면접교섭 방식에 대해 자녀와 상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여성(59.7%)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X^2=6.316, p<.05)

〈표 4-25〉 이혼 이후 면접교섭에 관한 자녀와 논의 여부

		예		아니오	계
		(자녀모두)	(일부 자녀만)		
전체		28.1	7.1	64.8	196(100.0)
성별	여성	34.5	5.9	59.7	119(100.0)
	남성	18.2	9.1	72.7	77(100.0)
		X^2(df) = 6.316(2)*			

*p<.05, **p<.01, ***p<.001

주: 0셀(0.0%)은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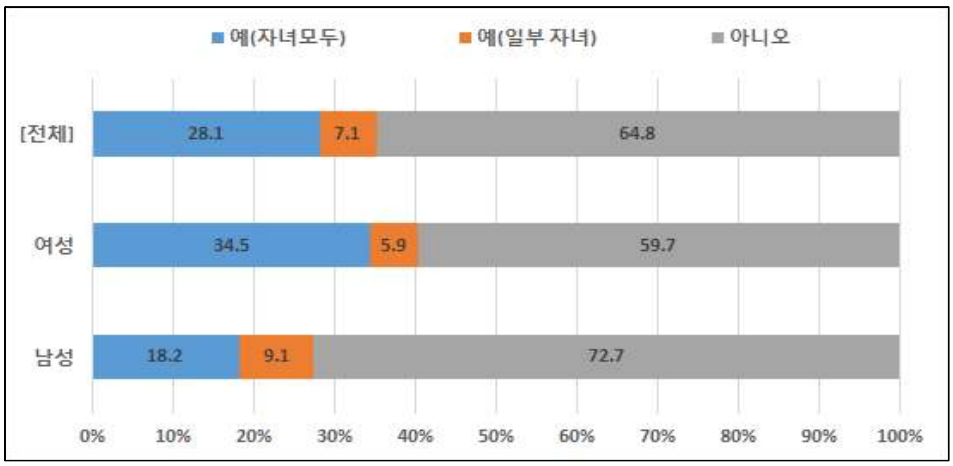

〈그림 4-22〉 이혼 이후 면접교섭에 관한 자녀와 논의 여부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요구]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임의가중치를 부여하여 살펴본 결과, '자녀의 심리·정서 상담'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와의 대화기법', '양육비 이행시스템 구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응답순위가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은 '자녀의 심리상담 - 자녀와의 대화기법 - 양육비 이행시스템 구축 - 부모교육 강화 - 양육관련 협의를 위한 상담 의무화'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여성과 달리 '양육비 이행시스템 구축'이 5순위였으며, 부모교육 강화가 3순위로 나타남

〈표 4-26〉 자녀의 안녕 및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점(전체응답)

구분	1순위(n=189)			2순위(n=173)			전체
	빈도	가중치	값	빈도	가중치	값	
부모교육 강화	21	200	4,200	23	100	2,300	6,500
자녀와의 대화기법	67	200	13,400	45	100	4,500	17,900
양육관련 협의를 위한 상담의무화	13	200	2,600	14	100	1,400	4,000
자녀의 심리·정서상담	63	200	12,600	61	100	6,100	18,700
양육비 이행시스템 구축	25	200	5,000	30	100	3,000	8,000

〈그림 4-23〉 자녀의 안녕 및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점

4) 지원정책 평가

○ [상담제도 인지여부 및 경로] 전체 186명의 응답자 중 법원의 상담권고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1%로 나타났으며, 알게 된 경로는 법원직원(54.1%), 주변소개(16.3%), TV·라디오(14.3%), 법원영상(12.2%) 순이었음. 성별로는 인지여부는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인지경로는 법원직원과 주변소개를 통해 주로 인지하는 반면, 남성은 법원직원과 TV·라디오를 통한 정보습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녀양육안내교육 인지여부 및 경로] 전체 185명의 응답자 중 자녀양육안내교육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4%로 나타났으며, 알게 된 경로는 법원직원(61.5%), 주변소개(15.6%), TV·라디오(10.1%) 순이었음. 성별로는 인지여부 역시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났고, 인지경로는 법원직원과 주변소개를 통해 주로 인지하는 반면, 남성은 법원직원과 법원책자를 통한 정보습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7〉 협의이혼 신청자에 대한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 인지여부 및 경로

		인지여부		인지경로					
		알고있음	모름	법원직원	판사권고	주변소개	법원책자	법원영상	TV·라디오
상담제도	전체	59.1	40.9	54.1	1.0	16.3	2.0	12.2	14.3
	여성	61.9	38.1	52.4	1.6	19.0	0.0	12.7	14.3
	남성	54.8	45.2	57.1	0.0	11.4	5.7	11.4	14.3
		X^2(df) = .939(1)		X^2(df) = 5.080(5)					
자녀양육안내교육	전체	71.4	28.6	61.5	0.9	15.6	4.6	7.3	10.1
	여성	75.0	25.0	65.8	1.4	16.4	0.0	6.8	9.6
	남성	65.8	34.2	52.8	0.0	13.9	13.9	8.3	11.1
		X^2(df) = 1.849(1)		X^2(df) = 11.521(5)*					

*p<.05, **p<.01, ***p<.001

○ [법원 상담위원 상담 경험] 전체 177명의 응답자 중 52.5%(93명)가 법원의 상담위원에게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음. 이용한 상담기관[1]으로는 법원상담실(67.5%), 건가센터(18.2%)의 순으로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법원상담실이 가장 많았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유·무료상담기관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상담횟수[2]를 보면 1번이 78.1%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의 상담횟수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음. 상담만족도[3]의 경우, 전체 평균 2.86점(4점기준)이었으며, 남성(3.10점)의 만족도가 여성(2.74점)보다 높게 나타남

- 한편, 상담을 받지 않은 52.5%의 응답자의 이유를 살펴보면, '상담정보 부족'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생활이 알려질까봐, 도움 안 될 것 같아' 라는 응답이 각 15.8%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은 상담정보 부족(48.1%), 여성의 경우 사생활 알려질까봐(20.4%)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8〉 법원 상담위원 상담 경험

상담경험	〈있음〉 전체(47.5%) 여성(47.7%) 남성(47.0%)	1) 이용한 상담기관(n=77)					
			법원상담실	건강가정지원센터	무료상담기관	유료상담기관	기타
		전체	67.5	18.2	5.2	5.2	3.9
		여성	68.1	14.9	6.4	6.4	4.3
		남성	66.7	23.3	3.3	3.3	3.3
		2) 상담횟수(n=64)					
			1번	2번	3번	4번	
		전체	78.1	14.1	0.0	7.8	
		여성	75.6	14.6	0.0	9.8	
		남성	82.6	13.0	0.0	4.3	
		3) 상담만족도(n=63)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전체	6.3	19.0	57.1	17.5	2.86
		여성	9.5	23.8	50.0	16.7	2.74
		남성	0.0	9.5	71.4	19.0	3.10
	〈없음〉 전체(52.5%) 여성(52.3%) 남성(53.0%)	4)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n=76)					
			상담정보 부족	시간 없어서	도움 안될 것 같음	사생활 알려질까봐	기타
		전체	40.8	13.2	15.8	15.8	14.5
		여성	36.7	12.2	14.3	20.4	16.3
		남성	48.1	14.8	18.5	7.4	11.1

○ [자녀양육안내교육 만족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녀양육안내교육에 참석한 설문대상자(109명)의 교육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3.05점(4점기준)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 3.04점, 남성 3.05점으로 차이가 없었음. 혼인지속기간별로는 15~19년(3.16점), 4년이하(3.12점), 5~9년(3.08점), 20년이상(3.00점), 10~14년(2.89점) 순으로 나타남

〈표 4-29〉 자녀양육안내교육 만족도

		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평균 (4점만점)
전체		100.0(109)	2.8	7.3	72.5	17.4	3.05
성별	여성	100.0(72)	1.4	6.9	77.8	13.9	3.04
	남성	100.0(37)	5.4	8.1	62.2	24.3	3.05
		X^2(df) = 3.827(3) / t = -.10					
혼인지속기간별	4년이하	100.0(17)	0.0	5.9	76.5	17.6	3.12
	5~9년	100.0(24)	0.0	4.2	83.3	12.5	3.08
	10~14년	100.0(36)	8.3	11.1	63.9	16.7	2.89
	15~19년	100.0(19)	0.0	0.0	84.2	15.8	3.16
	20년이상	100.0(9)	0.0	22.2	55.6	22.2	3.00
		X^2(df) = 12.651(12) / F = .87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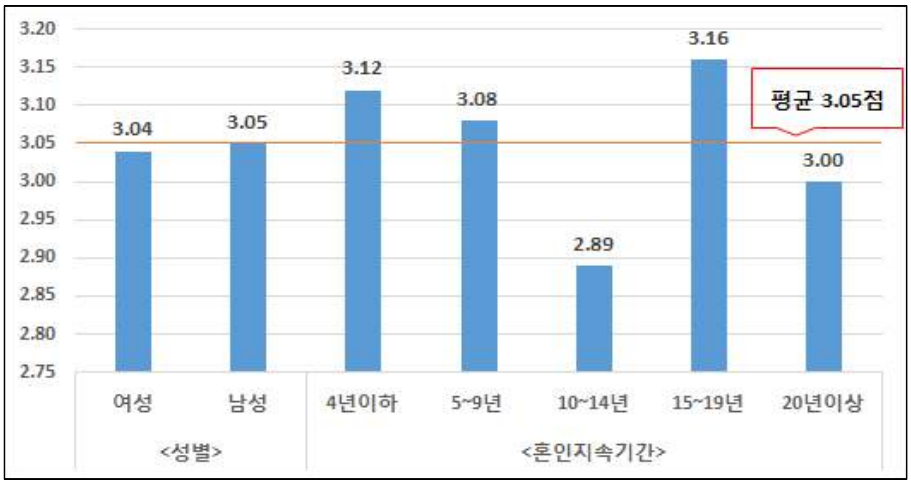

〈그림 4-24〉 자녀양육안내교육 만족도

○ [상담 및 교육의 도움정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지방법원의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의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3.06점)”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의 심리·정서 측면을 재고하는데 도움(3.03점)”이 되었다 순으로 높게 나타남. 도움정도에 있어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으나, 성별로는 여성에게서 좀 더 높았고, 혼인지속기간별로는 다소 상이한 분포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4년이하 부부에게 도움된 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4-30〉 법원의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 내용의 도움정도(4점만점)

구분	전체	성별			혼인지속기간별					
		여성	남성	t	4년 이하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F
결혼문제에 대한 숙고와 감정정리에 도움됨	2.77	2.75	2.79	-.37	2.74	2.70	2.77	2.89	2.75	.30
이혼 후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숙고에 도움됨	2.91	2.93	2.86	.61	3.17	2.77	2.96	2.93	2.70	1.78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됨	3.06	3.10	3.00	1.06	3.22	3.10	3.09	3.04	2.80	1.49
자녀의 심리·정서 측면을 재고하는데 도움됨	3.03	3.09	2.93	1.67	3.13	3.10	3.06	3.00	2.75	1.45
이혼을 보다 신중히 숙고하는데 도움됨	2.81	2.78	2.86	-.69	2.96	2.60	2.96	2.71	2.65	1.7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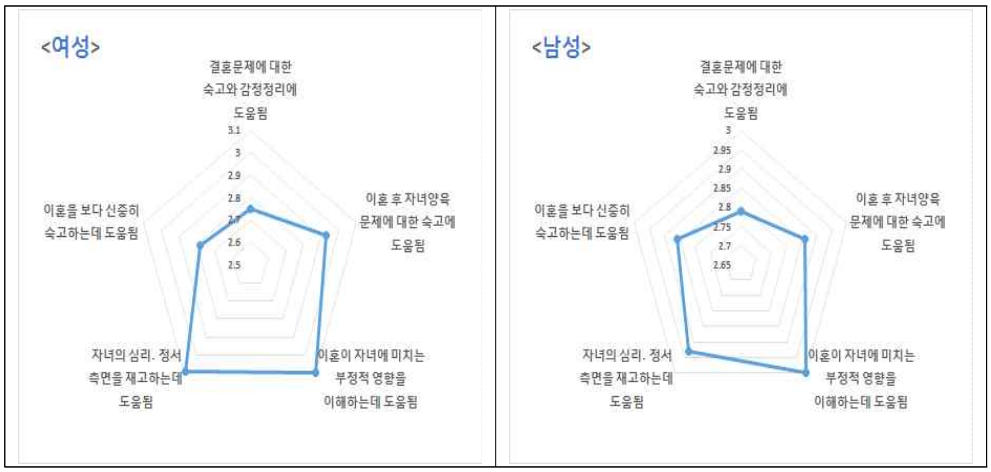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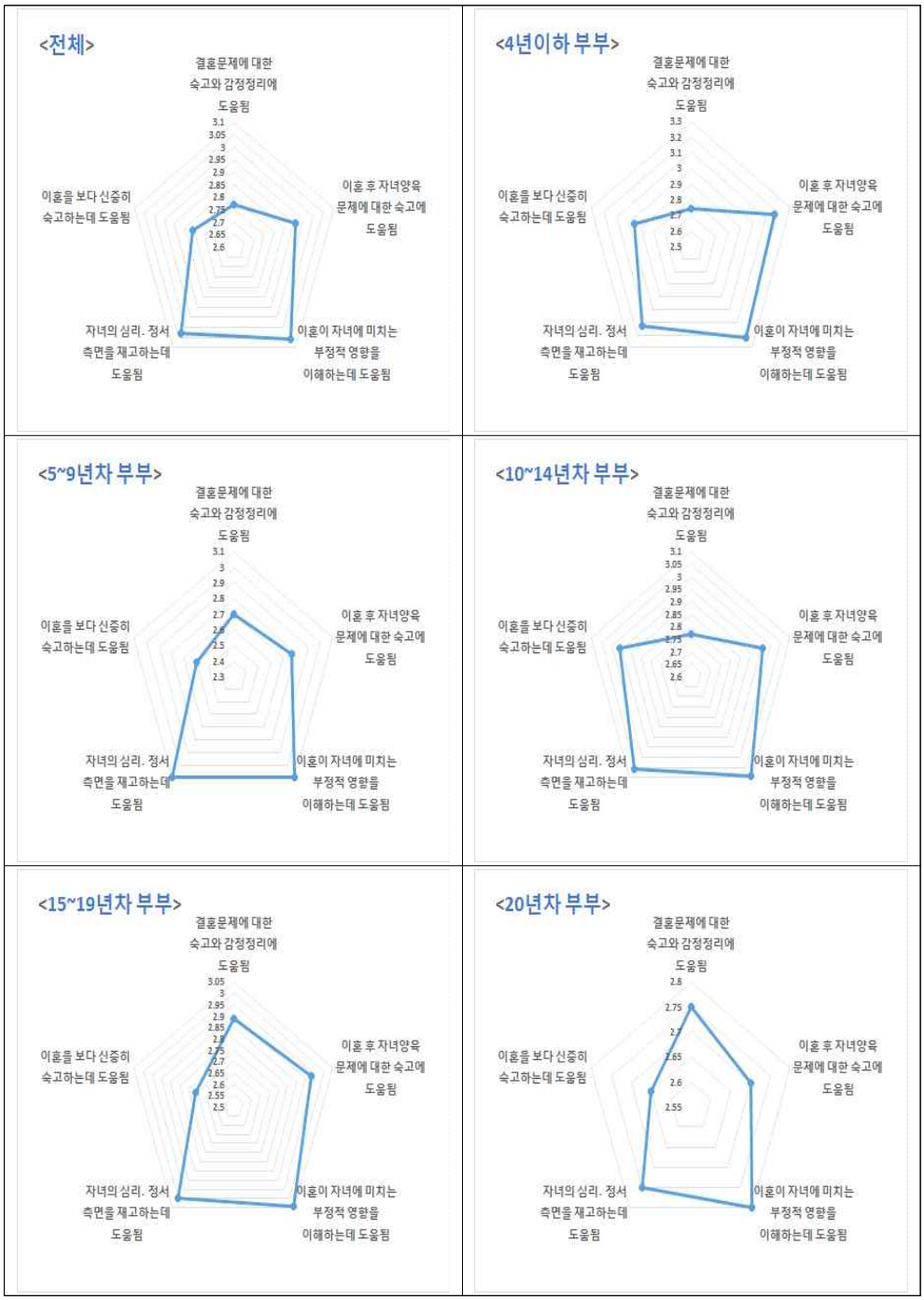

〈그림 4-25〉 법원의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 내용의 도움정도

제 2절 이혼위기가족 심층면접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개별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표준화된 설문조사로 드러나지 않은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심층적인 경험과 생활실태 및 이혼사유별·자녀연령대별 각기 상이한 상황에 따른 다차원적인 어려움과 필요 지원정책 욕구 등을 다각적인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2) 심층면접 참여대상자 및 조사방법

○ 참여대상자는 법원과 연계하여 00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기 위해 참석한 협의이혼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의 목적과 안내를 공지 한 뒤 이에 동의한 사람을 중심으로 실시함

○ 면접은 주로 참여대상자가 선택한 주거지 및 직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 참여자의 집 및 본 연구원 등에서 이루어졌음. 면접조사 실시 이전에 참여대상자의 익명성과 면접 내용에 대한 완전 비밀보장을 언급하였고,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분석을 위해 전사함. 평균 면접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장 1시간 이상이 소요됨

○ 면접조사 기간은 2018년 8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한달 동안 총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3) 심층면접 조사내용

○ 이혼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협의이혼 신청자의 이혼 전반의 실태 및 어려운 점과 필요한 지원서비스, 현 지원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및 개선안,

필요 정책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반구조화 형식으로 구성하여 실시함

○ 심층면접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보면, 첫째, 협의이혼 신청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배우자 연령), 혼인 및 별거기간, 소득수준, 맞벌이유무, 자녀수와 연령 등을 살펴보았음

○ 둘째, 미성년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관련 전반적인 경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혼 전·법적 이혼진행과정 및 이혼 이후의 생활로 구분하여 살펴봄

- 먼저, 이혼 이전 결혼생활 시 가장 힘들었던 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도움 등을 살펴봄

- 다음으로 법적 협의이혼 진행과정 단계 내용으로 현재 이혼을 결정하게 된 주된 사유와 이혼결심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 이혼 결정 시 주로 의논한 대상과 부모양육안내 및 상담제도와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법적 이혼 절차상의 문제점, 법적 협의이혼 진행과정 상 당면한 문제 등을 살펴봄

- 마지막으로 향후 이혼 후 계획 및 가장 걱정되는 것과 당면한 어려움 등을 미성년 자녀를 함께 고려하여 파악하고자 함

○ 셋째, 현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한 경험 및 도움정도, 문제점 및 개선점, 그리고 이혼 전과 협의 이혼 절차과정 중 및 향후 이혼 이후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 등을 파악하고자 함

4) 분석방법

○ 먼저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녹음내용을 여러 번 반복 들으면서 전사 한 뒤, 전사된 녹취록과 면접조사 시 필사한 연구노트 자료를 반복 읽으면서 의미있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함

〈표 4-31〉 심층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영역	질문 내용
일반적 현황	◦ 연령(배우자 연령), 결혼기간, 소득수준, 직업, 학력, 자녀수와 연령, 별거기간 등
이혼위기가족의 경험 실태	◦ (이혼 전) 결혼한 이유, 결혼생활 시 가장 힘들었던 점,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한 노력,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도움 등 ◦ (법적 이혼 신청) 이혼을 결심한 주된 사유, 이혼 결심과정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점, 이혼결정시 주로 의논한 대상자, 이혼진행과정 상 당면 문제, 필요한 도움 및 정보, 이혼 후 자녀양육 담당자, 부모양육안내 및 상담제도,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의견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 ◦ (향후 이혼 후) 이혼 이후의 계획, 가장 걱정되는 것과 어려운 점, 사회적 지지체계 등
정책욕구	◦ 현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만족도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이혼 후, 법적 협의이혼 절차 과정, 향후 이혼 후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나. 결과분석

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전북지역 지방법원(지원)에 미성년자녀가 있으면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협의이혼 신청자 총 11명(남성 5명, 여성 6명)이 심층개별면접조사에 참여함.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 11명 중 5명이 과거에 이미 협의이혼을 신청 했던 경험이 있고, 그 중 한 명은 4번이나 신청을 했다 취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

○ 심층면접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41.2세이며, 여성 40.1세였고, 혼인기간은 짧게는 6년, 길게는 24년으로 평균 13.9년이란 혼인기간이 나타남. 소득수준은 대체적으로 중하 및 하 이하로 나타남(중상 1명, 중 1명, 중하 3명, 하 5명). 협의이혼에 대한 처음 요구 제시로 부부 중 부인의 경우 7건, 남편의 경우 3건, 부부 함께 1건으로 나타나 부인의 협의이혼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4-32〉 개별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의 일반적 특성

No		연령	이혼 요구	직업	학력	이혼 후 자녀양육	소득 수준	혼인 기간	별거	이혼사유	자녀
1 ◎	남편	52		무 직	고졸		하	24년	3개월 (여관생활)	도박중독, 채무, 거짓말, 욱하는 감정	2명 (24세/17세)
	부인	49	○	판매직	고졸	○					
2	남편	50		건설회사	대졸		중상	22년	없음 (주말부부)	사랑식음, 경제적 가치관차이	2명 (22세/18세)
	부인	47	○	자영업	대졸	○					
3	남편	39		사업 / 무직	고졸		하	17년	2년 (숙소생활)	경제적 문제 불분명한 미래	3명 (15세/12세/3세)
	부인	38	○	옷가게/ 암투병	고졸	처가					
4	남편	28	○	회사원	대졸	1명(7세)	중하	6년	1개월	혼전임신(22세), 원치않은 결혼, 성격차이	2명 (7세/5세)
	부인	28	○	보험회사	대졸	1명(5세)					
5 ◎	남편	38		회사원	고졸		중하	12년	5개월 (가출)	게임중독 경제적 문제	3명 (12세/9세//7세)
	부인	38	○	자영업	고졸	○					
6 ◎	남편	36	○	모름	고졸		하	8년	2년6개월 (연락두절)	혼전임신, 도박, 폭력 장기간 별거	1명 (8세)
	부인	31		무직	고졸	○					
7	남편	41		식당운영	대졸		중하	13년	없음	성격 및 양육방식차이, 강한 가부장적태도	3명 (12세/10세/8세)
	부인	41	○	(보육교사) 식당보조	전문대졸	○					
8 ◎	남편	40		일용 기술직	전문대졸		중	19년	교도소 입소 중	성격 및 양육방식차이, 남편의 보수적인 태도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3명 (19세/16세/14세)
	부인	46	○	식당써빙	전문대졸	○					
9 ◎	남편	38		직장인	대졸		중하	10년	3개월	성격/양육방식 차이, 대화단절	2명 (10세/8세)
	부인	34	○	직장인	대졸	○					
10	남편 (초혼)	42	○	무직	고졸		하	9년	1년 (가출)	전 자녀와 불화 경제적 무능함 성격차이, 폭력	2명 (20세/8세)
	부인 (재혼)	44		알바	고졸	○					
11	남편	47	○	무직	대졸		하	13년	1년 이상 (가출)	경제적 무능 도박, 술, 외도 사업 빚	1명 12세
	부인	49		보육교사	고졸	○					

○ 심층면접 참여대상자의 평균 자녀수는 한 가구당 1.90명으로, 협의이혼 신청자 11명의 자녀 총 24명이 부모의 이혼과정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자녀가 셋인 신청자 4명, 자녀가 둘인 신청자 5명, 자녀가 하나인 신청자 2명). 참여대상자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3세로 3세부터 24세까지 있었으나 대부분이 초등학생으로 나타남. 11명 중 10명이 이혼 이후 자녀 양육을 부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명만이 자녀 2명을 각각 1명씩 양육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태였음

○ 참여대상자 11명 중 단 2명만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2명은 별거 중 이었으며, 5명은 남편의 가출과 함께 연락두절, 교도소 입소 중이었음. 나머지 2명은 협의이혼 신청 전부터 집을 나와 여관이나 모텔 혹은 직장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보통 1년 이상의 배우자 가출은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참여대상자 중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은 남편이 대부분 무직이거나 고정된 일자리 없이 부정기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부인들이 생활비를 힘들게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면,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과 채무, 남편의 강한 가부장적 태도와 원치 않는 결혼(혼전임신) 등의 순서로 나타남

2) 주요 결과분석

○ 전북지역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위기관련 전반적인 경험 실태를 이혼 전, 법적 이혼 진행과정 및 이혼 이후의 생활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함. 또한 이혼의 주된 원인 분석과 현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 및 어려움, 현 지원정책의 개선점 및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등을 정리 분석함

〈표 4-33〉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심층면접조사의 주요결과

구분		범주
이혼 위기 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이혼사유 및 사유별 특성	배우자와의 성격 · 가치관 의 차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무직, 불안정한 미래)
		배우자의 게임 · 도박 중독과 이에 따른 가족위기
		전통적 가치관과 성평등적 가치관의 불일치
		잘못된 결혼(짧은 연애기간, 어린나이, 혼전임신 등)
	부부갈등 실태 및 이혼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점	부부갈등 문제를 이혼으로 해결하고자 함
		동일내용의 부부문제 미해결로 반복되는 부부갈등과 협의이혼 재차 신청
		당사자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심리·정서적 걱정 및 양육관련 고민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요구로 극한 양가감정 및 준비되지 않은 이혼 진행
	법 적 이혼절차 상 문제점	전문 상담기관과 법률적 정보 안내 제공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부족
		부모양육안내(동영상 + 교육) 시 사례중심의 자녀연령대별 깊은 내용 제공 필요
		협의이혼 재차 · 삼차 신청자에 한해 차별화된 부모양육안내 및 숙려기간 적용
정책적 욕구	이혼 전 단계	결혼생활에 대한 사전학습 교육 필요
		부부갈등이 심화되기 전 공권력 있는 기관에서 부부상담 및 교육 지원 필요
	법적 이혼 진행 단계	자녀 연령대별 사례중심의 부모양육안내(동영상) 심화교육 필요
		이혼 진행과정 중 자녀의 심리상태 파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이혼신고서 동사무소에 제출 시 한부모지원사업 외 다양한 혜택 정보제공 요구
	이혼 후 단계	(남성) 별거 및 이혼 후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여성) 법률 및 국가차원에서 비양육자 양육비 지속 수행 의무화 필요
		(여성) 통합적인 일자리지원 패키지 체계(교육과정+수강료+생활비+자녀돌봄) 마련
		자녀 학습 및 심리지원을 위한 멘토서비스 필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정보 안내

(1) 이혼위기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이혼위기가족, 즉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자 총 11명의 전반적인 이혼관련 경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결과를 이혼사유 및 사유별 특성, 부부갈등의 심화요인, 이혼진행 과정 시 나타나는 힘든 점, 법적 이혼절차 상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① 이혼사유 및 사유별 특성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이혼위기가족의 주된 이혼사유 및 사유별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주된 이혼사유는 배우자와의 성격(가치관 및 양육방식)차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무직, 불규칙한 직장생활, 생활비의 부재 등), 남편의 게임과 도박 중독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부부불화가 심하였음

○ 또한, 남편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에 대한 부인의 양성평등적 가치관의 차이로 부부갈등이 불거져 이혼까지 오게 된 사례들과 어린나이의 결혼·짧은 연애 기간·혼전임신 등으로 처음부터 결혼자체가 잘못된 사례들이 있었음

❒ 배우자와의 성격·가치관의 차이

○ 심층면접참여자 11명 중 6명 이상이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신청함. 최근 이혼사유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6호에 해당되는 기타사유가 가장 높고, 기타사유의 대부분은 성격차이로 나타남

○ 성격차이의 배경에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강하고 결혼생활 및 자녀양육 등에 대해 과거의 결혼생활 같이 배우자 누구든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서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서 자꾸 싸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돈 쓰는 것에 있어서도 저에게는 문제로밖에 안보여요... 그러니 제가 주는 월급을 어떻게 관리 했기에 이제와서는 빚만 있다고만 하고... 통장에 돈이 하나 없어요...

서로 노력했다고는 보나 서서히 서로의 마음이 닫히는 것 같아요... 맞지 않은 많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성격차이 인 것 같아요..

❒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무직, 불안정한 미래)

○ 최근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도 민법의 제6호에 해당되어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추세임

○ 구체적으로 직장일이 맞지 않아 남편의 잦은 전직과 지속되는 무직생활, 거듭되는 사업운영활동과 실패, 이에 따른 증가하는 부채, 부인의 경제활동을 믿고 생활비조차 결혼 초부터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으로 무능력에 의한 이혼이 발생하고 있음. 경제적 무능에 의한 이혼위기가족은 대부분 별거하고 있거나 남편의 장기간 가출이 있고, 거짓말이 난무하여 부부간의 신뢰감도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남

남편은 직장 들어가면 몇 개월 못 버티고 직장을 그만둬요 그럼 집에서 빈둥 되며 놀고, 집에서 놀기 때문에 또 싸움이 생기고, 성격자체도 안 맞고, 생활비도 안주고, 준다 해도 20만원 정도 주고 말아요....

결혼 한지 첫 달부터 생활비도 안주던 사람이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이사가 친정엄마한테 아이 맡기고 일나가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꾸역꾸역 참고 살았는데.. 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사업한다고 내 이름으로 빚도 점점 늘고, 대출 돌려막기도 힘들고, 남편의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으니...

❒ 배우자의 게임·도박 중독과 이에 따른 부채

○ 최근 인터넷 게임 중독과 불법도박 등으로 인해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 즉 게임 및 도박에 심각하게 몰두하여 부부갈등 초래,

가정의 경제적 파탄 위협 등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가족들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되어 협의이혼의 주요 이혼 사유로 등장하고 있음

○ 우선 (스마트폰 및 인터넷)게임을 단지 스트레스 해소나 취미로 하던 것에서 나아가 본인 자신의 일상에서 가장 주요한 업무로 변질되어 게임머니를 충전시키기 위해 카드론 및 대출까지 받아 가정의 경제적 위기· 이혼 위기에 도달한 경우와 지속적인 사업실패와 한 집안의 가장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한탕주의의 성격이 강한 도박(인터넷 불법 도박, 도박장)을 하다 돈도 잃고 가정에 아픔과 상처만을 남겨놓은 상황이 있었음

남편이 게임에만 신경쓰고 생활비도 안주고, 가정에 소홀해요.
게임에 쏟아 붇는 돈이 최근 2-3년 사이에 엄청난 것 같아요.
내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 이젠 거짓말만 하고 이런 생활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터진 것 같아요

남들처럼 제가 아빠구실 가장 구실을 못하니.. 한꺼번에 많이 벌기 위해 도박장을 돌아다녔죠... 부인이 도박장 그만 두고 집에서 놀기만 하라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부인 몰래 도박장 갔다 빚도 엄청 지고... 이젠 제가 더 이상 미안해서 살자고 못하겠어요...

❒ 가부장제적 가치관과 성평등적 가치관의 불일치

○ 부인이 남편의 강한 가부장제적 가치관으로 결혼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성불평등적인 상황에 대해 저항하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결혼생활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부부갈등 심화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임

○ 특히, 맞벌이하는 가족의 경우, 가사분담, 자녀양육,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있어 남편의 보수적인 태도와 전통적인 역할이 바뀌지 않아 부부간의 성역할 격차가 커지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일수록 부인을 무시, 학대, 억압 등으로 갈등

을 누르려 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이 진보적일수록 새로운 자기의 삶을 찾고자 이혼을 단행함. 부인의 이혼요구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갖고 부인과의 관계 개선 노력보다 직계가족의 화목과 효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집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진짜로 이혼의 마음이 있는건지.. 제가 큰 아들이라 책임감도 강하고, 힘들어도 내색도 없고, 보수적이여서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 살긴 하지만.. 그것이 힘들다고 이혼해요? 스트레스가 많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 말투도 싫다 하니...사실 제 말투가 좀 거칠긴 하지만

남편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부부간의 싸움은 물론 자녀들도 아빠를 싫어해요.. 내가 볼 때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아이들도 아빠가 이해해 주니 못한다 싫어하고.. 제가 봐도 너무 일관적이고 외골수인데다 이기적이고 보수적인데다... 아무튼 시대적 흐름을 쫓지 못하고 혼자서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잘못된 결혼(짧은 연애기간, 어린나이, 혼전임신 등)

○ 20대 초반의 어린나이에 몇 개월 되지 않는 짧은 연애 끝에 혹은 혼전임신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맞지 않다는 생각 하에 이혼하는 경우임

○ 결혼 전 배우자 탐색을 일정기간을 두고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하는 결혼보다 단지 3회 혹은 한 달 반 만에 결혼하는 경우 서로를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의 열정적인 사랑 감정만을 가지고 혹은 적지 않은 결혼연령만 생각해서 결혼하는 경우 결혼에 대한 후회와 서로에 대한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는 상황

○ 또한, 개방적인 서구문화 유입 등의 이유로 결혼 전에 이성과의 성관계를 경험하는 남성과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임에 대한 교육 및 정보 부족, 그리고 미 실천으로 혼전임신이 증가하고 있었음

○ 사귀는 상대 여성의 임신으로 주위 분위기에 휩싸여 서둘러 결혼한 경우 이혼하는 경우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혼전임신으로 인한 결혼은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족생활주기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 결혼생활·부부·부모 역할 적응 등의 역부족으로 힘들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어 이혼위기까지 이어짐

혼전임신으로 결혼생활이 갑자기 시작되긴 했으나,, 그래도 서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토 잘못된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맞지 않고... 맞지 않은 것 중 성격이 가장 안 맞는 것 같구요... 서서히 서로 마음을 닫게 되었고 오래 전부터 이혼을 준비한 것 같아요...
어린나이에 주위의 어른들을 의견 맞춰 결혼 한 것이 잘못인 것 같아요.
그냥 애만 낳고 혼자 살 것을 후회해요...

저희는 성격차이, 가치관의 차이, 삶의 방식과 자녀양육·육아 차이 등...투자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합의도 안되구요.. 부부관계도 없는 상태이구요.. 문제는 연애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너무 짧았고, 저와 아내도 나이가 27세, 23세로 너무 어려서 결혼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② 부부갈등 실태 및 이혼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점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이혼위기가족의 전반적인 이혼관련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의 실태 및 이혼진행과정 상에서 상대적으로 힘들어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먼저, 이혼위기가족, 즉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의 부부실태는 두 가지의 경향을 보였음. 첫째, 부부갈등에 대한 문제를 부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이혼으로 쉽게 끝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으며, 둘째, 부부간의 동일한 내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이혼 신청도 재차하고 있었음

○ 다음으로 이혼위기가족이 이혼을 결정하기 전까지 혹은 현재 법적 이혼 절찰 진행 과정상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자녀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걱정과 이혼 이후의 양육관련 염려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상대 배우자의 일반적인 이혼요구의 경우 극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이혼을 준비해야한

다는 점을 힘들어 했음

❒ 부부갈등 문제를 이혼으로 해결하고자 함

○ 결혼생활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며, 부부싸움은 칼로 물제기라고는 하지만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절차를 밟는 부부가 증가 추세임

○ 즉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혼을 특별한 상황에 특정인에게만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의 문제나 불행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고려하는 추세임. 이에 최근 부부들은 부부갈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항상 이혼으로 귀결 짓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부부간의 갈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보다는 이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짐

부부갈등 시 외부에 도움 요청한 적이 전혀 없어요... 친한 지인들을 통해 그냥 이야기만 했을 뿐....

본인이 잘못해 놓고 내가 자꾸 바가지 긁고 싸움거니 이혼하자고 하네요..바람피운 여자랑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해요... 함께 이야기 해보자고 해도 전화도 잘 안 받고..

❒ 동일내용의 부부문제 미해결로 반복되는 부부갈등과 협의이혼 재차 신청

○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부부갈등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이들이 지니고 있는 부부갈등의 상당수는 새롭게 발생하는 갈등문제가 아닌 결혼생활 중에 나타나는 동일한 내용의 문제가 미해결된 채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임

○ 부부간에 싸우는 갈등의 주요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 반복되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협의이혼의 절차를 밟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나, 법원에서의 부모양육안내 및 상담을 받고 자녀에 대한 애정, 양육에 대한 고민, 홀로서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다시 부부관계를 다지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내용의 갈등 문제로 이혼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짐을 볼 수 있었음

지금과 같은 통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로 싸운 적이 10년 전에도 유사하게 있었어요... 그때도 장모님 오시고 주위사람들 다 알정도로 크게 싸웠었는데... 해결되지 않고 유야무야 흐르다 또 다시 붉어졌죠... 이젠 제가 가만 안 있으려구요.. 그랬더니 앞뒤 재보지도 않고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네요...

4년 전에도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때도 지금과 같이 도박도 하고 살림살이 깨 부스기도 하다가 남편이 먼저 무릎꿇고 빌어서 이혼을 못했는데... 지금은 별거한지가 1년 6개월이 지나가니.. 서류정리만이라도 깨끗하게 하려고요

❒ 당사자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심리·정서적 걱정 및 양육관련 고민

○ 심층면접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에 대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혼 관련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자녀관련 이야기 시에는 눈물을 보이거나 울컥울컥하는 모습들도 자주 보임

○ 이처럼 이혼 진행 과정에서 부부는 자녀에 대한 걱정을 각자가 과도하게 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 면접교섭관련 내용,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형성 등 이혼과 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거나 혹은 부부간 임의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음

이혼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걱정되죠.. 잘못되지는 않을까.. 성적 떨어지거나 나쁜친구를 사귀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아직 못했어요.. 면접교섭도 애기아빠하고만 이야기 하고요

애들 앞에서 너무 많이 싸워서..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찍히 궁금하긴 해요.. 말은 안하지만..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심리상담이나 심리검사를 받도록 하면 좋겠어요..

❒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요구로 극한 양가감정 및 준비되지 않은 이혼 진행

○ 부부의 협의에 의한 협의이혼이지만,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요구로 협의이혼이 강제되는 경우 나머지 한쪽의 배우자는 극한 양가적 감정을 갖고 이에 대해 힘들어하고 준지되지 못한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는 아내가 이제는 도저히 못살겠다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내가 왜 이혼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해조차 못하겠다는 경우로 이혼이란 현실에 대해 아내에 대해 본인 자신에 대해 과거 결혼생활과 현 자녀에 대해 극한 양가적 감정에 더불어 본인도 이에 질 수 없어 홧김에 이혼을 준비하지 못한 체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남편(외도, 도박, 가출, 경제적 무능력 등)이 오히려 자녀와 아내를 외면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이혼을 요구할 경우 아내는 극한 양가적 감정에 힘들어하고 감정에 매몰되어 이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남

○ 마지막으로 이혼 자체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온 결혼관계를 해소해야 된다는 점, 부모님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이혼에 대한 양가감정 즉, 불안, 긴장, 우울, 분노, 상실, 시원 등의 다양한 감정들이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집사람이 정말 이혼이란 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화도 나고 부모님 뵐 면목도 없고,, 아니 자식 키우는 어미가 이혼한다고 그러니... 이해가 안 되요.. 자식 놔두고 이혼한다는 것이 말이죠..

> 가출해서 제가 찾아다녔는데.. 별것을 다 했더라구요 여자에 도박에 술에 빚에.. 그런데 지가 먼저 이혼하자고 요구해요.. 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받아 주려하는데 지금 여자를 홀로 놔 둘 수가 없다나... 그래서 매일같이 밤마다 술 먹고, 울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 이러다 살인이 나겠다 싶기도 하구요... 자꾸 눈문이 나오고 화가 치밀어요... 배신당한 것 같고.. 남편의 자리가 그립기도 하고.. 애가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 상담도 받고 싶고

③ 법적 이혼절차 상 문제점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경험한 법적 이혼진행 절차 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과, 먼저,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안내 및 법률적 정보 제공이 욕구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냄

○ 다음으로 부모양육안내 교육이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동영상 자녀관련 부분에서 협의이혼 당사자 자녀의 연령대 부분을 보다 깊게 심화하여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함

○ 마지막으로 법적 협의이혼 신청을 재차, 삼차이상 신청한 신청자들에 한해 부모양육안내 및 숙려기간의 적용을 차별화하여 대응해주기를 제시함

❒ 전문상담기관과 법률적 정보안내 제공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부족

○ 부부문제에 대한 혹은 이혼위기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었어도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예; 기관 안내 및 연락처, 주소 등)를 몰라서 부부갈등 시, 이혼결정 전 전문상담을 받지 못했음을 나타냄

○ 또한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한 기간 동안만이라도 부부갈등에 대한 이혼위기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었으나 법원 및 기타기관(예;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정보 안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부족했음을 지적함

○ 그리고 부모양육안내의 동영상교육 시 이혼관련 법률적 정보 제공도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구성하여 다루어주지 않음에 대해 아쉬워했고, 이런 법률적 정보 및 법률적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공지도 미약했음에 대해 지적함

○ 이에 전문가의 상담 및 법률 정보 제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상담기관과 법률관련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및 전문상담에 대한 지리적·심리적 접근 용이성 확보가 필요하겠음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았는데... 동영사 말고 법률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혼진행 절차를 보다 알려주시던지,, 면접교섭권이 뭔지, 양육권과 친권이 뭔지 등등을 요...그리고 숙려기간 3개월 동안 뭘해 야 할지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문상담기관을 찾아보려 해도 찾기가 어려워요... 전문상담기관을 찾아도 이 상담기관이 잘하는 기관인지 알 도리도 없구요.. 갈등상황에서 상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란 생가도 들기지만 상담이란 안내나 홍보가 덜 되었단 생각도 들구요.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혹은 TV라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 부모양육안내(동영상+교육) 시 사례중심의 자녀연령대별 깊은 내용 제공 필요

○ 법원·지원에서 실시하는 부모양육안내는 대부분의 법원 직원의 구두설명과 더불어 비디오 시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지역(전주, 군산)에서는 전문가(부모교육강사 및 전문상담가)가 자녀양육안내에 대한 ppt 교육과 더불어 비디오 시청을 겸하고 있는 상황. 이에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부모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방법 개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부모양육안내교육이 법적이혼절차 상의 한 과정으로 확인서를 받기 위해 형식적이라고 보는 견해와 자녀와 이혼에 대해 숙고할 수 있었다는 시간이었지만, 당사자 자녀의 연령대의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사례중심으로 다루어주기를 요구하기도 함

자녀양육안내 교육이 굉장히 불실해요.. 기본적으로 강사의 적극성도 낮고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동영상 시청 시에도 제 자녀 연령대관련 이야기는 너무 적게 나왔구요... 동영상 내용도 배우가 나와서 만든 극처럼 거리감이 있었구요.

집단교육 장소에서 하니 어느 정도 익명성도 보장되면 좋겠구요.. 제 자녀아이 연령대 중심의 사례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이야기는 저와 너무 많이 이질적이었구요.. 전문 강사님의 이야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 **협의이혼 재차·삼차 신청자에 한해 차별화된 부모양육안내 및 숙려기간 적용**

○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여러 경우로 인해(한 배우자가 부모양육안내를 받지 않거나,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불출석하거나, 동사무소에 이혼을 신청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이 무산되었다가 재차 협의이혼을 신청한 자들이 있음

○ 재차 및 삼차 이상의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은 처음 협의이혼 신청자들과 다르게 부모양육안내 시 동일한 내용의 교육과 동영상을 시청했다는 경우가 많고, 3개월이란 숙려기간에 대한 불만과 의무상담제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더불어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강했음. 이에 재차·삼차 협의이혼을 신청한 자에 한해 차별화된 부모양육안내 및 숙려기간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임

> 사실 제가 협의이혼 신청을 이번에 5번째 하는 건데요. 자녀양육안내 동영상도 동일한 것을 봤구요. 숙려기간도 솔찍히 너무 길어요. .남편이 또 참여를 안 한다거나 맘이 바뀔까 봐 조마조마해요. 이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없었으며 좋겠어요.
>
> 이번 협의이혼 신청이 두 번째인데요.. 이젠 이혼하려구요.. 깨끗하게요. 이젠 미련 없어요.. 감정도 다 정리 되었어요.

(2) 정책적 욕구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정책적 지원 욕구를 이혼 전 단계, 법적 이혼 진행 단계 및 이혼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봄

① 이혼 전 단계

○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이혼 전 단계, 즉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러 오기 전에까지 부부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첫째, 결혼 전에 결혼에 대한 사전학습을

미리 해보았다면 결혼을 보다 신중히 생각하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 했을 것임을 제시함

○ 둘째, 결혼생활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부부갈등에 대해 갈등 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과 교육이 공공기관 등을 통한 공권력 있는 기관에서 지원 해주기를 요구함

❒ 결혼생활에 대한 사전학습 교육 필요

○ 부부간의 이해 증진과 만족스런 결혼생활 영위를 위해 결혼 전 결혼 및 가족생활과 관련된 영역별 구체적인 정보와 심사숙한 고민과 체험을 동시에 해볼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요구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결혼 전 결혼생활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이고, 교육 및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또한 모색되어져야 할 것임

결혼 전 성숙한 졸은 결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 전에 결혼자체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요해요.. 부부역할에 대하 학습.. 남편역할과 부인역할에 대한 학습, 경제생활에 대한 학습, 등을 미리 해보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부갈등이 심화되기 전, 공권력 있는 기관에서 부부상담 및 교육 지원 필요

○ 공권력이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이 됨

○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혼위기상담 및 교육 등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상자가 관심을 갖고 신청하지 않는 한 이혼위기 상담과 교육을 받기까지에는 그들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그

러나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갈등이 야기되었을 경우, 부부갈등이 보다 심화되었을 경우, 더 나아가 이혼위기에 봉책 할 경우 법원에 이혼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공권력을 갖춘 공공기관의 절차 및 안내에 따라 의무적이고 강제성으로 부부 갈등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함

주위의 상담기관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도 잘 안 가져요. 정보가 있어도 잘 안 가지는데... 아예 공권력 있는 기관에서 상담해라 교육해라 하면 받아야만 하니까 받을 것 같아요... 받지 않으면 안될 것 같구요.. 그래 그래 해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이 필요하고, 힘든 극기훈련 프로그램 등에도 의무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② 법적 이혼 진행 단계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법적으로 협의이혼 절차에 의해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보다 지원받고 싶은 정책적 욕구가 약 4가지 정도로 정리됨

○ 첫째, 부모양육안내 교육 시 자녀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녀연령대별 사례중심의 심화교육을 필요로 하였고, 둘째, 실질적인 이혼 진행과정 중에 나타나는 부부간의 격한 감정과 서로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함

○ 셋째, 이혼위기 갈등 상황 속에서 자녀의 심리상태를 염려하여 자녀의 현 심리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싶다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자녀양육을 맡은 한부모가 되었을 시 이혼서류를 지역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이혼 신고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향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개인 상황별에 맞춰 안내해 주기를 바랬음

❒ 자녀 연령대별 사례중심의 자녀양육안내(동영상) 심화교육 필요

○ 협의이혼 신청자 중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에 관한 안내와 더불어 부모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함

○ 자녀양육안내는 이혼과정에서 미성년자녀가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부부의 갈등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양육권과 면접교섭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해줌

○ 한편,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소중한 자녀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의 집단 교육과 동영상 시청은 상대적으로 형식적이며 피상적여서 교육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자녀연령대별 사례중심의 다양한 교육매체와 방법으로 주입식의 이론교육에서 실습식과 경험중심의 심화교육이 필요함

자녀양육안내교육도 여러 번의 회기로 나누어 교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어 주면 자녀에게 이혼이야기 꺼낼 때도 더 수월할 것 같구요.

자녀양육안내와 더불어 부모역할, 부부간 갈등관계도 함께 다루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자녀관계도 살펴봐주고요.. 사춘기 자녀에 대한 것도 말해주면 좋겠어요. 극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이 아닌 실제의 상황으로 짜여지면 좋겠구요.. 와 닫지가 않으니까요.. 전문 강사님의 사례중심의 이야기가 더 와 닿았어요.

❒ 이혼진행과정 중 자녀의 심리상태 파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이혼의 과정을 겪으며 부부간의 불화로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미성년자녀의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나 않을까란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이에 협의이혼 신청 부부에 대한 의무상담 시 자녀의 심리 및 정서적 측면을 살펴보기를 바랬음. 부부가 이혼함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을 해야 한다면 언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결정 등을 위해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됨

이혼하는 부부의 심리상담 지원 뿐 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에서 상담하면서 필요한 것은 자녀아이의 심리상태 파악도 상담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자녀와 세트로 함께 상담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 이혼신고서 동사무소에 제출 시 한부모지원사업 외 다양한 혜택 정보 제공 요구

○ 협의이혼의 마지막 절차인 지역주민센터에 이혼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이혼서류만 받아 접수하지 말고 한부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 외 한부모 개별 상황별에 맞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들을 고지해 주기를 요구함

○ 막 이혼한 직후로 앞이 막막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센터의 이러한 개별적 통합 지원은 한부모 당사자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임

동사무소에서 긴급생활자금 서비스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어요.

이혼서류 제출 시 동사무소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체를 구체적으로 공지해 주면 일일이 제가 인터넷 뒤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니 동사무소 전담 직원이 확실하게 다양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③ 이혼 후 단계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향후 협의이혼 이후 단계에서 보다 지원받고 싶은 정책적 욕구는 약 5가지 정도로 정리됨

○ 즉, 남성의 경우 별거 및 이혼 직후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지

원을, 여성의 경우 비양육자인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홀로서기를 위한 일자리지원을 수강료와 생활비 및 자녀 돌봄까지 통합적으로 받고 싶어 했으며, 자녀학습과 심리적 지원을 위한 멘토 서비스와 지속적인 체험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정보 안내를 요구함

❐ (남성) 별거 및 이혼 후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심층면접참여자 11명 중 5명이 남성이었고, 이중 3명이 부부갈등의 심화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신고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살고 있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함. 남성 2명은 집 근처 모텔 및 여관에서 나머지 1명의 남성은 직장 내에 있는 작은 숙소(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 이에 이혼위기, 이혼 진행 과정 중 및 이혼 직후에 부부와 자녀가 살고 있던 집을 급히 나와야만 하는 남성들은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필요로 함. 이 3명 남성의 공통점은 무직이었고, 부채가 많아 통장도 압류당한 상태로 경제적으로 악화된 상황이었음

> 협의이혼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과 동시에 제가 집을 나왔어요.. 현재는 모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에게 일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는 주거 시설이 있다면야 좋겠죠..

> 벌써 별거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직장 작은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잠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 지원이 되면,...

❐ (여성) 법률 및 국가차원에서 비양육자 양육비 지속 수행 의무화 필요

○ 이혼 이후 남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음

○ 이에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자녀양육을 담당하게 될 여성은 남편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잘 주지 않을까봐 혹은 남편의 경제적 상황이

눈에 보여 자녀의 양육비를 지속 받을 수 있는 국가차원의 법률 및 시스템 마련을 요구함. 더불어 남편의 양육비 불이행 시 국가차원에서 긴급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정책도 요구함(양육비 불이행 시 강제집행력 강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혼 후 남편이 양육비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안 줄 경우에 대해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체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받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 정기적으로 의무화하여 실행할 수 있는...

국가가 남편에게 양육비를 대신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면 끝까지 ...국가에서라도 약간의 긴급 지원 식으로라도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구요.

❒ (여성) 통합적인 일자리지원 패키지 체계(교육과정+수업료+생활비+자녀돌봄) 마련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향후 이혼한 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민이 자녀에 대한 것 다음으로 컸음

○ 보다 안정되고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를 원했고, 그러한 일자리에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증 취득이 선행되어야 했음. 전문교과과정 이수 및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수강료 및 자녀돌봄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컸음

○ 이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성 한부모를 위한 일자리지원 패키지(전문교육과정+수업료+생활비+자녀돌봄) 사업이 필요한 상황임

일을 구해야 하는데 먼저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수업료도 만만치 않고 수업료가 있다고 해도 생활비는 또 언제 벌며, 이런 교과과정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인데.. 생활비를 1년 동안 없이 애들을 어떻게 돌봐요.. 또 교육받고 생활비 벌기 위해 밤늦게 까지 알바하면 아이들은 밤늦도록 밥도 못 먹고.. 걱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눈물만 나요..

❒ 자녀학습 및 심리지원을 위한 멘토서비스 필요

○ 한부모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경제활동을 하게 되기에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것임. 이에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부모 자녀의 학습과 심리적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대학생 및 재능봉사자들의 멘토서비스를 지원 받고 싶어 함

앞으로 자녀에게 사춘기가 올 텐데.. 남편의 영향에 따른 남자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사춘기 자녀에게 멘토가 지원되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요..

이혼하면서 신경써주지 못할 경우나, 내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혹은 돈 벌기 위해 집안일에 등한시되는 안좋은 점들을 젊고 똑똑한 대학생 들이 심리적 지원 학습적 지원을 하는 멘토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정보 안내

○ 한부모는 경제생활과 가족생활에 바빠 자녀와 함께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이 어려움. 이에 도청·시청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한부모와 그 자녀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문자로 통보해 주기를 바랬음

이호하게 되면 아이들은 엄마랑 평일에 같이 살고 주말에만 저랑 함께 할텐데.. 아이들과 주말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이나 교육문화 프로그램 들을 문자로 알려주면 좋겠어요... 지역축제 라던지 체험프로그램이라 던지요...

이혼하면 돈번다고 자녀들과 많이 못 놀러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주말이라도 자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애들도 불쌍하고..

제 3절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절에서는 이혼위기가족, 즉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를 데리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그 이유는 첫째,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위기와 관련된 객관적인 실태 파악과 더불어 이혼사유별, 자녀연령대별 등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과 각기 상이한 요구 사항들을 다층위적으로 접근하여 다각적인 질적 정보를 얻기 위함임

○ 둘째로는 협의이혼 신청자 중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이혼위기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여러 제도 및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함임

2) 참여대상자

○ 본 연구에서의 현장 전문가란 미성년자녀를 둔 법원 협의이혼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를 일컬음

○ 구체적으로 전주지방법원 및 지원(군산, 남원, 정읍, 익산)과 연계된 상담위원,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법원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00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강사 및 종사자, 전주지방법원 및 지원(군산, 남원, 정읍)에서 각각 협의이혼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등으로 총 16명이 FGI조사에 참여함

3) 조사방법

○ 현장전문가 섭외는 각 기관 담당자 및 실무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공지

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면접조사가 가능하다고 동의한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면접조사 질문에 대한 구성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반구조화 형식으로 질문 문항을 추출하여 동일 직종의 현장전문가 집단별로 실시함. 초점집단면접은 총 5회 실시함. 구체적으로 법원 위촉 상담위원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초점집단면접을 3회 실시하였고, 그 외 부모양육안내 담당실무자 초점집단면접 1회, 법원 협의이혼담당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1회를 실시함

○ 면접시간은 집단 당 약 2시간정도가 소요됨. 면접 장소는 대부분 조사대상자의 직장 사무실이나 상담실 등에서 진행됨

4) 면접 조사내용

○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먼저 연령, 성별, 최종학력(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봄. 다음으로,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본 미혼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의 이혼사유 및 전반적인 이혼관련 실태(이혼 전, 이혼진행과정, 이혼 이후)와 힘들어 하는 점, 각 과정마다의 자녀관련 문제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욕구 등을 파악함

○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지원 사업내용과 사업의 효과성 및 한계점,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선방안, 향후 자녀 복리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정책 등을 살펴봄

5) 분석방법

○ 모든 면접내용은 면접 참여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녹음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녹취한 전사 자료와 면접 시 기입한 노트필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결과를 분석함

나. 결과분석

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전북지역에서 이혼위기가족, 즉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를 대상으로 법원연계 상담 및 법원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전문가 총 16명이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함. 구체적으로 전북지방법원 및 각 지원(군산, 정읍, 남원 등)에서 위촉된 상담위원 11명, 법원 협의이혼 관련 실무자 3명 및 부모양육안내 사업을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담당자 4명이 참여함

○ 전주지방법원 및 각 지원에서 위촉된 상담위원의 평균 근무경력은 7.8년으로 길게는 10년 이상, 짧게는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 상담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57.18세로 11명 중 8명이 50대 중·후반 이였고, 40대, 60대 70대 각각 1명으로 나타남. 11명의 상담위원 중 4명은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며, 나머지 7명은 박사수료자로 나타남. 상담위원들의 전공은 대부분이 아동가족상담 및 부부·가족상담(치료)이였고, 그 중 일부는 법학 및 교육심리(모래놀이치료)를 전공한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상담위원들은 민간상담기관을 운영하면서 강사·객원교수·교수의 직업을 겸하고 있었음. 관련 자격증으로는 한국상담학회에서 주어지는 가족상담사 1급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부여하는 가족치료사 1급 및 임상심리상담사, 모래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부모코칭지도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원에서의 협의이혼 담당 사무관은 3명 모두 법원주사보로 평균 1년 6개월 정도의 근무경력과 평균 40대 초반의 연령대를 지니고 있었음

○ 부모양육안내 사업을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담당자 4명의 평균연령은 50세로 40대 후반 2명, 50대 2명으로 나타남. 부모양육안내 강사는 민간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사 겸 지역대학의 초빙교수직을 겸하고 있었고, 아동가족학, 아동심리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으며, 아동상담사 및 가족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4〉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구분	No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법원상담 근속년수	자격증	직업
법원 상담위원	1	여	60세	박사	아동가족상담	10년	가족상담사 1급 미술치료사 1급	강사 겸 상담소장
	2	여	56세	박사	아동가족상담	10년	모래놀이치료사 1급 가족치료사 1급	강사 겸 상담소장
	3	여	45세	박사수료	심리상담	10년	임상심리상담사 1급	강사 겸 객원교수
	4	여	58세	박사수료	가정법률상담 가정폭력상담	10년	-	상담소장
	5	여	55세	박사수료	가족상담/ 가정폭력상담	3년	가족상담사 1급	상담소장
	6	여	56세	박사수료	가족상담	3년	가족상담사 1급	상담소장
	7	여	58세	박사	법학/상담학 박사	10년	부부가족상담사1급	상담소장
	8	여	55세	박사수료	가족치료	10년	가족치료사 1급 부모코칭지도사	상담센터장
	9	여	70세	박사수료	교육심리	5년	모래놀이치료사 슈퍼바이저	상담센터장
	10	여	58세	박사	가족치료	3년	가족상담사 1급	교수
	11	여	58세	박사수료	아동가족 상담	4년	부부가족상담사 (1급)	
부모 양육 안내 실무자	12	여	48세	박사수료	아동상담	3년	아동상담사	초빙교수
	13	여	54세	박사	아동가족학	3년	가족상담사 건강가정사	부센터장
	14	여	47세	박사	아동가족학	1년	가족상담사 건강가정사	센터 팀장
	15	여	51세	석사	사회복지학	4년	건강가정사	센터 팀원
법원 실무자	16	여	37세	학사	-	1년 6개월	-	전주법원 주사보
	17	여	40세	학사	-	2년	-	남원지원 주사보
	18	남	42세	학사	-	2년	-	정읍지원 주사보

2) 주요 결과분석

○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이혼위기가족을 가까이서 살펴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관점에서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겪는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함

○ 더불어 각 지원 사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느끼는 현 지행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자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정책욕구들을 이혼 전과 협의이혼 진행 과정 및 이혼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분석·정리함

(1)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본 이혼위기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 현장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혼위기가족의 전반적인 이혼관련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결과를 이혼의 사회문화적 변화, 부부갈등 심화요인, 법적 이혼고정 실태 및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표 4-35〉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결과

구분		범주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 본 이혼위기 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이혼의 사회문화적 변화	외도·폭력 등 문제적 사건 중심에서 순수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추세
		여성의 이혼요구 증가 : 아내·母 역할에 대한 사회적 흐름 변화 및 갈등에 대한 남녀 인식차이
		이혼 후 자녀양육 맡는 남성(한부자가족) 증가 추세
	부부갈등 심화요인	의사소통기술 부족 및 갈등해결과 분노조절 방법 미흡
		부부갈등 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 부족
	법적 이혼과정 실태 및 문제점	형식적이고 파상적인 부모양육안내 및 의무상담제도
		법원 행정부서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혼숙려기간
		이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격한 양가감정 해소와 생각정리 기회 부족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의 중요성 부각
		협의 이혼 취하 부부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상담·교육) 필요
		재차·삼차 협의이혼 신청자 및 장기간의 별거 신청자는 이혼의지 강함
정책적 욕구	법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강제성과 의무성) 활용 극대화 필요	
	협의이혼 신청자관련 통계자료 구축 및 지속적인 연구 필요	
	이혼위기부부의 특성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상담위원과 상담기관 확보 및 전문성제고 관리 필요	
	이혼 전 단계	결혼 전 예비부부교육·집단상담 및 예비부모교육 활성화 필요
		부부갈등 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을 수 있음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 학부모 대상 부부교육 강화
	이혼 진행·이혼 후 단계	숙려기간 내 최소 기본 3회의 상담의무화 및 기본 의무상담 회기 점차 확대
		의무상담제 시 미성년자녀 연령대 확대(최소 15세까지) 및 자녀상담 진행 필요
		이혼 당사자의 신체건강관련 지원서비스 필요

① 이혼의 사회문화적 변화

❒ 외도·폭력 등 문제적 사건 중심에서 순수한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추세

○ 이혼사유의 경향을 살펴보면, 성격차이가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학대·폭력 등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혼사유로 성격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들을 살펴보면, 부부간의 서로 다른 생활 및 사고방식 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생긴다면 지금의 이혼건수를 조금은 낮출 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즉 이혼위기에 처해 있는 부부 각자의 생활습관과 사고방식 및 성격의 차이를 이해시키고, 부부갈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상담가의 중재 및 해결, 그리고 이혼 이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혼 전 상담 및 교육 등은 신중한 이혼 선택과 더불어 이혼 건수를 보다 낮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임

최근에는 경제적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순수한 성격차이로 쿨하게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요.. 정말 수순한 성격차이로요... 서로 맞지 않으니 결혼생활을 끝내는 거죠.

최근 10년 전부터인가 정말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관념의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리고 이 격차를 해소하기 보다는 이혼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여성의 이혼요구 증가 : 전통적인 아내·어머니 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변화

○ 한쪽 배우자의 이혼강요도 협의이혼의 비중 있는 사유로 나타남. 특히 여성의 이혼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결혼생활의 문제에서 여성이 보다 일찍 인식하고 오랜 기간 갈등의 시간을 보낸 후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남성이 결혼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나서려고 할 때는 이미 부인의 감정 골은 깊어져 있어 부부관계회복은 어려운 상황. 즉. 아내는 오랜 기간 부부갈등에

대한 해결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아내의 이혼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 왔고, 그 이유조차 알려 하지 않음. 남편들은 협의이혼신청 서류를 받고 난 후부터 아내의 이혼요구를 구체화시켰고 비로소 이혼에 대한 아내의 요구를 문제 시 했음. 남편들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나서야 아내의 생각하는 부부갈등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해보고자 하나 아내들은 이미 정서적으로 이혼상태에 놓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 이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인식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부교육관련 프로그램에서 결혼생활의 문제를 보는 남녀의 시각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화하여 구성해야 함

○ 또한, 과거와 다르게 여성의 의식변화에 맞춰 남성의 가치관 및 의식변화가 따르지 못할 경우 부부간 갈등과 불만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여성들이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헌신과 희생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그에 따른 사고방식 및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여성의 이혼요구가 최근에 부쩍 증가하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희생, 배려, 헌신으로 통하지 않더라구요.. 어떤 부부는 아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요... 그리고 주말에 잠시 데리고 와서 보고 또 보내요... 정말 저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역할이죠.. 그러면서 힘들다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고 이혼한데요...

요즘 여성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변했어요.. 본인의 행복, 삶의 질을 더 중요시 하는 것 같고 헌신이나 희생이 많이 사라졌죠.. 결혼생활이 맞지 않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구요..

❒ 이혼 후 자녀양육 맡는 남성(한부자가족) 증가 추세

○ 여성이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남성이 자녀양육을 맡는 경우가 소수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추세임

○ 여성 한부모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경제적 문제,

양육 및 사회·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성 한부모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수치상으로 소수에 불과해 미흡한 실정. 남성 한부모가족의 증가 요인을 구지 찾는다면, 남성의 경우 전통적이고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는 부모가 끝가지 양육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행복하지 않는 부부관계라면 자녀와도 이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짐

최근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전히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지만 점점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상당 수 증가하고 있어요.. 엄마를 못 미더워 자신이 자녀를 키우겠다는 거죠.

확실히 요즘 들어 이혼 후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성들이 자신 본연의 삶을 중요시 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고가 확대되었다고 봐야 하나?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요.

② 부부갈등 심화 요인

❒ 의사소통기술 부족 및 갈등해결과 분노조절 방법 미흡

○ 이혼위기가족, 즉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부부갈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의사소통기술 부족으로 대화단절이 여러 해 전부터 나타남. 또한 부부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본인의 분노조절의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 이는 협의이혼 신청자 대부분이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이나 갈등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및 화가 났을 대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대부분이 받아본 경험이 전무함

협의이혼 부부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정말 의사소통기술이 없어서 대화가 단절되고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10쌍에 8쌍 정도가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협의이혼 부부들을 보면 갈등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이라든가 분노조절하는 방법이란 것들을 몰라서 부부지간에 간들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갈등해결 방법, 분노조절방법 등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이혼건수가 감소할 것 같아요.

❒ 부부갈등 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 부족

○ 무엇보다 이혼위기가족, 즉 협의이혼 신청자들과의 상담 시 느껴지는 부분은 부부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임

○ 부부의 갈등이 발생하고 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든지, 주위의 지인들의 도움을 청한다든지, 다양한 기관에서의 부부갈등 및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을 찾아 받아본다든지, 책을 찾아 읽어보려는 노력보다는 단지 부부갈등에 집중하고 이 갈등의 해결을 이혼으로 귀결 지으려는 모습들이 상당수 나타남

솔직히 부부들이 본인들 자신의 갈등분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자체가 없거나 상당히 부족하죠.. 마음만 먹고 인터넷 등만을 조금 시간 투자한다면 부부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혹은 유로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해요.. 아예 부부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자체가 없다고 봐야죠.

법원에 가서 물어보면 10쌍 중에 9쌍 정도는 협의이혼 오기 전에 전문가 상담 한 번 받아보지 않았다고 해요.. 상담받았다고 이야기 한 사람들도 살펴보면 주위의 친구한테나 언니한테 이야기하고 상담받았다고 하거나요.. 부부간의 해결이 힘들다면 외부의 자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해서 갈등을 풀려고 하는 의지도 약하고 그저 맞지 않는다고 헤어지려고만 하네요.

③ 법적 이혼과정 실태 및 문제점

❒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자녀양육안내 및 의무상담제도

○ 자녀양육안내교육은 군산과 전주를 제외하고는 법원 내에서 비디오 시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무상담제는 군산과 익산을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약 30분정도의 상담이라기보다는 확인안내(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방법 등)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즉 자녀의 복지증진과 보다 신중한 이혼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자녀양육안내와 의무상담제가 보다 효과성을 높이기기위해서는 다양한 개선이 필요함

> 전주법원에서하는 상담은 정말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예요. 상담이 아니라 그저 안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1시간 30분 주고 4팀에서 많게는 5팀을 상담하라고 담당자가 재촉하니 무슨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겠어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죠.

> 제가 법원에 와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한지 4년째가 되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어요... 법원 협의이혼 상담이라 해서 저의 전문 상담 능력을 잘 활용해 보려 했는데 해가 지날수록 상담의 효과성도 없는 것 같고 이게 과연 상담인지.. 이혼하러 온 사람 도장 찍어주러 온 건지.. 저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 법원 행정부서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

○ 법원 사무직렬은 원래 한 과에 1년 이상(최대 2년) 근무 시 타 과로 이동해야 하는 인사 원칙이 있음. 이에 매년 다른 과로 이동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해야 할 상황이었음

○ 이와 같은 법원의 인사원칙으로 인해 협의이혼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새로운 담당업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업무가 파악되고 뭔가의 문제점이 보일 시점에서는 또다시 타 과로의 인사이동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의이혼 관련 담당 사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혹은 이혼위기부부(협의이혼 신청자)의 신중한 이혼결정과 그 자녀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모색에 집중할 수 없음

법원에 협의이혼을 담당하는 보좌관인가 사무관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매번 바뀌니 담당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처리만 하는 것으로 족한 것 같기도 하구요. 새 업무 파악하고 적응할 만 하면 다시 타부서로 가니.. 협의이혼 관련 업무만 지속한 사람과는 확실히 다르겠죠.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법원 판사, 담당자 및 위촉 상담위원들이 만나 간담회도 갖고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완점 등에 대해 이야기도 했던 것 같던데... 지금은 법원 협의이혼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법원 협의이혼 관련 담당자들과 위촉 상담위원들 간의 연계도 필요한 것 같은데.. 잘 안되고 있죠.

❒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혼숙려기간

○ 협의이혼 신청자의 대부분은 숙려기간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낮았음. 숙려기간의 목적과 무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즉 이혼에 대한 재차·삼차의 심사숙고, 자녀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육 및 면접교섭의 결정, 자녀양육의 향후 계획, 홀로서기를 위한 예행연습 등 준비된 이혼이나 후회 없는 이혼을 위해 3개월 동안 노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음

○ 이에 효과적으로 숙려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현행 의무상담제를 보다 강화하여 이혼에 대한 심사숙고와 자녀복리 증진을 위한 대책 강구로 건강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협의이혼 신청자 대다수가 숙려기간 3개월을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시간만 보내고 판사 압에 나타나는 것 같아 숙려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회기를 늘리던지 여러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숙려기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시간을 정말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하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 이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격한 양가감정 해소와 생각정리 기회 부족

○ 부부갈등의 심화로 이혼위기에 봉착한 부부들은 서로에 대해 격한 부정적 감정들이 가득 차 있음. 분노, 우울, 상실, 배신, 자괴감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격해 있는 상황임

○ 이에 객관적이고 심사숙고한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리기보다 격한 양가적 감정과 욱하는 홧김에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려하는 잘못된·미성숙한 판단과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이러한 격한 양가감정이 정리되지 못한 채 이혼 할 경우 이혼 이후에도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녀에게 지속 전달되기 때문에 이혼의 과정에서 부부의 격한 감정과 서로에 대한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전문가를 통한 부부상담 및 감정치유상담 등)가 필요함

> 협의이혼 신청자가 상담실에 들어오면 약 두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장기간의 별거나 재차 협의이혼 신청에 의해 이혼의 의지가 확고하고 감정과 생각이 정리된 부류가 있는 반면 대부분 처음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부부들은 부부갈등에 대한 격한 감정들을 마구 쏟아내죠..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생각도 정리가 미처 안되어 있어요.
>
> 이혼을 하는 대부분의 부부가 서로에게 격한 양가감정을 보이고 이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소진을 겪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격한 감정들이 정리 되지 않은 채 이혼이 진행되면 이혼 후에도 그러한 잔해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니 해결해주거나 정리해 주는 것이 좋죠.

❒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의 중요성 부각

○ 협의이혼 신청자 중 군산지원 및 익산시 법원에서 이혼 진행 절차를 밟는 신청자들은 최소 5회기 정도의 의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으로 심화된 격한 감정정리는 물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자녀에 대한 고려 등을 전문상담가와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으면서 이혼취하 및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 반면, 군산 및 익산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같은 전북지역 내에 있으면

서도 차별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지자체 및 법원 기관장의 협의이혼 신청자들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라 사료됨. 이에 지자체 및 각 법원의 기관장들이 전북 각 지역의 이혼 실태와 추이 및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각하고 협의이혼 신청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함

지자체 장이나 법원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전북지역 내에서도 악산과 군산지원만이 의무적 상담을 3회기에서 최대 5회기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협의이혼에 대한 기관장들의 관심과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장들의 의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 협의이혼 취하 부부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상담·교육) 필요

○ 협의이혼 신청 부부 중 한쪽 배우자의 이혼 반대 혹은 부부 모두 이혼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으로 차후로 이혼의 결정을 잠시 미루어 협의이혼을 취하한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은 아직까지는 부부관계 개선이나 회복의 기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협의이혼을 취하하는 부부는 협의이혼 진행 중인 부부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과 질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부부간의 미해결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을 위해 교육과 상담을 보다 더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음

법원연계 상담을 하다 이혼을 취하하는 부부들 자녀양육안내 교육 이후 이혼을 취하하는 부부들은 꼭 붙잡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혼을 취하하고 다시 결혼생활에 들어가면 갈등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또 다시 법원 상담실에서 자녀양육교육 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집 근처에 있는 상담기관을 찾아가 부부갈등의 문제를 꼭 해결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협의이혼을 취하하는 부부들은 언제가 다시 저와 만나게 되죠.. 그 이유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반복되는 문제 패턴이라든가 기저에 있는 갈등들이 미해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원 및 지자체는 이 부분을 크게 놓치고 있다고 봐요.

❒ **재차 · 삼차 협의이혼 신청자 및 장기간의 별거 이혼신청자는 이혼의지 강함**

○ 협의이혼 신청을 재차 혹은 삼차이상 신청한 부부들은 처음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신청자들보다 이혼의 의지가 더 확고했고 이혼의 법적 진행절차인 자녀양육안내, 의무상담,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에 대해 불만이 많았음

○ 1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를 경험하고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들 또한 혼인관계에 대해 이미 감정과 생각이 정리된 최종 마무리 단계로 단지 서류상의 깨끗한 정리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자녀양육안내, 의무상담, 숙려기간 모두 의미 없이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었음

법원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협의이혼 신청이 처음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이들은 처음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람들보다 감정과 생각의 정리가 더 잘되어 있고 이혼에 대한 의지 또한 강해요.. 그래서 숙려기간이라던가 상담을 구지 받으려 하지 않으려 해요.

무엇보다 별거기간을 오래 가졌단 협의이혼 신청부부들은 정말 쿨하고 아주 깨끗하게 빨리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서류상의 정리만이 남아 있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나 애증이나 아쉬움 등 보다는 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길 가자란 생각이 크죠.

(2) 정책적 요구

① 법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강제성과 의무성) 활용 극대화 필요

○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자녀양육안내교육 및 의무상담에 있어서 불만이 있으면서도 충실히 따르는 이유 중 하나는 법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함

○ 법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 즉 자녀양육안내교육 및 의무상담란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야지만 이혼이란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임. 이에 이혼위기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민간기간과의 연계보다는 법원이란

기관의 특수성을 연계하여 이혼위기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마련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활용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자녀양육안내 교육과 의무상담을 불만을 가지면서도 실시하는 이유는 법원이란 기관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법원이란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절차의 한 부분으로 의무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에 법원이란 기관의 특수성을 또 다른 교육이나 프로그램 실시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이혼위기가족이나 부부관계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아요. 한테 법원이라는 기관이 끼여 있으니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잘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 이혼관련 사업은 법원과의 연계와 협조가 꼭 필요하리라 봐요.

② 협의이혼 신청자 관련 종합적·지속적 데이터 구축 및 연구와 분석 필요

○ 이혼위기가족, 즉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관련 현황과 그 제반에 따른 전반적 문제를 아우르는 데이터가 부재함.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가족의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서 혹은 부부갈등과 가족문제 예방 등을 위해서 이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 파악을 위한 데이터 구축이 절실함

○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른 가족 내·외적 가치규범 및 행동양식 등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이혼위기가족(협의이혼 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이혼위기가족의 이혼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다층적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과 조사가 가능해지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지원정책 수립 방향과 대응책이 마련될 것임. 또한 현 시점에서 사용가능한 데이터 자료 구축에서 더 나아가 그 가족과 구성원의 변화를 추적한 종단자료도 주기적으로 구축되어져야 함

○ 특히 이혼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집단으로서의 경험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개인단위에서 각 단계들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

어 과정을 형성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경로에 있어 어떤 유형이 관찰되는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탐색작업이 필요함

저희 팀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법원에 오는 협의이혼 신청자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모아놓고 분석하면 위기가족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말을요.. 자료 수집을 못하고 있음에 대한 아쉬움들을 자주 토로하죠..

군산 같은 경우는 상담 전과 상담 후의 설문자료를 모아 분석했고 향후에도 자료가 모아지면 분석하여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해요. 그래서 전주며 다른 지원들의 협의이혼 신청자 관련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축한다면 이들을 돕고 현 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여질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법원 자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담일지라든지 몇몇 일부의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사장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데이터 구축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법원에서 그리고 연구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③ 이혼위기부부의 특성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상담위원과 상담기관 확보 및 전문성 제고 관리필요

○ 상담분야에서 부부상담 그것도 이혼위기상담이 가장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며 고난이도의 상담기술과 통찰 등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상담위원 및 연계 상담기관의 상담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담가의 전공, 학위, 관련 자격증보유 및 급수, 일정량의 상담경험 경력과 연령 이상 등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상담위원 및 상담기관을 확보해야 할 필요 있음

○ 또한, 법원과 연계되어 협의이혼 상담을 하는 상담위원과 상담기관의 전문성을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례회의, 워크숍, 심포지엄 형태의 정기적인 교류 및 긴밀한 네트워크로 이혼위기상담 및 협의이혼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함

부부상담 게다가 이혼위기부부상담은 아무나 못해요.. 1급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전공자이면서 적어도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이며 또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연륜과 상담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담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만 이혼위기부부 상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원 연계 상담위원이든 전문상담기관 연계 등 상담사든 상담기관이든 선별할 때 그 기준을 엄격히 따져야 겠죠.. 그리고 그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구요.. 상담사나 상담기관 선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또 관리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④ 이혼 전 단계에서의 정책적 욕구

❒ 결혼 전 예비부부교육·집단상담 및 예비부모교육 활성화 필요

○ 대부분의 결혼과정을 살펴보면 결혼식과 결혼생활에 필요한 살림살이들을 준비하는데 대부분은 시간과 노력, 경비를 투자하는 반면, 두 사람이 부부로써 남편으로써 아내로써의 역할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이란 건 어떠한 것인지, 서로의 성격이나 습관, 생각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노력의 및 준비가 없는 결혼이 대부분임. 결혼생활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노력해야 하는 다양한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숙고와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결혼은 이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준비 없는 결혼이 불행했듯이, 준비 없는 이혼은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에게 또 다른 불행을 안겨주므로 결혼 전 예비부부교육이나 집단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이를 위해 예비부부 대상으로 결혼교육·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단계별 종합정보가 필요함

○ 또한, 부부 둘만의 신혼기 부부에서 자녀의 출산 등을 예비하여 예비부모교육 실시 등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아무래도 이혼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결혼전 부부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혼 전에 미리 부부역할 등에 대해, 예를 들어 맞벌이일 경우 가사분담이라든지, 성격차이, 재정부분, 의사소통 등의 협의 기술들을 배워 서로에게 맞춰나가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잠재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족학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나가 결혼 전 예비부부교육, 예비부모교육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현재 예비부부교육·부모교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 교육들에 대해 보다 강제성과 의무성을 띄어, 예를 들면 혼인신고제출 시 예비부부교육 5회기 이상 받았다는 수료증을 꼭 지참해야 해준다던지의 의무성과 강제성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게 한다면 아마도 이혼건수가 지금보다는 줄지 않을까 생각해요.

❒ 부부갈등 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을 수 있음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전문상담기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확산될 필요가 있음.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를 몰라서도 부부갈등 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 이에 상담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즉 어떠한 상황에서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인지, 지역 내 유료·무료 전문상담기관은 어디인지, 상담기관 이용방법은 무엇이고, 상담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결혼생활 중 어떠한 문제(부부문제, 부모자녀문제, 대인관계문제, 자녀문제 등)든 언제든지 상담 받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요구됨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부부갈등에 있어서 법원에 오기 전에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상담기관을 몰라서도 상담을 안 받고, 일반적으로는 결혼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자체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부부가 달라졌어요','아침마당'TV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런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하는지 몰라 안 받았다 정도의 인식수준이에요.
대부분.. 아마도 90% 이상이 법원에 오기 전에 상담 받은 적 없다고 말해요..

❒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 학부모 대상 부부교육 강화**

○ 최근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모교육 커리큘럼 내에 부부교육(의사소통기술, 감정이해, 성격검사, 분노조절방법 등)에 대한 기초내용에서부터 심화내용까지를 단계적으로 다루어주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부모는 자신들의 갈등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의무 부모교육 현장에서 부부교육의 내용을 일부 다루어 준다면 자녀들에게도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생애주기에 따른 부부교육이 단계별로 필요한데 부부만 모여 교육한다고 하면 안오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부모교육 시 부부교육의 내용을 기초적인 것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단계별로 다루어주면 그래도 안한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 외 강제성 및 의무성을 띈 부부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죠

⑥ 법적이혼진행 단계 및 이혼 이후 단계에서의 정책적 욕구

❒ **숙려기간 내 최소 기본 3회 상담의무화 및 기본 의무상담 회기 점차 확대**

○ 현장전문가의 대부분이 의무상담제는 필히 최소 기본 3회를 실시해야만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에 대한 숙고,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양육권 및 면접교섭관련 협의 및 격한 감정과 생각정리 등을 할 수 있다 토로함

○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의무상담제라 할지라도 한 커플 당 약 30분내외의 상담은 상담이라기보다 안내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의무상담제로써의 역할과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 3회기의 의무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또한 현장전문가들은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 숙고와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3회기의 기본 의무 상담에서 더 나아가 기본상담의 회기가 점차 확대되기를 요구함

기본 의무상담이 적어도 3회 이상은 되어야 첫 회기 라포형성, 둘째 회기 및 셋째 회기에 부부의 이야기 및 자녀관련 이야기를 서로 꺼내 이야기 할 수 있고 이 3회기는 여전히 부부 이혼에 대한 심사숙고와 자녀관련 양육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이야기를 다 꺼내놓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최소한 의무적으로 3회기의 상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됨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최소 3회기의 의무상담이 필요하나 이 3회기의 의무상담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향후 점차적으로 의무상담의 회기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 10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 전북지역의 의무상담의 회기도 점차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의무상담 실시 시 미성년자녀 연령대 확대(최소15세까지) 및 자녀상담 진행 필요

○ 전북지역의 각 법원·지원의 의무상담제 현황을 살펴보면, 적게는 취학 전(만7세)까지, 많게는 초등 6년(만12세)까지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의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법원연계 위촉 상담위원들은 중학생자녀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측면과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관련 내용이 사춘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녀의 연령대를 최소 15세까지 확대하여 그에 따른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까지 의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함

○ 현재의 협의이혼 절차 상 협의이혼 신청 부부만을 대상으로 의무상담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협의이혼 신청 부부와 더불어 그들의 자녀 대상 상담 및 가족 상담이 확대되어 자녀의 복지 증진을 보다 높일 필요 있음

지금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 12세(초등 6년)까지의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부부만을 대상으로 의무상담이 실시되고 있는데 아마도 예산 때문이라 생각해요. 한데,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더 위험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사춘기인 청소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까지 의무적으로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중 2의 뇌는 공사중이라고 부모의 이혼에 대해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더 확대하여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즉 미성년자녀의 연령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상담이 실시되면 좋겠어요. 단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요. 상담위원들에게 사례비를 조금 적게 주더라도 말입니다.

❒ 이혼 당사자의 신체건강관련 지원서비스 필요

○ 협의이혼 신청자들을 위한 자녀양육안내교육, 의무상담실시, 숙려기간 활용 및 그들의 자녀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이혼의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더불어 신체건강 상의 다양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핵심적 시기임에 주목해야함

○ 이에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심리·정서적 측면과 더불어 신체 건강상의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마련도 필요함

협의이혼 신청자 및 막 이혼을 한 당사자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봐요. 마음이 허약해지고 불안 한 상황에서는 신체 건강도 더불어 악화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건강센터 등 신체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필요해요.

제4절 소결

○ 본 절에서는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이혼관련 전반적인 실태를 이혼 전 · 법적 협의이혼 진행과정 · 이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현 지원정책의 평가와 정책적 욕구를 파악함

○ 다음으로 표준화된 설문조사로 도출하기 어려운 이혼위기가족, 즉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겪고 있는 다각적이고 맥락적인 이혼전반에 관한 경험 실태와 현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개선 방안과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욕구 등을 개별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함

○ 마지막으로 법원 협의이혼 신청자를 대상으로 여러 지원 사업들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현장전문가(법원 위촉상담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녀양육안내교육, 법원의 협의이혼 관련 담당자) 대상 동일집단별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현장전문가 관점에서의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전반의 실태 및 문제점을 이혼 전·협의이혼 진행과정 및 이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현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필요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함

○ 이상으로 전북지역 이혼위기가족(법원 협의이혼 신청자)의 전반적인 이혼실태와 문제점, 정책적 욕구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와 개별심층면접조사 및 현장전문가의 FGI 통해 파악하고자 했으며, 그에 따른 연구결과 내용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몇몇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전북 이혼위기가족의 실태 및 정책욕구를 파악하고자 협의이혼 신청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첫째, 협의이혼 신청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인적사항을 살펴봄. 둘째, 이혼과 관련된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혼 이전, 이혼 진행과정, 이혼 이후의 실태 등을 살펴보았음. 셋째, 현 정책지원의 도움정도와 문제점·개선점, 지원정책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이에 각 단계에 따라 조사결과를 정리하며 소결하고자함

○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전체 200명의 응답자 중 여성 120명(60%), 남성 80명(40%)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혼인지속기간'은 10~14년차 부부가 31.4%로 가장 많았고, 평균 12.05년으로 나타남. '결혼 전 교제기간'은 1~2년(47.0%)이 가장 많았고, 평균 2.13년이었으며, '결혼이유'는 사랑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혼전임신(26.4%)이 높게 나타났으며, 초혼비율이 87.4%였지만, 재혼도 12.6%였음. '연령'은 여성은 40대가 46.2%로 가장 많았고, 평균 39.12세였으며, 남성은 50대가 58.8%로 가장 많고, 평균 41.78세였음. '학력수준'은 여성과 남성 모두 고졸이하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여성은 무직/주부(25.8%)와 서비스직(21.7%), 남성은 서비스직(29.5%)과 생산직(23.1%)이 많았음. '소득수준'은 여성은 150~199만원(27.6%)과 무소득(25.9%)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400만원 이상이 23.1%로 높았음. '자녀 수'는 2자녀가 51.8%로 가장 많고, 3자녀 이상도 18.1%였음. 이들의 연령을 보면, "초등기 〉 영·유아기 〉 고등기 〉 중등기" 순이었음. 한편, 협의이혼 신청 전 44.1%의 응답자가 1년미만(34.9%)의 별거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만한 특징을 요목화하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특징은 결혼 전 1~2년의 짧은 교제기간과 혼전임신, 그리고 낮은 학력수준으로 인한 낮은 경제수준이 나타나며, 결혼 후 10~14년이 지나고(자녀연령은 초등기) 이혼위기가 찾아오는 것으로 요목 할 수 있음. 한편, 부부 외에 자녀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도 시급한데 설상가상으로 이혼위기가정의 높은 출산율(2자녀이상 비율 69.8%)은 정책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나타내주고 있음

○ **[이혼 이전]** 응답자들은 결혼 후 평균 4.68년째부터 본인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여성(평균 4.32년, 중위값 2년)이 남편(평균 4.91년, 중위값 5년)보다 좀 더 빠른 시점에 자각하고 있었음.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은 주로 친구(41.9%)와 의논하고, 남성은 의논하지 않는 것(48.7%)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57.4%가 부부가 해결하려고 대화하는 수준의 소극적 문제해결방식을 사용하였고, 결국 결혼생활 문제 인식 후, 평균 5.53년(중위값 3년)이 흐른 뒤 이혼을 결정하고 있었음. 이혼을 결심하면서 부부는 자녀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여성은 혼자 자녀양육과 살림에 대한 걱정을 하고, 남성은 부모님을 실망시킬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현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성격·가치관 이해(54.9%)와 사고방식·생활습관 개선(54.3%)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남

○ **[이혼 진행과정]**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 이유는 사고방식의 차이와 외도로 나타났으며, 혼인지속기간별로는 결혼생활 4년차 이하 부부에서만 외도 사유가 나타나지 않았고, 5년차 이상부터 외도가 주된 사유로 나타남.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도움과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으며, 성별로는 여성은 협의이혼 절차, 남성은 부부갈등 전문상담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남.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부부 간 대화단절 및 감정대결이었음

○ **[이혼 이후]** 이혼 후 예상되는 문제로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3.16점)에 대해 가장 많이 걱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 준비는 낮은(2.58점) 수준이었음.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보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높았는데, 특히 경제문제(3.07점)와 주거문제(2.65점), 그리고 주변의 편견(2.68점)에 대한 걱정이 높게 나타남. 걱정수준 대비 준비정도를 보면, 여성은 주변의 편견(2.60점), 경제문제(2.60점), 자녀의 정서문제(2.69점)에서 걱정수준 대비 준비정도가 취약하였으며, 남성은 자녀의 정서문제(2.41점), 자녀양육문제(2.41점), 상실감(2.32점)에서 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혼 이후의 적응을 위한 도움으로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비용 지원 등의 현금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여성은 일자리 알선의 요구도가 높은 수준이었음

○ **[자녀관련 사항]** 이혼 과정에서의 자녀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녀들이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녀의 의견을 청취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2.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남성은 64.1%가 자녀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혼 결정 후에도 44.2%가 이혼결정을 알리지 않았고, 면접교섭에 관해서 역시 64.8%가 자녀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의 안녕 및 복리를 위해 부부가 바라는 사항은 자녀의 심리·정서 상담과 자녀와의 대화기법을 요구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은 양육비 이행 시스템 구축을 상당 원했던 반면, 남성은 이에 대해 요구도가 가장 낮았음

○ **[지원정책 평가]** 법원의 상담제도 및 자녀양육안내교육에 대해 각각 59.1%, 71.4%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상담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편이었고, 인지하는 주된 경로는 주로 '법원직원'이라고 응답하였음. 부부의 상담경험을 보면, 47.5%가 상담 받은 경험이 있으며, 주로 법원상담실(67.5%)과 건가센터(18.2%)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남. 상담횟수는 1번(82.6%)에 그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상담만족도는 2.86점으로 불만족하는 수준이었고, 특히 여성(2.74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그 외 상담을 받지 않은 52.5%의 응답자는 상담정보 부족(40.8%)을 주된 사유로 들었으며, 특히 여성은 '사생활이 알려질까봐(20.4%)'의 이유가 높게 나타남. 한편,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녀양육교육 만족도는 평균 3.05점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으며, 혼인지속기간별로는 15~19년차(3.16점), 4년차 이하(3.12점) 부부의 만족도가 높고, 10~14년차(2.89점) 부부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의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는데(3.06점) 도움이 되었던 반면, 결혼문제에 대한 숙고와 감정정리에 도움(2.77점)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나.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 이혼위기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배우자와의 성격·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 외 사유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게임과 도박중독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위기, 남편의 강한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아내의 성불평등적인 상황의 극한 불만 등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이혼사유로 성격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미연에 부부간의 서로 다른 생활과 사고방식 및 성격차이 등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된다면, 증가하고 있는 이혼건수를 낮출 수 있을 것임. 즉 부부간의 성격유형검사 및 성격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상담가의 해석, 부부간의 생활 및 사고방식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교육 등의 프로그램 등은 신중한 이혼 선택과 더불어 이혼 건수를 보다 낮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임

○ 둘째, 이혼위기가족, 즉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부부갈등 실패와 협의이혼 진행 절차상에서 힘들어 하는 점들을 살펴보면, 부부갈등의 해결을 이혼이란 극한 상황으로 해결하려 하고, 미해결된 동일한 갈등문제가 지속 반복되어 나타나 협의이혼 신청도 재차이상 하는 모습들이 보임. 협의이혼 진행 절차상에서 부부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서로에 대한 격한 양가감정을 지니고 있었고, 심각한 부부갈등을 지속 노출됨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많았으며, 이혼 이후의 자녀양육과 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도 많았음. 이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면, 이혼위기부부에게 부부 갈등을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보다 나은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협의이혼 절차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면, ① 전문상담기관 및 법률적 정보 안내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 부족이 나타남. ② 부모양육안내가 형식적이고 사례중심과 자녀연령대별 심화내용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았음. ③ 협의이혼 신청자 중 협의이혼 신청을 재차·삼차 신청한 신청자에 한에 자녀양육안내 및 숙려기간을 차별화하여

적용해주기를 제시함. 이상의 결과, 미성년자녀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자녀양육안내에 대한 심화내용 보강 및 전문상담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의 결과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작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혼 후 재혼하고, 다시 이혼하는 상황을 접하게 됨. 이에 이혼 예방이나 건강한 이혼을 위해서는 숙려기간의 의미 있는 활용과 의무상담제도를 충실히 시행함으로 부부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넷째, 협의이혼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욕구를 이혼 전·협의이혼 진행 및 이혼 후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혼 전 단계'에서는 결혼 전 결혼에 대한 사전학습을 필요로 했으며, 부부갈등이 심화되기 전 공권력 있는 기관에서의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해주기를 바랬음. '법적 이혼 진행 단계'에서는 부모양육안내에 대한 자녀연령대별, 사례중심별 심화교육을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부부갈등에 노출된 자녀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원과 협의이혼의 마지막 절차인 이혼신고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 시 전담 담당자가 한부모지원사업 안내는 물론 상황별에 따라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제공을 요구함. 그리고 '이혼 후 단계'에서는 별거 및 이혼 후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양육비를 지속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통합적인 일자리지원 패키지 및 자녀 학습 · 심리지원을 위한 멘토서비스,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문화 프로그램 정보 안내 등을 요구함

다.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지단면접조사(FGI) 결과

○ 현장전문가의 관점에서 이혼위기가족의 이혼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문화적 흐름에 맞춰 이혼의 사유도 변화되었음. 즉, 외도·폭력 등 문제적 사건 중심에서 순수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증가 추세이며, 여성의 이혼요구가 증가하고 있었음. 더불어 자녀양육을 맡는 남성, 즉 한부자 가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이혼위기부부의 부부갈등 심화요인으로 ① 의사소통기술 부족으로 인한 대화단절이 가장 심각했고, ② 갈등해결 방법과 분노조절 방법의 미흡으로 부부갈등이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부부에게 의사소통 기술 및 갈등해결과 분노조절방법을 상담·교육 등을 통해 훈련시킨다면 이혼의 건수는 지금보다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이혼위기가족이 법적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① 부모양육안내 및 의무상담제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남, ② 법원 행정부서의 담당직원이 통상 2년 주기마다 교체되어 그에 따라 단순 행정절차만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보다 개선된 지원 사업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③ 이혼숙려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협의이혼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④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장 및 법원장의 의지가 강할수록 협의이혼 신청자들과 미성년자녀의 복지 증진에 대한 지원이 많았음.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⑤ 어떠한 이유로든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는 부부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갈등문제에 대해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상담·교육)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원되어야만 재차 발생할 수 있는 협의이혼 신청을 예방할 수 있음을 주장함, 그리고 ⑥ 협의이혼을 재차이상 신청한 신청자 및 1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 경험을 갖고 있는 신청자는 이혼의 의지가 보다 강하게 나타남

○ 넷째,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본 이혼위기가족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① 법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강제성과 의무성)을 극대화하여 활용할 필요

가 있으며, 무엇보다 ② 협의이혼 신청자의 이혼관련 및 지원서비스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함, ③ 이혼위기부부의 특성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상담위원과 상담기관 확보 및 전문성 제고 관리가 필요함

○ ‘이혼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욕구 분석결과 ① 결혼 전 예비부부교육·집단상담 및 예비부모교육 활성화 필요와 ②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이 필요하며, ③ 학부모 대상 교육 시 부부교육 내용도 함께 다루어줘야만 이혼위기로 갈 수 있는 부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혼진행 및 이혼 후 단계’에서는 숙려기간 내 상담을 최소 3회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기본 의무상담 회기를 점차 확대해야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의무상담 시 미성년자녀의 연령대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편, 부부상담 이외 자녀상담도 세트로 진행해야 만이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함. 마지막으로 협의이혼 신청자 및 이혼자 대상 심리·정서지원, 경제적 지원 이외 신체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도 필요함을 제시함

5 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Jeonbuk Institute

제 1 절 주요결과 및 논의
제 2 절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제5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나타난 주요결과와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과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제1절 주요결과 및 논의

가. 사회문화적 흐름을 반영한 이혼의 사유내용 변화

○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성격차이가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학대·폭력 등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한편, 남편의 게임 및 도박중독에 따른 가정 · 경제적 위기로 인한 이혼도 증가하고 있었음. 부부문제에 있어 남성보다 일찍 인식하고 오랜 기간 갈등의 시간을 보낸 후 부부갈등 해결 방법으로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여성들도 증가하는 추세임. 그리고 여성의 빠른 성평등적 의식변화에 맞춰 남편의 가부장제적 가치관 및 의식변화가 따르지 못해 나타나는 갈등과 불만도 이혼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들을 찾아보면, 서로가 상대방의 생활습관과 사고방식 및 성격을 이해하고자하는 적극적인 노력 부재 혹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과거와 다르게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헌신과 희생하고자 하는 가족가치주의 가치관보다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사고의 팽배, 사회문화적 흐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전통적·가부장적 가치관 고수 등이 부부갈등을 심화시켜 부부갈등이 이혼으로 귀결되고 있음

○ 이에 부부 각자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 및 성격에 대한 차이와 그리고 갈등문제 인식 시기에 대한 남녀 성차 등에 대해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부교육과 상담, 부부 갈등 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부부·부모교육, 양성평등적 부부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교육 등을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개입하고 지원한다면 신중한 이혼 선택과 더불어 이혼 건수를 보다 낮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임

나. 부부갈등의 심화요인 및 미해결된 동일내용의 부부갈등 반복적 발생

○ 이혼위기가족은 대부분 의사소통기술 부족에 의한 대화단절을 여러 해 전부터 겪고 있었음. 갈등문제 해결방법 및 분노조절방법, 스트레스 관리와 해소방법에 대한 교육 부재와 무지로 장시간의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음. 또한, 동일내용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반복하여 발생하였고, 보다 심화되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 또한 매우 부족함. 결국에는 장기간에 누적된 갈등과 미해결된 동일내용의 갈등을 부부관계 해소란 이혼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남

○ 이에 먼저 부부간의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부부대화교실, 갈등해결 및 분노조절 방법,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 방법에 대한 다채로운 내용의 부부교육,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성격 이해 증진, 양성평등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부부 전문상담 등이 절실히 필요함. 교육과 상담은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춰 단계별(결혼 전-신혼기-자녀양육기-자녀성인기-중·장년기-노년기) 발달과업의 맞춤형 교육내용과 자료안내 및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임. 또한, 학교 및 사회기관(공공·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지속적·반강제적 성격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기초이론교육부터 실질적인 경험과 실습 중심의 실제교육 등을 단계별로 실시해야 할 것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권력 있는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의 유인책을 도모하는 방법 모색이 절실히 필요함

○ 다음으로 결혼생활에서 동일내용의 갈등문제가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누적

된 경우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상담 개입이 절실함. 상담경험이 많은 전문 상담가에게 부부·가족 상담을 지속적이고 심도있게 받아 해결하려는 노력과 이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다. 부부갈등 시 전문상담 및 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 본 연구의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 부부갈등과 이혼결정 시 전문 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음. 상담 받았다 해도 단지 지인과 이야기했고 그에 대한 비율 또한 저조했음. 이는 이혼위기가족 대부분이 이혼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중한 생각과 고민 없이, 주위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쉽게 빨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줌

○ 더욱이 우리사회는 서구사회와 다르게 가족과 부부문제 및 갈등은 외부 전문상담가와 해결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가족 내에서 부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높은 사회적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에 대해 국가나 사회의 개입은 어떠한 형식으로 든 수행해야 할 필요 있음

○ 이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혼위기가족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갈등시기부터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전문가의 상담 및 교육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여 전반적으로 확산시킬 필요 있음. 먼저는 전문 상담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를 몰라서도 부부갈등 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 유·무료 전문 상담기관과 이용방법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란 어떠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인지, 상담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과 도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필요 있음

라. 자녀양육안내·의무상담 내실화 및 숙려기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2008년 민법 개정으로 숙려기간, 상담권고제 등이 도입된 이래 2012년 상담권고가 의무 상담으로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 이후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보면, 약 1시간 정도의 비디오시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일회성 자녀양육안내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었으며, 군산 및 익산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약 30분 내외의 1회기 의무상담제에 대해 상담의 효과성면 등에서 의미 없음이 이혼위기가족 및 법원 상담위원 대다수에 의해 지적됨

○ 이에 '자녀양육안내'는 자녀연령대별 부모교육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심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비디오 시청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한 체험중심의 심화교육이 절실함. '의무상담제'는 적어도 기본 상담을 최소 3회기로 확대하여 어느 정도의 상담의 효과성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부부가 함께 상담하면서 심리적 위기자녀에 대한 지원상담도 동시에 실시되어야 함. 또한, 의무상담제의 대상도 13세(혹은 7세)까지의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에서 최소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학생(만 15세)까지로 확대해야 하며, 만 15세~18세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도 상담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할 때에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의무상담제'를 내실화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위기부부의 특성을 감당할 수 있는 전공, 학위, 자격증, 일정량의 상담경력과 경험 등을 갖추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위원이 위촉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법원 내에서는 상담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례회의, 워크숍, 심포지엄, 간담회 형태의 정기적인 교류와 긴밀한 네트워크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이혼숙려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혼숙려기간을

보다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함. 즉, 이혼숙려기간 동안 이혼여부에 대한 심사숙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복리증진 및 이혼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와 대책마련 등으로 이혼에 대한 현명한 의사결정과 건강하고 준비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 마련이 절실함

마. 미성년자녀의 복리와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필요

○ 이혼위기부부가 이혼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인 협의이혼 절차 진행 시 부부들은 당사자의 이득을 위해 보다 심화된 갈등과 비방, 심리·정서적 혼란과 더불어 미성년자녀에 대한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부부 당사자 간의 심화된 갈등상황에서 무방비한 채로 버려지거나 보호받지 못한 최대의 피해자는 미성년자녀로 지목됨. 이에 협의이혼 절차 진행 시 이혼위기부부 사이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증진과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

○ 미성년자녀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에게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보다 심화시켜 강화해야 하고, 의무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무상담제를 기본 3회기, 회기 당 1시간 정도, 성격검사 및 위기자녀 대상 가족상담까지 지원하는 등의 내실화가 필요함.

○ 또한, 이혼 이후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관련 전반적 협의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의 서류가 아닌 미성년자녀 중심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결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방법 협의와 구체적이고 상세한 양육계획서를 실제 현실 속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심사숙고하며 작성해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다루어 줄 수 있는 제도마련도 필요함. 그 외 비양육권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지속적 행하게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안내하는 양육비 기준 금액(안) 안내, 양육

비 이행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 수행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적 행사권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협의내용에 대해 자녀의 의사를 수렴하여 개진할 수 있는 방안, 자녀의 심리·정서적 측면을 보호하면서 자녀에게 이혼결정을 알 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법 사례 예시 안내 등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제공해야 함. 마지막으로 심리적 불안정 및 위기 자녀 대상 심리검사, 심리치료,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도 필요함

부모합산 소득 (세전) / 자녀 만 나이	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699만 원	700~799만 원	800~899만 원	900만 원 이상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2세	532,000 219,000~592,000	653,000 593,000~735,000	818,000 736,000~883,000	948,000 884,000~1,026,000	1,105,000 1,027,000~1,199,000	1,294,000 1,120,000~1,341,000	1,388,000 1,342,000~1,487,000	1,587,000 1,488,000~1,670,000	1,753,000 1,671,000 이상
3~5세	546,000 223,000~639,000	732,000 640,000~814,000	896,000 815,000~974,000	1,053,000 975,000~1,121,000	1,189,000 1,122,000~1,284,000	1,379,000 1,285,000~1,477,000	1,576,000 1,478,000~1,654,000	1,732,000 1,655,000~1,828,000	1,924,000 1,829,000 이상
6~11세	623,000 244,000~699,000	776,000 700,000~864,000	952,000 865,000~1,044,000	1,136,000 1,045,000~1,219,000	1,302,000 1,220,000~1,408,000	1,514,000 1,409,000~1,559,000	1,605,000 1,560,000~1,717,000	1,830,000 1,718,000~1,997,000	2,164,000 1,998,000 이상
12~14세	629,000 246,000~701,000	774,000 702,000~884,000	995,000 885,000~1,107,000	1,220,000 1,108,000~1,303,000	1,386,000 1,304,000~1,484,000	1,582,000 1,485,000~1,650,000	1,718,000 1,651,000~1,797,000	1,876,000 1,798,000~2,143,000	2,411,000 2,144,000 이상
15~18세	678,000 260,000~813,000	948,000 814,000~1,076,000	1,205,000 1,077,000~1,290,000	1,376,000 1,291,000~1,493,000	1,610,000 1,494,000~1,715,000	1,821,000 1,716,000~1,895,000	1,970,000 1,896,000~2,047,000	2,124,000 2,048,000~2,394,000	2,664,000 2,395,000 이상

※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바. 이혼위기가족(협의이혼 신청자)관련 데이터 구축 및 지속적인 연구 필요

○ 이혼위기가족(법원 협의이혼 신청자)관련 통계자료 뿐 만 아니라, 협의이혼 신청자가 지닌 제반의 전반적 실태관련 데이터가 부재함. 즉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가족의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혹은 부부갈등과 가족문제 예방 등을 위해 이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더불어 전반적 실태 및 지원서비스의 수요 파악을 위한 데이터 구축이 절실함

○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가족 내·외적 가치규범 및 행동양식 등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이혼위기가족(협의이혼 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이혼위기가족의 이혼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다층적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과 조사가 가능해지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지원정책 수립 방향과 대응책이 마련될 것임. 또한 현 시점에서 사용가능한 데이터 자료 구축에서 더 나아가 그 가족과 구성원의 변화를 추적한 종단 자료도 주기적으로 구축되어져야 함. 그리고 양적 데이터 뿐 만 아니라 질적 데이터 구축도 필요함

사. 법원과 협조체계 구축 및 인프라(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 이혼증가에 따른 가족해체 및 가족해체 이후의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법원의 자녀양육안내교육 및 의무상담제, 숙려기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이혼위기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공유 및 통합적 · 체계적 ·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무엇보다 법원은 의무성과 강제성이란 특수성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어 법원의 권고 및 안내에 대해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불만이 있으면서도 자녀양육안내교육 및 의무상담을 충실히 순차적으로 밟아가고, 이렇게 해야만 이혼이란 목적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음. 이에 법원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연계 · 활용하여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들을 개발 · 마련하고 이 서비스들의 활용을 극대화 할 필요 있음

○ 지역별 이혼위기가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및 마련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가족 및 개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부부교육·부모교육, 이혼위기상담·가족상담·자녀상담, 심리검사 및 가족문화 사업 등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 가족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전북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소극적인 증가와 시·군·구별 낮은

설치율 및 적은 인력으로 인해 지역별 접근성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이혼 건수가 높고, 부부 및 가족갈등이 높게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이혼위기가족의 예방과 건강가정의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아.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마련 시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과 중요성

○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이혼위기가족의 남편과 아내의 이혼사유 및 정책적 욕구가 서로 상이함이 나타남. 즉 이혼사유의 1위로 남녀 모두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높았지만, 2위부터 아내는 부정/부당한 행위, 남편은 부부관계 문제를, 3위는 아내 학대/폭력. 남편 배우자의 이혼요구로 나타나 이혼사유의 1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냄.

○ 부부 갈등 및 문제에 있어도 여성은 남성보다 일찍 인식하고 오랜 기간 갈등의 시간을 보낸 후 부부갈등 해결 방법으로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러한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이혼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심사숙고 끝에 법적 이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기간이 남성은 12개월, 여성은 22개월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오래 숙고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Spanier & Thompson, 1988)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여성의 성평등적 의식변화에 맞춰 남편의 가부장제적 가치관 및 의식변화가 따르지 못해 나타나는 갈등과 불만도 이혼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과거와 다르게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헌신과 희생하고자 하는 가족가치주의 가치관보다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여성에게 더 빠르게 전파되고 있고, 사회문화적 흐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전통적·가부장적 가치관 고수 등이 부부갈등을 심화시켜 부부갈등이 이혼으로 귀결되고 있음

○ 이혼 이후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 이외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 남성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꼽았으며, 정책적 욕구도 여성은 경

제적 지원 및 일자리 지원, 양육비 수행 의무화를, 남성은 자녀와의 체험과 놀이 행사 정보로 나타나 남녀의 정책적 욕구가 서로 상이함이 나타남

○ 이상의 연구결과 내용처럼 이혼사유에서부터 부부갈등, 이혼결정 형태 등 이혼관련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의 이해와 요구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함이 나타남. 이에 부부갈등상담, 이혼상담, 의무상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 이혼 이후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 관련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마련 시 성인지적 관점과 접근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나타냄

연구결과(실태)			개선방향	
이혼 전 단계	▪ 이혼사유의 1위 성격차이, 이혼사유의 50%이상 ▪ 대화기술 부족에 의한 갈등심화 ▪ 동일내용의 부부문제 미해결로 반복되는 부부갈등과 이혼 ▪ 갈등 시 문제해결 의지 부재 ▪ 부부갈등 심화 전 기관에서 부부상담 및 교육 지원 필요	⇨ ⇨	공공기관 연계 가족기능 강화	▪ 결혼생활준비 교육 필요 ▪ 부부교육 (대화법, 갈등과 분노조절방법) 실시 ▪ 전문상담기관 접근성 제고
법적 이혼 진행 단계	▪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의무상담제도 ▪ 법원 행정부서 담당직원 잦은 교체 ▪ 법원기관 특수성 적극 활용 필요 ▪ 숙려기간 내 최소 3회기 기분 상담 의무화 필요 ▪ 무의미하게 보내는 숙려기간 ▪ 격한 양가감정 해소와 생각정리 기회 부족	⇨ ⇨	숙려기간 효율적 활용	▪ 법원 연계 의무상담제 내실화 ▪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 마련 ▪ 법원·상담위원간 소통
	▪ 자녀연령대별 사례중심의 부모양육안내 필요 ▪ 자녀심리상태 파악 기회 마련 ▪ 의무상담제 시 미성년자녀 최소 15세까지 확대 ▪ 자녀상담 진행 필요 ▪ 이혼 후 자녀의 심리정서상태의 문제	⇨ ⇨	자녀 복리 및 보호	▪ 심화부모교육 실시 필요 ▪ 양육계획서 작성 필요 ▪ 면접교섭지원센터
	▪ 부부갈등 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을 수 있음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 상담기관 홍보 및 안내 ▪ 전문상담과 법률적 정보 제공, 접근성 강화위한 홍보 필요 ▪ 협의이혼 재·삼차 신청자에 차별화된 지원서비스 마련	⇨ ⇨	정보 접근성 등	▪ 전문상담기관 안내 및 홍보 ▪ 이혼취하부부 집중 및 지속 관리 필요 ▪ 관련 데이터 구축과 공유
이혼 후 단계	▪ 통합적인 일자리 지원 마련(교육과정+수강료+자녀돌봄 등) ▪ 자녀학습 및 심리지원위한 멘토서비스 필요	⇨	일자리 등	▪ 여성 한부모 일자리 지원 마련 ▪ 자녀학습 및 심리지원 서비스 필요

〈그림 5-1〉 연구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2절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 이상의 이혼위기가족 관련 법률·제도·정책동향 분석, 국내외 선진 지원정책 사례분석, 이혼위기가족과 현장전문가 대상 이혼 발생원인 · 이혼관련 전반적인 실태(이혼 전·이혼진행과정·이혼 후 단계별 구분)와 정책적 욕구에 대한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논의들을 토대로 전북지역 이혼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첫째, 공공기관 연계 가족기능 강화 교육 · 상담 접근성 제고, 둘째, 숙려기간 효율적 활용 제고, 셋째, 미성년자녀 복지증진 및 보호방안 강화, 넷째, 정보접근성 강화 · 협의이혼 취하자 집중관리 및 데이터 구축 필요, 다섯째, 여성 일자리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로 나누어 살펴봄.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총 12개의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하면 〈표 5-1〉과 같음

〈표 5-1〉 전라북도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 제시

구분	정책방향	세부사업
이혼 이전 단계	공공기관 연계 가족기능 강화 교육 · 상담 접근성 제고	학교 교육을 통한 결혼준비 및 예비 부부·부모교육 실시
		학부모 교육 시 부부교육(대화법, 갈등조절·분조조절 방법) 실시
		전문 상담 접촉 기회 확대할 수 있는 지원 사업 확충
		► '찾아가는 가족·부부상담 상담실' 운영 ► 상담실로 찾아오는 부모·자녀 성격검사 실시
법원 협의 이혼 진행 단계	숙려기간의 효율적 활용 제고	의무상담제 내실화
		► 기본상담 최소 3회기 운영 ► 법원 · 상담위원간 지속적 소통 관계 유지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 진행
	자녀 복리 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자녀양육안내 심화부모교육 실시
		구체적인 '양육계획서' 마련
		면접교섭지원센터
	정보접근성 강화 ·협의이혼 취하자 집중관리 및 데이터 구축 필요	전문상담기관과 이혼진행절차정보 안내 및 홍보 강화 : "모바일 리플렛"
		협의이혼 취하 부부 집중 및 지속 관리(상담 · 교육) 필요
		협의이혼 신청자 이혼관련 데이터 구축 및 연구결과 공유
이혼 이후 단계	여성일자리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여성 한부모 통합적 일자리 지원 패키지체계 마련
		자녀 학습 및 심리지원 멘토서비스 지원

가. 공공기관 연계 가족기능 강화 교육·상담 접근성 제고

○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혼위기가족(법원 협의이혼 신청자) 및 현장전문가는 만족스런 결혼생활과 부부관계 증진 등으로 이혼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 결혼 및 부부생활과 관련된 영역별 구체적인 정보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결혼을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함

○ 또한, 부부갈등이 의사소통기술 부족에 따른 대화단절, 갈등조절 및 분노조절 방법을 몰라 심화되고 있었음. 한편, 여러 민간기관 등에서 대화법, 성격차이 이해, 갈등조절 및 분노조절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혼위기의 부부들은 이러한 교육과 상담을 활용하여 부부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인 공권력을 이용하여 이미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수행되고 있는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들을 모색하는 방안이 요구됨

1-1 학교교육을 통한 결혼준비 및 예비부부·부모교육 실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결혼준비교육, 예비부부교육, 생애주기별에 따른 맞춤형 부부교육과 부모교육 및 (집단)상담 등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위기가족(법원 협의이혼 신청자)는 이러한 교육 및 (집단)상담을 대부분이 받아본 경험이 없었음

○ 이에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교육과 상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활용하여 결혼 전 미혼남녀에게 예비결혼·부부교육 및 예비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 방법 모색 필요

❑ 사업개요

1 학교교육의 교과과정 내 결혼생활교육 및 부모역할 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중앙의 교육부, 전라북도 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주체 : 각 (대)학교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팀
- 사업대상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사업내용 :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실시

▪ 중·고등학생 뿐 만아니라 대학생 대상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과 더불어 예비결혼교육·예비부모교육을 교과과정 내에 설정하여 가르치는 방법

▪ 특히 10대 청소년을 위한 결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이성교제와 (애착)관계형성을 돕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훈련된 전문가가 이론적 교육보다는 충분한 실습과 경험 중심의 교육 진행 필요

- 기초교육 : 결혼과 가족의 의미. 건강한 결혼과 가족의 의미, 양성평등교육(남녀의 차이), 경제적 책임감과 부모역할의 책임감 등
- 대인관계교육 : 의사소통 기술, 성역할기대, 갈등해결 및 분노조절 방법, 남녀 상호작용 형태, 상대방의 성격유형, 자녀와 부모역할 등
- 성관련 교육 : 성에 대한 기본 지식, 성적관심과 기대, 피임과 임신, 데이트 폭력 양성평등적 성윤리 등

2 학교로 찾아가는 '결혼준비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 각 (대)학교 기관장
- 사업대상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 추진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예비부부 및 부모교육 등)을 학교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교육 실시

▪ 학교급별 (대)학생 수준과 욕구수준에 맞춰 단기적이며 경험중심의 교육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 찾아가는 결혼준비교육
- 찾아가는 부모역할 교육

3 예비부부 교육·(집단)상담 이수 시 인센티브 부여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북도·시·군 지자체,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주체 : 전북도·시·군 지자체
- 사업대상 : 결혼준비를 하는 예비부부(혼인신고 신청 전)

○ 추진내용

▪ 민간기관(복지관, 종교기관, 상담기관 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비부부 대상 결혼준비 및 예비부부 교육, 성격유형검사, 부부이해상담 등 관련 교육과 상담을 이수했다는 확인증을 가져올 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사업에 별도의 추가적 혜택 부여하기

- 결혼 전 예비부부 대상 부부관계를 다지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만들어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상담관련 기준제시
- 이러한 교육 및 상담기관 정보안내
- 교육과 상담을 이수한 확인증을 지자체 관련 담당처에 제출 시 결혼준비 및 저출산 관련 혜택 부여

1-2	학부모 교육 시 부부교육(대화법, 갈등조절·분노조절 방법) 실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이혼위기가족(법원 협의이혼 신청자) 및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결과, 부부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의사소통 부족에 대한 대화단절이 가장 많이 나타남. 다음으로 갈등조절 및 분노조절에 대한 방법이 미흡해서 부부갈등이 보다 심화되어 이혼의 위기에 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생애주기별에 따른 기혼부부 대상 대화법(의사소통기술), 부부갈등 시 갈등조절에 대한 방법과 분노조절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면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부부갈등의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하게 되어 이혼의 위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도·시·군·구 지자체,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교육청 및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 사업주관 :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교육청 및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 각 지역별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교육 실시 교육의 한 영역으로 부부교육의 내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안내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북교육청과의 연계로 학부모 교육 시 학부모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맞춤형 부부교육 실시

○ 사업대상 : 전북 지역 각 학교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

○ 지원내용 : 학부모 교육 시 부부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는 대화법, 갈등조절 및 분노조절방법,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기술과 교육 지원

1-3	전문 상담기관 접촉 기회 확대할 수 있는 지원사업 확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에 따르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러 오기 이전 대부분의 이혼위기가족(협의이혼 신청자)는 전문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거의 없었음

○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았으며, 사적인 갈등을 외부 누군가에게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고, 부부갈등 시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과 무엇보다도 부부갈등에 대한 노력 및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가족 및 부부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기관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성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

❑ 사업개요

⓵ '찾아가는 가족 및 부부 상담실'운영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사

○ 추진내용 :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부부와 자녀문제 및 이혼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실시

- 다양한 가족과 부부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원 중 한명이 편안한 시간대를 정하여 상담실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그 시간대에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신청방법 : 전북도 및 각 시·군의 홈페이지 하단에 가족 및 부부 상담실 클릭하여 시간 등 지정하여 신청

- 지원방법 : 홈페이지 신청 정보는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안내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전문상담가의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2 상담실로 찾아오는 부모·자녀 성격검사 실시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팀

○ 추진내용 : 부모와 자녀의 성격차이에 대한 관심에 맞춰 성격유형검사 실시 후 그에 대한 해석을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형식으로 받는 서비스

○ 지원방법 : 각 시군별 어린이집 선정 후 부모와 자녀에게 성격유형검사지 배부(MBTI)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채점 후 성격유형검사 결과를 지역 내 전문상담기관 안내 정보와 함께 배부 → 일정기간 내에 접근성 높은 전문상담기관을 찾아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 확인 및 차이에 대한 해석과 상담 받기

○ 예산 : 전북도와 시·군에서 성격유형검사지 및 1회기의 상담료 지원(3만원/4만원)

나. 숙려기간 효율적 활용 제고

○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무의미하게 숙려기간을 보내어 숙려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함. 숙려기간 동안 이혼여부에 대한 심사숙고와 더불어 자녀복리 증진 및 이혼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 및 대책마련 등으로 현명한 의사결정 및 건강한 이혼을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숙려기간 동안에 실시되고 있는 의무상담제의 내실화와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2-1	의무상담제 내실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협의이혼 절차 진행 시 나타나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군산과 익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상담이 약 30분 내외의 일회기성 혹은 권고로만 이루어져 있어 전문가에 의한 상담 효과를 거의 볼 수 없었음. 법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전문가 상담에 대한 그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최소 3회기 이상의 기본 상담이 실시되어야만 함. 이에 대한 근거가 임춘희(2017)의 군산지원 간담회 발표 자료에서 검증되었음

○ 더 나아가 의무상담제 대상도 13세(혹은 7세)까지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에서 최소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학생(만 15세)까지로 확대해야 하고 만15세~18세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도 상담을 요구할 시에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의무상담을 내실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위기부부의 특성을 감당할 수 있는 전공, 학위, 자격증, 상담경력 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위원의 위촉과 법원 내에서 상담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례회의, 워크숍, 심포지엄 형태의 정기적인 교류와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함

❑ 사업개요

① 기본상담 최소 3회기 운영

○ 사업개요

- 사업주관·주체 : 전북도·전주시, 전주지방법원

○ 추진내용 :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부부와 자녀문제 및 이혼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실시

- 지원방법 : 법원연계 전문상담 기관 위탁 지원, 기본 상담 총 3회기 지원
  - 1회 상담 ; 전주지방법원 부담(3만원)
  - 2회 상담 : 전주시 부담(3만원)
  - 3회 상담 : 전북도 부담(3만원)
  - 협의이혼 신청자(부부) 총 3회기(3시간)의 기본상담 이수, 전문상담기관은 총 3회기 상담으로 9만원 상담료 지급받음
- 사업진행
  ①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팀에서 법원 및 전북도, 전주시와 협조체계를 구축
  ②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기관 의뢰 및 협약과 상담기관 관리
  ③ 법원과 연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녀양육안내 교육'이후 확인증과 함께 전주 지역별 전문상담기관 안내와 의무상담 3회를 받아야 할 것 공지
  ④ 전주법원에서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및 공통 이혼관련 안내 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공지된 전문상담기관 중 주거지와 가까운 상담기관을 찾아 의무상담 3회를 받은 후 확인증 받아야 함을 권고함
  ⑤ 전문 상담기관의 상담사들의 기본 상담 3회에 대한 상담보고서를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담료 받기

2 법원·상담위원 간 지속적 소통 관계 유지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북도, 전주지방법원, (전문상담기관 의) 위촉 상담위원
- 사업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팀

○ 사업내용 : 법원과 상담위원간의 원활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로 협의이혼 신청자와 그 자녀 중심의 발전된 의무상담 사업 지속 지원

- 법원 협의이혼 관련 담당자와 상담위원의 정기적인 사례회의 및 간담회 (월 1회)
- 상담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심포지엄 등 개최(연 1회)

2-2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 진행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협의이혼 진행 절차 상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는 3개월이라는 이혼숙려기간제도를 2008년부터 두고 있음. 숙려기간 3개월은 협의이혼 결정 시 이혼여부에 대한 심사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과 보호안전을 위한 협의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혼 이후의 적응을 준비 및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본 연구의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 협의이혼 신청자 대부분이 3개월이란 숙려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이 이 숙려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지방법원

○ 사업주관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주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진행

- 여성가족부의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200천원 내외보조(지방비 50% 매칭 필요)로 다양한 후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매년 사업지역 선정을 위하 시·도 대상 수요조사 실시 시 전북도 사업계획서 제출(2018년 현재 총 9기관 선정)

○ 사업대상 :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부부)와 자녀, 이혼위기부부

○ 지원내용 :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와 자녀 및 이혼위기의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및 기능 화복과 자녀복지 증진과 보호방안을 위한 상담·교육·문화 활동 등을 무료 제공

- 상담지원 : 개인·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 교육지원 : 부모교육, 부부교육 등
- 문화활동 : 부부 및 가족캠프 지원(연 2회 이상)

○ 사업기간 : 1년 (2019.1~2019.12)

○ 사업운영 위탁기간 : (신규 지정) 1년, (재지정) 3년 이내

다. 미성년자녀 복리증진 및 보호방안 강화

○ 이혼 진행과정 중에서 부부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혼 이후 자녀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와 범위가 달라짐(Hetherington & Clingempel, 1992)

○ 이에 법적 협의이혼 진행 절차 과정 중 부모 이혼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미성년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성년자녀의 안녕과 복지 증진 및 보호방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우선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며 비디오 시청 중심의 일회성의 자녀양육안내를 자녀연령대별, 사례중심별,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한 경험중심의 심화부모교육이 필요함

○ 그리고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이 작성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로 그 내용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지급액, 지급인과 지급받는 사람, 지급방식, 지급일 등) 및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면접장소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임. 그러나 심사숙고하여 자녀중심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부부의 감정중심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결정하는 내용들이 많음.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3-1 자녀양육안내 심화부모교육 실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내용 이상함)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 협의이혼 신청자 대부분은 향후 이혼한 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걱정이 자녀에 대한 걱정 다음으로 컸음. 보다 안정되고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를 원했고, 그러한 일자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증 취득이 선행되어야 했음

○ 이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성 한부모를 위한 통합적인 일자리 마련 지원 패키지(전문교육과정+수업료+생활비+자녀돌봄) 사업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주지방법원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법적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양육안내 교육에서 보다 깊은 내용을 다루는 심화부모교육 실시

○ 사업대상 : 전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자 중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둔 신청자 중 심화부모교육 참여 희망 자

○ 지원내용

• 이혼위기로 부부의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미성년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부모의 행동(대화) 및 역할관련 안내 교육.

• 모든 교육은 자녀연령대를 취학 전(영유아기, 아동기)과 취학 후(초등학생, 중학교이후 사춘기)로 크게 구분을 지어 그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실시

- 이혼과정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는 특성 파악
- 이혼의 후유증과 대처방안, 건강한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자녀의 발달단계 특징 및 그에 따른 심리·정서적·행동적 특성 파악
- 이혼 진행과정 시 나타나는 자녀의 불안심리 및 문제행동 대처법
- 자녀에게 부모이혼 알리는 대화법과 예시
- 부모이혼으로 상처받은 자녀의 마음 달래주는 행동과 대화법
- 이혼 이후 공동양육부모의 역할과 방법에 대한 지침안내
- 면접교섭관련 안내 및 주의사항과 비양육부모의 역할 등

○ 실행방법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매월 1회 실시(취학 전, 취학 후)

3-2 면접교섭지원센터 마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부부들은 이혼 이후 자녀면접교섭에 대해 합의했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계획은 매우 소극적이었음(예를 들어, 언제라도 만나고 싶을 때, 수시로 만날 예정 등). 하지만 이는 자녀의 입장

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자녀발달에 부정적 영향)으로 전문가 FGI조사에서도 이를 지적하였음. 구체적인 자녀면접교섭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이혼 이후 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한편, 일부 양육자는 비양육자가 (어린이집, 학교 등 장소에서)자녀를 갑자기 데려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였고, 실제 이러한 사례는 흔하게 나타난다고 전문가는 지적함. 또 다른 한편으로 비양육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회복 시켜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음

- 면접교섭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이혼부부의 환경 상 문제(경제적 어려움, 양육지식 부족 등)로 인해서도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부부의 인연은 끝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하기 위해 「면접교섭지원센터」 사업 추진이 필요함. 면접교섭지원센터 내 '면접코디네이터'를 두어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또 면접교섭 시 자녀를 인도할 때 공적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도, 전주지방법원(또는 전주시건가센터로 대체 가능)

○ 추진방법 : 전주지방법원에 위촉된 상담위원이 '면접코디네이터' 겸임

○ 지원내용 : 전주지방법원은 법원 내 면접교섭지원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전북도는 상담위원의 면접코디네이터 겸임에 따른 추가 수당금(건당) 지원

• 면접지원 서비스: 비양육자가 면접코디네이터의 지도하에 안전하고 보람있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프

로그램 연계 및 정보 제공

- 인도지원 서비스: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없거나,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는 자녀 인도만 지원함(단, 자녀양육계획 등 전반적인 자녀양육 상담도 가능)

○ 운영시간 : 월요일~일요일: 오전 / 오후 예약제로 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기대효과

○ 이혼 이후 남겨질 자녀들이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함

○ 이혼 이후 자녀를 위해 부모가 협력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계기·분위기 조성 가능

○ 부모-자녀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향후 가족해체에 따른 부가적 문제에 사전대응 가능

라. 정보접근성 강화 · 협의이혼 취하자 집중관리 및 데이터 구축 필요

○ 본 연구의 결과 협의이혼 신청자는 전문상담기관 및 법률적 정보 안내와 쉽게 어디서든 전문상담기관 및 협의이혼 관련 법률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요구함

○ 협의이혼 취하 자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부부의 갈등문제는 동일내용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 반복 누적되어 심화되면서 이혼위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줌. 이에 협의이혼 신청자 중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취하할 경우, 이들이 또 다시 협의이혼 재신청하러 오기 전에 그들이 지닌 부부갈등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지원·관리 노력이 필요함

○ 지금까지 군산과 익산을 제외한 전북지역 법원 및 지원에서는 협의이혼 관련 데이터 구축이 부재함. 건강한 가족구현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에 향후 지속 데이터 구축 및 자료를 통한 연구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4-1 전문상담기관과 이혼진행절차 정보 안내 및 홍보강화; '모바일 리플렛'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결과 설문 및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이혼위기가족(협의이혼 신청자)은 이혼결정 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이후 숙려기간 동안에 부부갈등 및 이혼위기와 관련하여 상담 받고 싶어 했으나, 법원 및 기타기관(예;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정보 안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부족했음을 지적함

○ 이에 전문가의 상담 및 법률 정보 제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상담기관과 법률관련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전문상담에 대한 지리적·심리적 접근 용이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홍보가 강화되어져야 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지방법원

○ 사업내용

- 전문상담기관의 안내, 협의이혼관련 법률정보를 담은 '모바일용 리플렛' 제작 및 배포(협의이혼 서류접수 시, 건가센터 교육접수 시 MMS 자동발송)
- MMS 발송과 더불어 제작된 리플렛 파일을 전주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

○ 예산지원 : 전북도 및 전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의 상담기관 안내 및 협의이혼 관련 법률정보 (지류)리플렛 제작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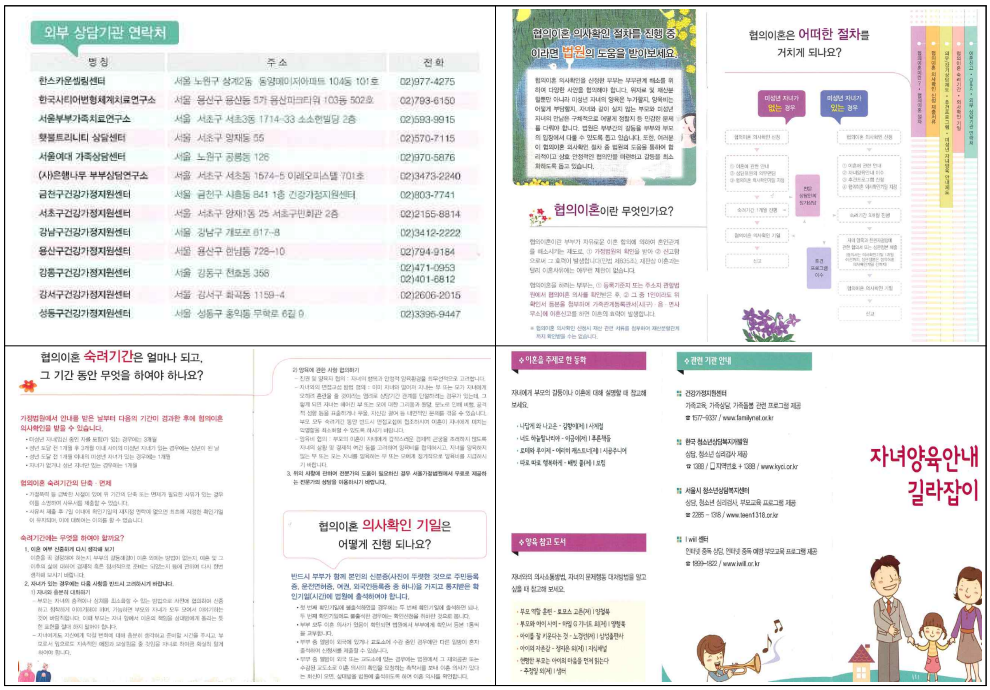

4-2 협의이혼 취하 부부 집중 및 지속관리(상담·교육) 필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협의이혼 신청자 중 배우자 한쪽의 이혼 반대 혹은 이혼결정이 차후로 미루어져 협의이혼을 취하하는 부부는 여전히 부부관계 개선이나 회복의 기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부부갈등의 실태를 보면, 동일내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 누적 및 심화되어 갈등문제를 결국 이혼으로 해결하려는 현상이 나타남

○ 이에 협의이혼을 취하하는 부부에게는 미해결된 문제가 남아 있기에 이혼

을 취하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도·시·군·구,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각 지역 법원

-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원의 협조로 협의이혼을 취하한 부부의 미해결된 갈등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상담 및 교육 관리
- 각 지역 법원은 협의이혼 신청자 중 협의이혼을 취하한 자(부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계함

○ 사업대상 : 협의이혼 취하 부부

○ 지원내용 : 미해결된 갈등 해소 및 성격차이 등의 이해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 사업기간 : 최소 6개월간 지속 관리

4-3 협의이혼 신청자 이혼관련 데이터 구축 및 연구결과 공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까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관련 현황과 그 제반에 따른 전반적 문제를 아우르는 데이터 구축이 부재함. 이혼가족의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서 혹은 부부갈등과 가족문제 예방 등을 위해서 이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 파악을 위한 데이터 구축이 절실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도, 전북 각 지역 법원 및 지원, 전북연구원

○ 사업대상 : 전북 각 지역의 법원 및 지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자

○ 사업내용

- 전북연구원 책임 하에 단계별 설문지 구성·제작 및 조사, 연구결과 발표
- 이혼 관련 안내 및 자녀양육안내 교육 시, 의무상담실시 시 해당 설문문항 구성 및 설문조사
- 1년 단위로 설문조사 자료 수집 후 분석 후 연구결과 발표, 법원 연계 지원 사업에 내용 반영, 전북 가족정책 사업에 반영

마. 한부모여성 일자리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 본 연구결과 협의이혼 진행절차 이후 자녀양육을 도맡게 되는 여성 한부모는 이혼 전 부터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관련 통합적 일자리 지원 패키지를 필요로 함

○ 다음으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게 될 여성 및 남성 한부모 모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에 쫓기다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음. 즉, 이혼 직후 미성년자녀의 심리·정서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했고, 학령기 자녀일 경우에는 학습지원에 공백이 생길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음. 이에 다중적인 역할에 과중한 부담을 갖고 있는 한부모는 미성년자녀의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멘토링 사업 지원을 요구함

5-1	여성 한부모 통합적 일자리 지원 패키지 마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 협의이혼 신청자 대부분은 향후 이혼한 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걱정이 자녀에 대한 걱정 다음으로 컸음. 보다 안정되고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를 원했고, 그러한 일자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증 취득이 선행되어야 했음

○ 전문교과과정 이수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수강료 및 자녀돌봄에 대한 공백에 대해 고민이 상대적으로 컸음

○ 이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성 한부모를 위한 통합적인 일자리 마련 지원 패키지(전문교육과정+수업료+생활비+자녀돌봄) 사업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도·시·군·구,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한부모지원사업 대상 및 각 지역별 주민센터의 협조로 통합적 일자리 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여할 한부모 여성 선착순 모집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한부모지원사업 담당자가 통합적 일자리 패키지 이원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관리

○ 사업대상 : 중위소득 75% 미만의 여성 한부모

○ 지원내용 : 직업훈련과정 동안 생활비 및 돌봄공백을 지원

- 직업훈련과정 지원(여성새일센터)
- 긴급생활비지원(시·군·구 지자체) : 직업훈련과정 기간 동안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 직업훈련과정 기간 동안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한부모 여성의 상황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아이돌보미 배치 및 본인 부담금 지원

○ 사업기간 : 직업훈련과정별 최장 1년 지원

5-2 자녀 학습 및 심리·정서지원 멘토 서비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게 될 여성 및 남성 한부모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학습지도와 심리·정서적 관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가 어려울 것을 우려함. 이에 학령기 자녀일 경우 학교진도에 맞춘 학습지원과 더불어 한부모가 없음에 대한 정서적 공백을 멘토가 대신 채워주기를 필요로 함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내에 자녀학습 · 정서지원이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하고 선정되면 최장 2년 동안 초·중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혜택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제한된 소득수준 이하여야 하고, 최장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도·시·군,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 각 지역별 주민센터의 협조로 멘토링 수요 설문조사와 재능기부 자원봉사자(지역대학 MOU) 및 멘토링에 참여할 한부모가정 선착순 모집
- 재능기부 자원봉사자와 한부모가족 자녀와 1:1 매칭
- 멘토 서비스 사업 시작 전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대상 오리엔테이션과 성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관련 교육 등 이수 필요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멘토서비스 사업 담당자 확보로 재능기부 봉사자(멘토) 및 한부모가족의 미성년자녀(멘티) 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미만의 한부모가족의 7~19세 자녀

○ 지원내용 :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아동의 집 방문하여 학습 및 상담지원

• 일상생활관리, 학습지도(영어, 수학, 국어 등) 및 학교생활 지원

• 고민상담·문화활동, 심리·정서지원

○ 사업기간 : 1년, 연장 신청 가능

○ 예산사업

-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당 수요에 맞춰 사업운영비 지원

- 한부모가족 멘토서비스 사업 담당자 수당 보조지원

참고문헌

참고문헌

박복순, 박선영, 신연희(2011). 협의이혼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성주, 박재황(2011).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3(1), 47-73.

박태영, 김태한, 김혜선(2009). 이혼위기에 있는 결혼 초기 부부에 대한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93-114.

변은주(2017). 이혼위기를 극복한 부부의 사례연구 :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21(4), 119-140.

서미아(2015). 이혼위기 부부에 대한 정서집중집단치료 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 23(2), 291-313.

신유경(2008) 근거이론을 통한 협의이혼 건 상담의 과정 및 성과에 관한 논의: 이혼 전 상담 전문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세정(2015). 협의이혼 상담을 통한 이혼위기 부부의 갈등변화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경자(2015). 외도로 인한 이혼위기의 부부상담: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23(1), 55-88.

이명신(2006). 여성의 잠재적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사회정책, (22), 207-266.

이현주, 임명용(2012). 이혼위기 부부의 통합적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201-224.

전영주, 원성희, 김수연(2009). 협의이혼상담 사례연구: 변화유발요인과 효과 탐색. 가족과 가족치료, 17(2), 67-91.

전현덕(2016).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의 가정법원 부모교육 참여가 용서 및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경혜, 김주현, 강예원(2004). 성인남녀의 이혼과정 각 단계에서의 성별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93-118.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201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Hetherington, E. M., Clingempeel, W. G.(1992). Patterns of Courtship for Remarriage: Implications for Child Adjust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3), 686-698.

Spanier, G. B., & Thompson, L. (1988). Moving toward separation. In N. D. Glenn, & M. T. Coleman(Eds.), Family relations: A reader. Belmont, CA: Wadsworth

Wellerstein, J. (1986). Women after divorce : Preliminary report from a ten-year follow-up.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65-77.

정책연구 2018-17

전라북도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중심으로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18년 11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38-7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비매품/무료
93330
ISBN 978-89-6612-238-7